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교정 플레이스

교정 이모저모

국민이 궁금해했던 교정의 '진짜 이야기'

SBS '관계자 외 출입금지' 촬영 현장

역사와 오늘

새로운 출발, 희망찬 어울림

거창구치소

교정의 공간

무에서 유를 만드는 개척의 개척자들

거창구치소 총무과

외부 칼럼

진정한 화합을 이끄는 현명한 공감

교정 아카이브

교정 포커스 금융명

청진감옥과 근대 행형(상)

교정 논문 정진영

교정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관한 연구

교정 리포트 윤옥경

교정사고와 폭력 피해 경험이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하)

전문가 칼럼 이지연

마약 중독의 재활에 있어 교정의 역할

교정 판례 마성웅

징벌 사유 중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에 관하여

교정 백과 양혜경

음악치료 활동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에 미치는 영향

교정 NEWS

08

2023 August + Vol. 567



9 772671 930009

ISSN 2671-9304

08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08

2023 August + Vol. 567

발행인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월
2023년 08월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기획·디자인
반디컴 Tel. 02-2272-1190

월간 <교정>은 웹진(cowebzine.com)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교정 플레이스 Corrections PLACE

교정 이모저모 국민이 궁금해했던 교정의 '진짜 이야기' SBS '관계자 외 출입금지' 촬영 현장	04
역사와 오늘 새로운 출발, 희망찬 어울림 거창구치소	10
교정의 공간 무에서 유를 만드는 개척의 개척자들 거창구치소 총무과	16
외부 칼럼 진정한 화합을 이끄는 현명한 공감	20



교정 아카이브 Corrections ARCHIVE

교정 포커스 청진감옥과 근대 행형(상) 금융명 교도소연구소 소장	22	작가와 만남 뜨거운 소명 의식으로 풀어쓴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금융명 교도소연구소 소장	134
교정 논문 교정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관한 연구 정진영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교정관	44	교정 NEWS	136
교정 리포트 교정사고와 폭력 피해 경험이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하) 윤옥경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전공 교수	74	모범 공무원	145
전문가 칼럼 마약 중독의 재활에 있어 교정의 역할 이지연 한국외국어대학교 상담심리전공 교수	94	독자마당	146
교정 판례 징벌 사유 중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에 관하여 마성용 광주지방교정청 보안과 교감	96		
교정 백과 음악치료 활동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에 미치는 영향 양혜경 (사)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회장	120		



f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KCS_TV
카카오토리 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국민이 궁금해했던 교정의 '진짜 이야기'



꾸밈없는 담장 안 이야기가 다시 한번 전파를 탄다. 올해 초 성공적인 파일럿 방송 이후 6월에 정규 편성된 SBS '관계자 외 출입금지'가 이번에는 청주여자교도소를 찾았다. 제작진과 출연진, 방송 지원에 나선 교정공무원들은 영화나 드라마 속 교도소가 아닌 교정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모





‘관계자 외 출입금지’와의 또 다른 만남

올 1월 방송된 SBS 공익 예능 프로그램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서울남부구치소와 서울남부교도소 편은 국민들에게 큰 화젯거리였다. 쉽게 접할 수 없는 미지의 공간이었던 교정시설의 실제 모습과 교정공무원의 진솔한 이야기를 두루 담아냈기 때문이다. 그 덕분일까. 정규 편성 후 올 6월 1일부터 방영 중인 이 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출연진이 다시 한번 교정시설에 방문했다. 전국 유일의 여자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가 이번 촬영 장소로 낙점됐다.

청주여자교도소와 제작진 및 출연진은 촬영 당일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실제로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체험하고 전달하기 위해 가수 김종국·개그맨 양세형·배우 이이경 등 남자 출연자는 교정공무원으로, 개그맨 신봉선과 가수 미미는 수용자로 변신했다. 교정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교육, 신입 수용자 입소 절차, 수용동 거실 체험 및 식사 등이 오전 내내 진행됐으며, 오후 1시 보안과 정문에서 ‘관계자 외 출입금지’ 온라인 제작 발표회를 열어



추후 방송될 청주여자교도소 편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뒤이어 수용동 독거실·휴게실 등 교도소 내부 시설에 대한 소개와 탐방도 이어졌다.

생생한 목소리로 넓은 이해의 폭

이번 촬영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교정공무원들과의 인터뷰는 오후부터 진행됐다. 출연진은 2개 조로 나뉘어 특별사법경찰조사팀·심리치료팀·기동순찰팀, 보안과·직업훈련과·총무과·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들을 차례로 만나며 업무에 대한 소개,

다양한 에피소드, 업무 간 고충 등의 대화를 나눴다. 인터뷰에 나선 교정공무원들은 자부심 및 사명감과 더불어 전국 교도소의 과밀 수용 문제, 미디어를 통해 잘못 알려진 교정시설의 실제 모습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교정시설과 교정의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동시에 교정교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동순찰팀은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각종 돌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상황별 대응 및 제압 요령 시범을 몸소 선보였다. 제작진과 출연자들의 감탄 섞인 박수가 터져 나왔음은 물론이다.



교정교화의 현장을 두루 소개해서 뿌듯해요

"사실 우리는 맨날 마주하는 환경이어서 처음에는 '방송에 내보낼 게 있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정시설과 교정공무원에 대한 호기심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수용자를 교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교정교화의 현장을 두루 소개할 수 있어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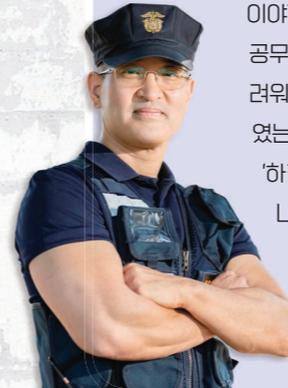
심리치료팀
교감 노지현



출연 용기를 내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그간 교정에 대한 왜곡과 편견이 상당히 다 보니 교정공무원으로서 많이 속상했는데요. 오늘 출연자들이 교정공무원의 힘든 부분과 고충, 수용 과밀 문제 등을 질문해 주시고 교정교화의 가치를 알아봐 주셔서 부쩍 힘이 납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혹시나 다른 교정공무원들에게 누가 될까 두려워 처음에는 출연을 망설였는데, 막상 촬영하고 나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동순찰팀
교위 최윤형



교정공무원의 사명감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업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교정공무원을 '무서운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인식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사실 교정공무원도 다른 직군의 공무원들처럼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똑같은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번 출연 목표를 '교정공무원의 사명감을 보여주자'로 잡았는데, 열심히 촬영에 임한 덕분에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기동순찰팀
교사 신도희



덕분에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어요

"방송 출연이라는 게 일반인들에게는 평생 한 번조차 경험하기 힘든 일인데, 제가 업무를 보는 일터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좋았어요. 아울러 교정공무원의 인권과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있는 그대로의 교정시설과 교정공무원을 보여드린 만큼, 더 많은 국민들이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사법경찰조사팀
교위 강승연



담장 안의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교정시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벌을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출소 후 사회 복귀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지금 직업훈련과 소속이다 보니 죄를 씻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용자들의 희망과 그 노력을 여러 측면으로 지원하는 교정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특히 강조했던 것 같아요. 시청자들이 '교도소도 사람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직업훈련과
교위 흥은의



많이 긴장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출연을 결정하고 긴장을 많이 했는데, 제작진과 출연자들이 편안하게 진행해 주셔서 마음을 잘 다스리며 행복하게 촬영할 수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정공무원의 노고와 헌신이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 법무부와 교정본부에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교정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마련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교사 유지의



이후에도 출연진은 스마트 접견 체험, 작업장 및 조리장 탐방 등을 이어 나가며 교정에 대한 얹의 폭을 넓혔다. 해가 산 너머로 들어갈 무렵, 출연진은 하루 종일 진행된 촬영을 마친 뒤 옷을 갈아입고 보안과 정문에 섰다. 이들을 두 팔 벌려 맞이한 이규성 청주여자교도소장은 "교정본부와 교정시설, 교정공무원들은 높아진 인권 감수성과 시대 흐름에 맞춰 교정교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절대적 공간이 부족한 만큼 교정시설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해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전했다. 이날 진행된 녹화분은 7월 13일 오후 9시에 방송됐으며, 서울남부구치소와 서울남부교도소 편 못지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교정본부는 앞으로도 교정교화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계기와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STAFF ONLY
관계자외 출입금지

새로운 출발, 희망찬 어울림

거창구치소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올해 1월 준공된 거창구치소가 6월 1일부로 수용자 50명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공식 개청 준비가 한창인 탓에 분위기가 어수선했던 법도 하지만, 장마가 끝날 무렵 찾아가 두 눈으로 확인한 거창구치소의 모습은 '안정적'이라고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 배경에는 여러 모양의 '희망찬 어울림'이 자리하고 있다.



1

법조타운과의 효율적인 어울림

올해 9월 완전 개청을 앞둔 거창구치소는 빼어난 산세와 수려한 자연을 병풍 삼은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및 가지리 일대에 터를 잡고 있다. 총 18만㎡에 이르는 부지에 청사동과 보안청사동, 12개 수용동을 갖췄다. 영월교도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치체우 전담 교정시설로서 문화관·공동식당 등 수행자 자치체 수행기관에 걸맞은 최신 시설도 두루 마련했다. 거창구치소는 이를 토대로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수용 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지역사회 자원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출소 후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밑바탕도 적극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거창구치소는 검찰·법원·준법지원센터를 아우르는 이른바 거창법조타운에 가장 먼저 들어선 기관이다. 현재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창원 지방법원 거창지원이 거창구치소 맞은편으로 이전하며, 준법지원센터는 그 오른편에 자리를 잡게 된다. 이르면 내년 말 온전히 조성될 예정인 거창법조타운은 지역 내 법무 행정의 중심지이자 거창군의 지역 인구 증가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중심 생활권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거창구치소도 각종 업무와 교정교화 활동을 한층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지역사회와의 동반자적 어울림

거창구치소는 교정시설 마련에 협조해 준 지역사회에 보답하기 위한 활동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다. 교정공무원 및 가족과 함께하는 합동 전입식 행사가 대표적이다. 거창군은 '6만 인구 사수'를 군정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는데, 이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금껏 두 차례에 걸쳐 총 70명이 참가한 합동 전입식을 진행한 것. 1차 전입식 당시 거창구치소가 '거창구치소는 거창군과 함께하는 가족이 되겠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자 2차 전입식 때는 거창군이 '구치소 직원 여러분! 거창군 전입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를 준비, 끈끈한 우애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거창군과 거창구치소의 우호적 관계는 청사 로비와 민원실에서도 엿보인다. 거창구치소를 찾는 사람들이 거창의 명소와 주요 추진 사업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크게 인쇄한 관광지 전경 사진을 걸어 둔 것. 패널 제작 비용은 전액 거창군에서 부담했는데, 이를 통해 지자체가 거창구치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거창구치소는 성공적인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도 적극적이다. 거창은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이 모여 있는 유일무이의 승강기 클러스터다. 인구 6만 명의 도시에 승강기 관련 기업이 2022년 기준 37개나 자리 잡고 있을 정도. 거창구치소는 지역 사회의 이러한 특성을 수용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 한국승강기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

주민들과의 아름다운 어울림

지난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거창군 12개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군민대상 교정시설 참관 행사는 거창구치소에 대한 일말의 우려마저도 완벽하게 해소하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났다. 나흘간 거창구치소에 방문한 주민 607명에게 교정 행정 전반을 설명하고 교정시설 곳곳을 소개함으로써 주민들의 교정 문해력을 끌어올린 것. 이때 참여한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창구치소의 면면을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거창구치소는 거창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교정공무원 10명을 채용하는 한지(限地) 채용도 지난 2월 시행했다. 40:1에 달하는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뜨거웠던 한지 채용은 지역 주민들에게 거창구치소의 지역사회 공헌도를 알리는 좋은 기회로 작용했다. 이번 채용된 교정공무원 10명은 7월 31일 첫 출근했으며, 거창구치소와 지역 사회를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 1월 거창구치소에 부임한 김찬우 초대 소장은 “구치소 착공 초기부터 이어져 온 오랜 숙의가 오늘 날에 와서는 거창구치소와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거창구치소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지역 주민들과 거창구치소의 성공적인 개청을 위해 안팎으로 모범적인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는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시설로서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는 굳은 각오를 밝혔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개청의 개척자들

거창구치소 총무과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거창구치소 총무과 직원들도 마찬가지.
하지만 그들은 교정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용기를 냈고,
성공적인 개청을 위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심정으로 매일을 보내고 있다.
'개청의 개척자들'이라 표현해도 무리 없는 행보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구치소 살림의 밑바탕을 마련하다

모든 교정기관의 총무과가 그렇듯, 거창구치소 총무과도 살림꾼 역할을 도맡는다. 물론 개청이라는 특수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이들에게는 하나의 임무가 더 주어져 있다. 살림꾼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하는 일이다. 어머니가 집안 살림에 빈틈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가계부·계산기 등을 마련하고 나름의 정리법을 만드는 것처럼, 거창구치소 총무과 직원들도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양식과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누구보다도 바쁘게 살아간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힘든 나날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 최근동 과장을 비롯한 총무과 직원 16명은 모두 자원해서 거창구치소에 왔다. 다시 말해 성공적인 개청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가 돼 있는 교정공무원들이 한데 모인 것. 그래서인지 월간 <교정>이 선물한 커피 머신으로 내린 커피를 손에 들고 인터뷰에 임하는 총무과 직원들의 표정은 거창의 푸르른 자연처럼 싱그러웠다.

“아무래도 개청 준비를 경험한 직원이 거의 없는 데다가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다 보니 업무가 여러모로 힘든 건 사실인데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우리 직원들을 끈끈하게 엮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동료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일을 도와



달라고 하면 누구 하나 빼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이런 와중에도 웃음소리를 잃지 않고 업무에 임해 좋은 분위기로 업무 효율을 높이는 직원들에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남다른 노력으로 거창에 녹아들다

업무의 기본 틀을 짜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창구치소 총무과의 두 번째 과업은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상생'이다. 이를 위해 거창구치소와 교정 공무원, 지역사회와 주민들 사이의 점점 역할을 하는 행사를 다수 추진하고 있다. 지금의 구치소 자리에 살았던 성산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점심 식사 대접과 교정시설 참관을 겸하는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했는가 하면, 군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정의 업무와 교정시설을 소개하는 참관 행사도 시행했다. 이와 함께 거창구치소 직원들이 거창군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도 마련했으니, '거창군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행사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 3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소장님을 포함한 개청 준비 직원 37명이 거창사건추모공원·정은고택·수송대 등을 둘러보며 거창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파악하고 업무를 수행하면 지역사회와의 소통력을 높일 수 있는 동시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직원들과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크게 만족했던 행사였는데요. 앞으로도 기회와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거창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직원 참여 행사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총무과 직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밖에서도 교정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자각하며 지역과 주민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은 기본, 행사와 회식을 위해 식당을 예약할 때도 교정공무원임을 밝혀 거창구치소가 거창



군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모르게 퍼트리고 있다.

고생을 추억으로 만든 주도적 업무 수행

낮선 곳에서 새로운 일을 잡다 보니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다. 작년 11월 개청 준비 요원으로서 이곳에 온 변승규 교감은 공사현장사무소의 감리실을 빌려 업무를 봐야 했고, 올 4월 부임한 직후 민원실에 배치된 배은이 교위는 동료들과 함께 입주 청소를 하며 민원실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구성해 나가야 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그간의 고생을 “다 좋은 추억”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주체적으로 업무를 해 나갈 수 있었으며, 덕분에 거창구치소가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변승규 교감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만드는 일은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기에 한결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렇게 노력한 만큼 성과가 곧바로 눈에 들어오죠. 저뿐만 아니라 총무과 직원들, 나아가 개청에 동참하겠다는 거창구치소에 지원한 모든 교정공무원이 이 같은 마음과 보람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MINI INTERVIEW

우리의 노력은 교정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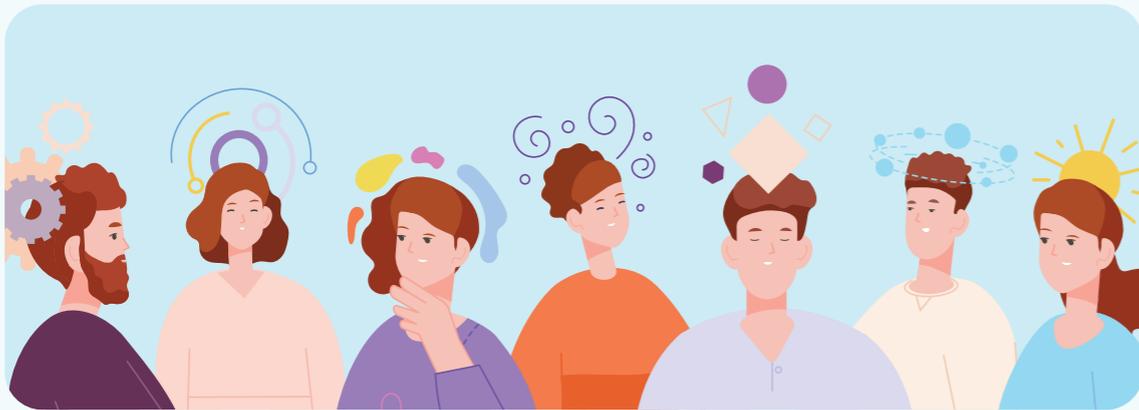
“개청 업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정에 대한 열정과 새로움에 도전하는 용기가 있어야 비로소 개청이라는 신대륙에 닿을 수 있는데요. 기꺼이 거창구치소라는 배에 탑승한 우리 직원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됐듯, 거창구치소 개청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교정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것입니다!”

총무과 최근동 과장

진정한 화합을 이끄는 현명한 공감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공감해 주길 원하며, 이러한 경향성은 아이러니하게도 개개인의 개성이 갈수록 중시되고 있는 오늘날 더더욱 두드러진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공감만 할 수는 없는 일. 공감에 현명함을 더해 진정한 화합을 이끌 수 있다.

글 이준섭 문화칼럼니스트



인간의 필요충분조건, 공감

“니 T야?”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돌고 도는 유행어다. 흔히 ‘MBTI’라 불리는 자기보고식 성격유형지표는 네 자리의 알파벳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사고(I)-감정(F) 지표다. 전자는 이성적 사고를, 후자는 감성과 공감을 중시하는 성향이다. “니 T야?”의 ‘T’는 바로 여기에서 파생된 밈(Meme)으로, 내 이야기에 공감해 주지 않고 이성적으로 직언만 하려는 상대방의 태도를 꼬집을 때 쓰인다.

작년 대유행한 이른바 ‘갯잎 논쟁’도 같은 맥락이다. 내 애인이 갯잎장아찌 떼기에 애를 먹고 있는 이성 친구를 도와줘도 괜찮은지, 그러면 안 되는지를 묻는다. 이 질문의 표면적 문제는 갯잎 떼기지만, 그 안에는 ‘이성 친구를 도와줬을 때 상처받을지도 모르는 애인의 마음에 공감해 줄 수 있는가?’라는 속뜻이 숨어 있다.

“니 T야?”와 ‘갯잎 논쟁’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료하다. ‘공감해 달라’는 것이다. 개개인의 개성

을 중시하는 MZ세대 사이에서 공감과 관련된 밈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소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의 본성을 갖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의 공감을 얻길 원한다. 그런데 세상은 이와 반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잘게 세분화된 ‘나노사회’로 향하고 있으니, 공감에 대한 본능적 욕구는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공감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밈의 가벼움을 빌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주변 사람들에게 공감에 대한 요구를 은근히 전달하면서도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이거 요즘 유행이잖아!”하며 웃어넘길 수 있으니 말이다. 결론적으로 공감은 세대를 막론하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갈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성과 감성이 조화된 현명한 공감

공감은 인간의 삶에서 떼어 낼 수 없는 중요한 덕목이지만, 때로는 오히려 공감대 형성과 화합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공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선택적 과잉 공감’이 문제다. 사실 공감은 어느 정도 편향성을 지닌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혹은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집단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이러한 경향이 심해질수록 특정 방향성을 택해 무한대의 공감을 보내고 다른 방향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도 않는 ‘선택적 과잉 공감’이 이뤄진다.

가천대학교 장대익 교수는 작년 출간한 저서 <공감의 반경-느낌의 공동체에서 사고의 공동체>를 통해 선택적 과잉 공감을 만드는 ‘공감 구심력’보다는 나와 다른 생각과 행동을 받아들이고 그 이유를 깊이 사유하는 ‘공감 원심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감정이입과 같은 ‘정서적 공감’을 넘어 역지사지의 ‘인지적 공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들 공감을 온전한 정서적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현명한 공감은 정서와 이성을 적절하게 조합했을 때 비로소 실현된다. 객관적 지식과 상황을 무시한 채 감정적 공감에만 몰입하면 이는 선택적 과잉 공감으로 이어지며, 선택적 과잉 공감은 흑백논리와 편견, 고정관념을 낳는다. 공감이 오히려 공감대 형성과 화합을 해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명한 공감은 교정과 지역사회를 더욱 원만하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독특히 할 수 있다. 예컨대 교정시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하는 동시에 역지사지의 자세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정시설 신축에 적극 반영한다면, 교정시설 확충에 한층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 무조건적 꼬덕임과 추임새 대신 이성과 감성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현명한 공감을 만들어 나가자. 진정한 화합이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청진감옥과 근대 행형(상)



김용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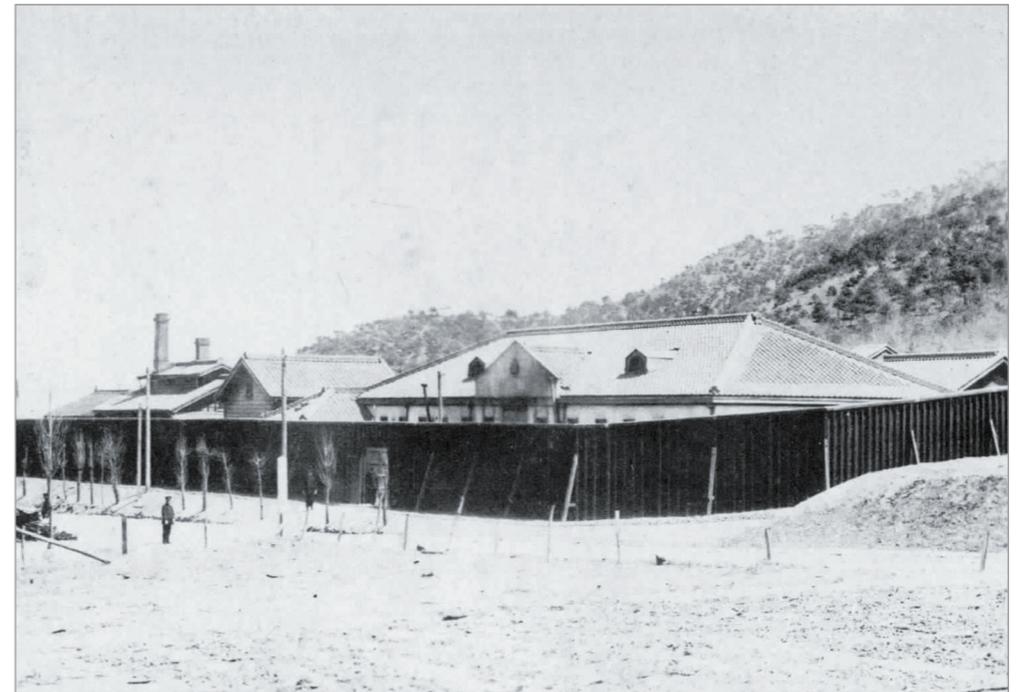
전 안동교도소장, 교도소연구소 소장

- I. 개설
- II. 연혁
- III. 위치 및 건물
- IV. 직원
- V. 수용자
- VI. 수용자 처우
- VII. 작업 및 교화
- VIII. 기타

I. 개설

청진감옥은 1908년 5월 이사청감옥 설치에 따라 경찰로부터 시설과 수용자를 인수했으며, 1909년 구한국정부의 사법권을 통감부에 위임하게 돼 같은 해 통감부 감옥관계의 공포와 동시에 새롭게 함흥형무소 청진분감을 소속으로 했으며, 종래의 경성(鏡城)감옥은 청진분감 출장소로 변경했다. 1910년 8월 한일합병의 알리를 발령하고 조선총독부 소속으로 해 감옥관제를 제정했다. 1913년 6월 경성(鏡城)출장소를 폐지하고 이곳에 구금돼 있던 재감자는 청진분감으로 이감했다. 그 후 1920년 11월 1일 청진분감에서 청진감옥으로 승격했다.

특히, 다른 형무소와는 달리 1930년대에는 사상범이라고 칭하는 수용자가 급증했으며, 이는 간도지방을 포함해 국내에서 독립운동하다가 형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해방과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 해방 이후 청진형무소의 역사에 대해 알 수는 없지만, 일제강점기 행형운영과 관련해 북한지역에 소재했던 감옥에서의 수용과 처우 등은 남한지역과 같았으며 이는 우리나라 근대행형 역사의 한 시기를 차지했다.



청진감옥 전경

II. 연혁

1907년 7월 성진(城津)이사청 청진지청을 설치했다. 같은 해 12월 동 지청을 폐지하고 청진이사청을 두고 감옥사무는 이사청 관할하에 청진경찰서장으로 해 이를 취급하도록 했다. 1908년 5월 초 청진이사청 감옥을 설치하는 한편 감옥사무는 경찰서로부터 분리했고, 다음 해인 1909년 11월 통감부 관제발포에 따라 청진이사청감옥, 성진이사청감옥 및 한국 함흥감옥 경성(鏡城)분감을 병합해 새롭게 통감부 함흥감옥 청진분감으로 개칭했다. 이와 동시에 구 함흥감옥 경성분감은 청진분감 경성출장소로 존치했으며, 그 후 점차 사무의 독립을 보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청진이사청감옥으로부터 인계 받은 부도정(敷島町) 건물(아연지붕 단층 목조 건평 15평 5합)은 매우 협소하고 불편이 심했기 때문에 현재 목하전정(目賀田町)에 민가를 차입해 가감(假監)으로 해 일시 수선해 머무르게 했다. 원래부터 계속 사용할 수 없어서 이로부터 선축정(先祝町)인 현재지에 1,044평 5합을 선정하고 청사, 감방 등의 신축에 착공해 1910년 7월에 준공(총 건평 84평 7합 5작)함에 따라 이곳으로 이전했다.

1910년 7월 1일 조선총독부 감옥관제의 실시에 따라 종전과는 달리했고, 이어서 1920년 10월 총독부령 제58호에 따라 본감으로 승격해 같은 해 11월 1일 청진감옥으로 개칭하고 청사, 감방, 공장, 그 밖에 건물의 이축, 개축, 증축 등 총 건평 581여 평을 확장하고 이로써 옛 모습을 일신했다. 그러나 교회당, 병감의 설비(총집교회는 공장을 이용함)가 없어서 해가 지남에 따라 수용자가 증가해 감방과 공장이 부족함을 호소하고 구금상 곤란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본감 승격 이후 연도별 재소자 일일 평균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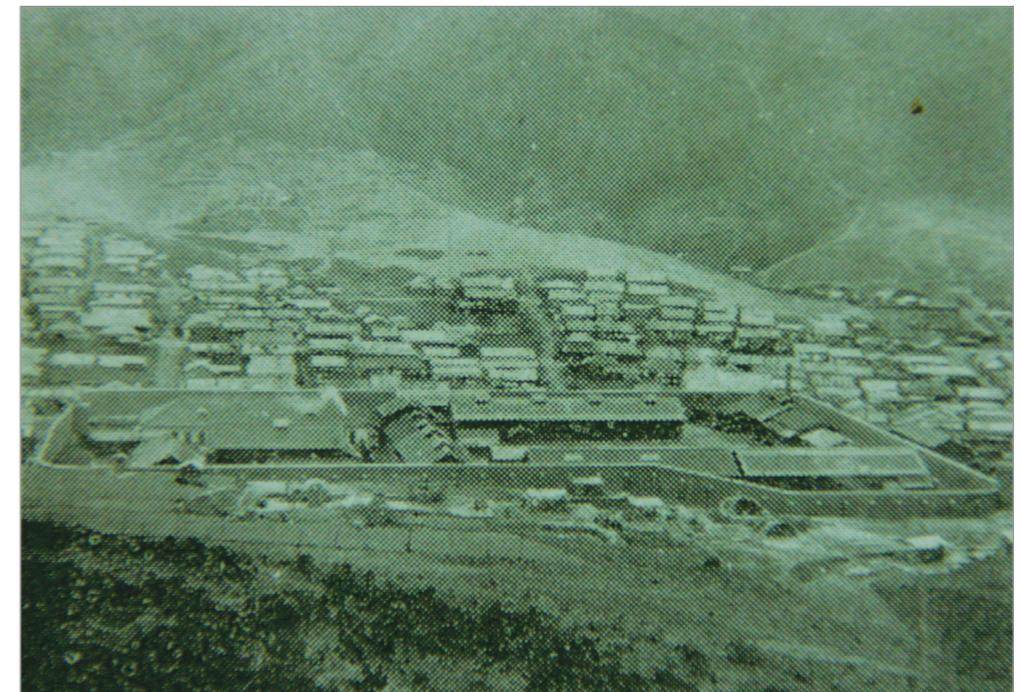
연도	1920년	1921년	1922년	1923년	1924년	1925년	1926년	1927년	1928년
인원	171	200	198	285	267	265	228	206	235
연도	1929년	1930년	1931년	1932년	1933년	1934년	1935년	1936년	
인원	307	399	428	480	565	498	537	621	

1923년 5월 부령 제77호로서 청진형무소로 개칭하고 1928년 9월에 기공해 종전의 관자벽을 벽돌벽으로 개축(주위 연장 250칸, 1931년 준공)했으며, 이에 따라 구내 평수 1,588평은 3,020평으로 확장됐다. 취사장 공사 등 이축해 다시 1932년 독거감 목조 단층 1동 건평 90평을 증축했고 1936년도에 사상법 피고인 증가에 따라 징역감 1동 67평

5합의 가감방 60평을 증축했으며, 또 연무장 38평 5합을 당 경찰서로부터 보관전환을 받아 이축 및 증축했다. 이어서 1937년도에 이르러 간수장 1명, 간수 13명, 의무교무계에 촉탁 각 1명 및 운전수 1명의 증원이 있어 직원의 진용을 일신했다.

제도 개정에 의한 사무인계 시 재소 인원

연월일	개요	인원
1908년 5월	이사청 감옥 설치에 따라 경찰서로부터 인계 인원	102
1909년 11월 1일	사법권위임 실시에 의해 구한국감옥인 함흥감옥 경성분감 및 이사청감옥으로부터 인계 인원	113
1910년 10월 1일	통감부감옥으로부터 조선총독부 감옥에 인계 인원	136
1912년 1월 1일	현재 인원	176
1920년 11월 1일	분감으로부터 본감으로 승격 당시 인원	307
1925년 2월 21일	현재 인원	297



청진형무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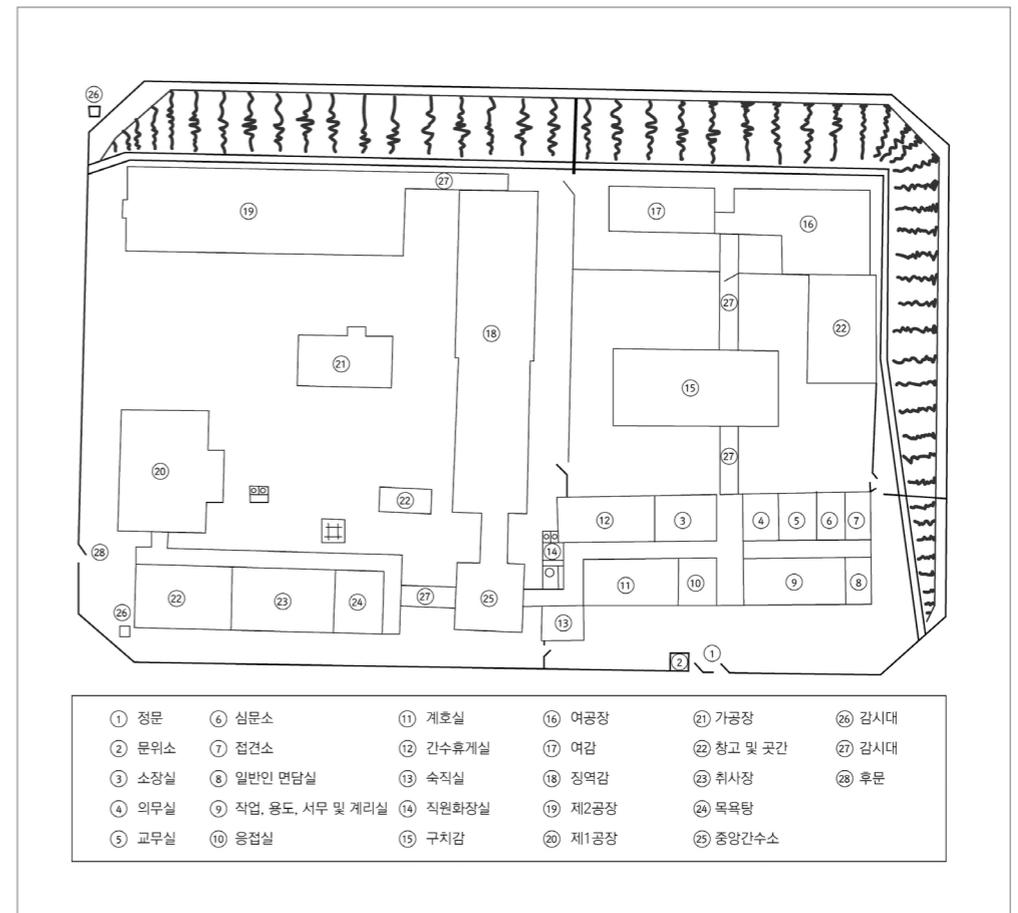
Ⅲ. 위치 및 건물

1925년 7월 청진감옥은 청진부 축정(祝町) 1번지(동해안)에 위치했다. 건물은 모두 단층 목조이고 외주벽 판자벽은 총연장 161칸, 청사 1동, 감방 3동(내 여감 1동), 취사장, 목욕탕, 식품창고 1동, 공장 4동(내 가공장, 여공장 각 1), 창고 2동, 우물 2개소로 구성됐다. 부지는 총 7,080.7평으로 구내 1,662.75평, 구외 1,285.25평, 경운지 4,132.67평, 묘지 10.0평이다. 건물은 581.65평으로 청사 127.50평, 감방 69.70평, 복도 71.91평, 공장 174.93평(내 여공장 33.50평), 취사장 31.50평, 창고 기타 부속건물 106.11평이었다. 그 후인 1937년 토지와 건물의 상황은 아래와 같다.

부지	총 평수	7757평 1합
구내	평수	3,023평(주위 벽돌주벽 연장 215칸)
구외	평수	4,734평 1합(경운지 및 벽돌공장)
건물	총 평수	924평 2합

건물별	평수	건설 연월
청사	127.5	1921년 10월
구치감	42.75	1921년 9월
감방	383.11	
징역감	제1사	83.86 1921년 9월
	제2사	79.50 1936년 11월
	제3사	90.00 1932년 11월
	제4사	60.00 1936년 11월
여감	15.00	1921년 10월
가병감(임시병동)	24.00	1933년 8월
공장	196.93	
제1공장	77.00	1921년 9월
제2공장	86.43	1921년 9월
여공장	33.50	1912년 9월
취사장	70.75	1921년 10월

건물별	평수	건설 연월
창고	47.36	
제1창고	17.00	1908년 8월
제2창고	4.50	1914년 12월
제3창고	25.86	1916년 12월
기타	98.10	
연무장	38.05	1936년 10월
제품진열장	19.84	1928년 3월
기타	40.21	



청진형무소 배치도(1924년)

구별		정원	현원	배치						
				서무	계리	용도	계호	작업	교무	의무
간수(남)	일	41	38	3	1	2	27	3	-	1
	한	26	21	-	-	-	20	-	1	-
간수(여)	일	1	1	-	-	-	1	-	-	-
	한	1	-	-	-	-	-	-	-	-
작업교수	일	2	×1 1	-	-	-	-	×1 1	-	-
	한	-	×1 1	-	-	-	-	×1 1	-	-
고원	일	1	×1	×1	-	-	-	-	-	-
	한	1	1	1	1	-	-	-	-	-
운전수	일	-	-	-	-	-	-	-	-	-
	한	1	1	1	-	-	-	-	-	-
감정	일	4	-	-	-	-	-	-	-	-
	한	3	8	×1 1	-	1	×1 1	1	-	×1 1
급사	일	1	-	-	-	-	-	-	-	-
	한	-	1	-	-	-	-	-	-	-
합계	일	58	50	4	1	12	30	7	1	2
	한	33	35	-	-	-	23	3	2	

※ △는 겸무를 나타내고, ×는 임시를 나타냄
 ※ 본표 외 의무 및 교무 각계에 1명 및 치과의무촉탁 일본인 1명

2. 직원 근무

직원 근무는 비번 근무가 있었으며 1922년부터 1924년의 3년간 직원 비번 근무 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직원 비번 근무 일수

연도		1922년	1923년	1924년
질병	한국인	156	334	260
	일본인	135	293	198

또한 질병·간병·사고 등으로 결근일이 있었으며 1922년부터 1924년의 3년 동안 직원 결근 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직원 결근 일수

연도		1922년	1923년	1924년
질병	한국인	121	57	56
	일본인	261	146	128
간병	한국인	-	3	-
	일본인	-	21	-
사고	한국인	25	36	4
	일본인	96	53	4

3. 직원 근속 연수

직원 근속 연수는 전체 59명 중 1년 미만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근속 연수 5년 이하가 36명으로 전체의 60%를 넘었으나,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1명이 있었다.

직원 근속 연수(1937년 6월 1일 현재)

근속 연수	인원	근속 연수	인원
1년 미만	10	9년 이상	5
1년 이상	7	10년 이상	3
2년 이상	5	11년 이상	2
3년 이상	4	12년 이상	-
4년 이상	7	13년 이상	1
5년 이상	3	14년 이상	-
6년 이상	4	15년 이상	1
7년 이상	2	계	59
8년 이상	-		

4. 참관

청진형무소는 작업 및 시설 관계상 나남(羅南) 제19사단의 각 대대와 항상 교류가 많은 관계상 군대의 청진형무소에 대한 이해는 다른 일반에 비해 그 정도를 달리했다. 또한, 연락이 원만해 감사하고 있으며 그 관계에서 군인의 참관은 항상 많았고 1924년 5월 20일 동 사단 보병 제76연대 미타무라(三田村) 중대장으로부터 병사 교육의 자료로 22일 정오 장교 이하 약 100명이 당소를 견학하고자 하는 취지의 문의가 있었고 당일 이르러 동 부대 오가와(小川) 중좌, 미타무라(三田村) 중대장 이하 장교와 병사 다수가 참관을 다녀갔다. 참관 후의 소회와 관련해 기탄없이 곳곳을 보여주기를 희망했고, 그 후 5월 30일 중대장이 부대원 3명의 참관기를 보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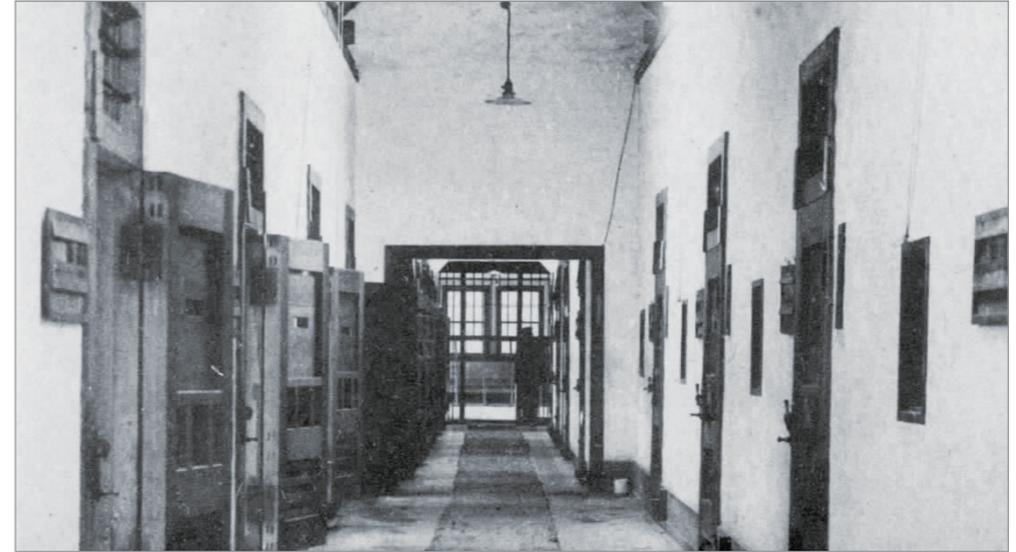
참관자 수

연도	1924년	1925년
군인	170	364
기타	119	95

V. 수용자

1. 현황

1925년 2월 21일 현재 재소 인원은 형사피고인 남자 61명(내 일본인 2명, 중국인 2명), 여자 1명(일본인 1명), 수형자 남자 229명(내 일본인 13명, 중국인 16명), 여자 10명, 노역장유치 남자 6명(내 중국인 1명)이 수용돼 있었다. 수용률은 1평당 4.4명으로 죄질, 범수, 분류별에 따라 가장 많은 거실은 6명이었다. 수형자의 죄명별 인원을 보면 살인 남자 9명, 여자 4명, 외설 등 남자 6명, 상해 남자 4명, 여자 1명, 절도 남자 63명, 강도 남자 34명, 사기공갈 남자 17명, 횡령 남자 7명, 방화 남자 3명, 여자 4명, 1920년 제령위반 남자 15명, 아편단속법 위반 남자 36명, 폭발물 소지 등 남자 6명, 여자 1명, 기타 남자 26명이었다. 피고인(피의자 포함)은 청진지방법원 및 성진(城津), 회령, 웅기(雄基) 각 지청 관내, 및 간도영사재판소의 예심을 거친 자와 수형자는 형기 10년 이하의 남자 성인수와 위 관내에서 확정된 1년 미만 여자수형자를 구금했다.



청진형무소 감방

수용정원은 361명으로 1930년 이후부터 사상범이 급증함에 따라 재소자는 순수하게 증가해 평균 수용자 850명에 이름에 따라 감방 기타 제발 설비는 극도로 협소함을 고해 점차 이를 확충하는 데 노력했다.

2. 재소 연인원 및 입출소

1920년부터 1924년까지 재소 연인원 및 일 평균 수용 인원은 아래 표와 같다.

재소 연인원 및 일 평균 수용 인원

구분	1920년	1921년	1922년	1923년	1924년
재소 연인원	62,642	73,083	72,483	104,047	97,853
일 평균 인원	171.15	220.23	198.58	285.07	267.54

입소자 및 출소자

구분		1920년		1921년		1922년		1923년		1924년	
		입소	출소								
피고인	남	535	459	397	457	263	272	293	284	441	417
	여	17	20	21	20	13	14	21	19	33	34

구분	1920년		1921년		1922년		1923년		1924년		
	입소	출소									
수형자	남	308	361	369	354	333	223	259	236	256	285
	여	25	18	18	20	13	14	15	14	15	18
노역장 유치	남	31	14	62	65	28	25	27	13	38	37
	여	-	-	-	-	-	-	1	-	3	3

※ 1925년 1월부터 6월까지 재간도영사관의 이송에 따라 수용된 자는 36명임

1930년부터 1936년까지 7년간 연인원, 일 평균 수용 인원, 입소 및 출소, 연말 현재 인원은 아래 표와 같다.

연도	연인원	일 평균 인원	입소	출소	연말 현재
1930년	145,866	399	1,397	1,330	411
1931년	156,388	428	1,805	1,640	576
1932년	174,098	480	1,775	1,869	482
1933년	206,168	565	1,427	1,402	507
1934년	182,183	498	1,080	1,089	498
1935년	196,183	537	1,152	1,065	585
1936년	210,851	577	1,655	1,600	631

3. 입소 및 출소

1930년부터 1936년까지 형사피고인 연인원, 일 평균 인원, 출입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출소는 석방, 형확정, 집행유예, 벌금 및 과료, 보석, 사망 등의 사유로 시행됐으며 1936년 말 수용된 형사피고인은 250명이 달했다.

연도	연인원	일 평균	입소	출소	내역							연말 현재
					석방	확정	집행유예	벌금과료	보석	사망	공소	
1930년	26,604	72.8	725	758	363	146	54	25	1	-	170	47
1931년	20,366	55.7	860	814	273	229	32	120	1	-	159	93
1932년	45,214	123.5	781	700	194	263	20	39	18	4	162	174
1933년	84,412	231.2	672	637	156	268	58	25	1	2	127	209
1934년	79,510	217.8	448	507	151	195	80	-	9	2	70	150

연도	연인원	일 평균	입소	출소	내역							연말 현재
					석방	확정	집행유예	벌금과료	보석	사망	공소	
1935년	58,454	160.1	480	445	91	225	65	-	6	-	58	185
1936년	68,911	188.8	455	390	5	220	78	-	5	2	110	250

1930년부터 1936년까지 수형자 연인원, 일 평균 인원, 출입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출소는 만기석방, 가출옥, 형집행정비, 과감, 사망 등의 사유로 출소했으며, 1936년 말 수형자는 359명이 수용돼 있었다.

연도	연인원	일 평균	입소	출소	내역					연말 현재
					만기	가출옥	형집행정지	과감	사망	
1930년	110,551	302.8	381	271	249	4	2	12	4	342
1931년	115,241	515.7	495	429	405	10	2	6	6	408
1932년	113,626	311.3	526	657	614	22	3	14	4	277
1933년	108,965	298.5	387	387	340	20	7	31	1	265
1934년	92,553	253.5	343	343	250	20	3	13	3	319
1935년	126,757	347.2	407	407	300	18	5	30	4	365
1936년	131,582	360.5	399	399	350	21	6	39	3	359

1930년부터 1936년까지 노역장 유치자의 연인원, 일 평균 인원, 출입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노역장 유치자는 만기 또는 벌금 납부로 출소했으며, 1936년 말 21명의 노역장 유치가 수용돼 있었다.

연도	연인원	일 평균	입소	출소	내역		연말 현재
					만기	벌금 납부	
1930년	8,711	23.8	291	300	207	93	22
1931년	20,781	56.9	449	396	304	92	75
1932년	16,258	43.3	468	512	414	98	31
1933년	12,79	35.1	365	363	243	120	33
1934년	9,945	27.0	287	291	165	125	29
1935년	10,676	29.2	264	263	175	87	30
1936년	10,218	27.9	269	278	182	95	21

4. 수형자 현황

1) 수형자 형기별

1925년 2월 말 현재 수형자 남자 226명과 여자 10명에 대한 형기별 내역은 15년 이상 남자 2명,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남자 5명, 여자 1명, 5년 이상 10년 미만은 남자 38명, 여자 3명, 3년 이상 5년 미만은 남자 23명, 여자 1명, 1년 이상 3년 미만은 남자 51명, 여자 4명, 6월 이상 1년 미만은 남자 98명, 여자 1명, 6월 미만은 남자 9명이었다. 1930년부터 1936년까지의 수형자의 형기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연도	구분	15년 이상	15년 미만	10년 미만	5년 미만	3년 미만	1년 미만	6월 미만	3월 미만	계	합계
1930년	남	1	3	35	54	129	100	17	1	340	342
	여	-	-	-	-	1	1	-	-	2	
1931년	남	-	3	44	53	62	100	81	62	405	408
	여	-	-	-	1	1	1	-	-	3	
1932년	남	-	2	42	37	63	100	31	-	275	277
	여	-	-	-	1	1	-	-	-	2	
1933년	남	-	6	54	43	59	78	19	1	260	265
	여	-	-	-	1	4	1	-	-	5	
1934년	남	-	2	38	86	86	75	23	-	310	319
	여	-	-	-	3	3	3	-	-	9	
1935년	남	-	2	42	98	91	92	26	-	352	369
	여	-	-	-	3	4	1	1	-	13	
1936년	남	-	3	72	75	77	102	23	-	352	359
	여	-	-	-	2	4	1	-	-	8	

2) 수형자 입소 횟수(1925년 2월 말 현재)

입소 횟수	초범	2회	3회	4회	5회	계
인원	184	31	9	6	6	236

3) 수형자 연령별

1925년 2월 말 현재 수형자 남자 226명, 여자 10명에 대한 연령별 현황은 18세 미만 여자 1명, 18세 이상 20세 미만 여자 2명, 20세 이상 25세 미만 남자 34명, 여자 1명, 25세

이상 30세 미만 남자 59명, 여자 1명, 30세 이상 40세 미만 남자 85명, 40세 이상 50세 미만 남자 39명 여자 4명, 50세 이상 60세 미만 남자 5명, 여자 1명, 60세 이상 남자 4명이다. 그리고 1930년부터 1936년까지 수형자 연령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연도	구분	18세 미만	18세 이상	20세 이상	40세 이상	60세 이상	계	합계
1930년	남		5	251	82	2	340	342
	여			2			2	
1931년	남	37	25	260	83		405	408
	여			3			3	
1932년	남		9	191	73	2	275	277
	여			2			2	
1933년	남	1	4	198	56	1	260	265
	여			1	4		5	
1934년	남		1	250	56	3	310	319
	여	1		5	3		9	
1935년	남		21	304	47	3	356	369
	여			7	5		12	
1936년	남			303	46	2	351	359
	여	1		7			8	

5. 가출옥

1921년 2명, 1922년 18명, 1923년 19명, 1924년 10명이 가출옥으로 석방됐다. 1930년부터 1936년까지 7년간 범죄별 가출옥 인원 현황과 가출옥자 형기와 기간은 각각 아래 표와 같다.

구분	1930년		1931년		1932년		1933년		1934년		1935년		1936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강도	4		3		4		7		9		8		13	
살인									2	2	2			
상해			6		8		3		1		4		4	
통화위조					1		3	1	2					
방화							3		2				1	

구분	1930년		1931년		1932년		1933년		1934년		1935년		1936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강간														
사기			1		1								1	
약취					1				1					
횡령							1							
외설					2		2							
기타									1		2			
계	4		10		22		19	1	18	2	16	2	21	
합계	4		10		22		20		20		18		21	

연도	징역 형기							가출옥 형기			계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1년 이상	5월 이상	5월 미만	
1934년	5	1	2	9	1	1	1	-	8	12	20
1935년	2	2	10		2		2	1	10	7	18
1936년	-	1	14	5	1	-	-	1	14	6	21

6. 출정 인원

연도	출정 일수	출정 인원	계호자	일 평균		최다 및 최소	
				출정 인원	계호자	최다	최소
1922년	215	504	344	2.3	1.6	12	1
1923년	213	747	309	3.5	1.4	19	1
1924년	269	1,255	402	4.6	1.4	16	1

VI. 수용자 처우

1. 재감자 동작시간표

아래 재감자 동작시간표(1925년)는 청진형무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월별로 세분하고 있으며 작업시간은 겨울철인 1월과 7월에 7시간, 여름철인 6월과 7월에는 11시간에 달했다.

월	기상	청소 식사	취업	점심	종업	석식	환방	취침	작업 시간
1월	07:30	07:30 08:30	08:30	12:00 13:30	16:00	16:10	16:20	19:30	7시간
2월	07:30	07:30 08:30	08:30	12:00 13:30	17:00	17:10	17:20	19:30	8시간
3월	06:30	06:30 07:30	07:30	12:00 13:30	17:00	17:10	17:20	20:00	9시간
4월	06:00	06:00 07:00	07:00	12:00 13:30	17:30	17:40	17:50	20:00	10시간
5월	06:00	06:00 07:00	07:00	12:00 13:30	17:30	17:40	17:50	20:00	10시간
6월	05:30	05:30 06:30	06:30	12:00 13:30	18:00	18:10	18:20	21:00	11시간
7월	05:30	05:30 06:30	06:30	12:00 13:30	18:00	18:10	18:20	21:00	11시간
8월	06:00	06:00 07:00	07:00	12:00 13:30	17:30	17:40	17:50	20:00	10시간
9월	06:00	06:00 07:00	07:00	12:00 13:30	17:00	17:10	17:20	20:00	9시간
10월	06:30	06:30 07:30	07:30	12:00 13:30	17:00	17:10	17:20	20:00	9시간
11월	07:00	07:00 08:00	08:00	12:00 13:30	16:30	16:40	16:50	19:00	8시간
12월	07:30	07:30 08:30	08:30	12:00 13:30	16:00	16:10	16:20	19:30	7시간

2. 양식 및 식비

주식은 조 4할, 콩 6할을 혼합해 지급했고 일일 1인 평균 식비는 13전 2리였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11전 3리에 비해 1전 9리가 증가했다(곡물의 상승에 의함). 작업독려규정에 따라 성적이 좋은 자에 대해서는 증식의 급여를 하고, 소년자 처우의 주의사항에 따르는 외에 다른 형무소와 다르지 아니하다.

형무소비와 재소자 1년간 1인 비용

종목		1922년	1923년	1924년
재소자 일 평균 인원		233.1	264.4	270.4
형무소비	감독비	54,260.670	51,771.210	54,337.810
	식료비	6,972.000	11,273.000	12,160.000
	피복비	1,873.690	2,520.000	542,000
	기타 제비용	5,895.110	8,153.620	13,345.270
	계	69,001.470	73,717.830	80,385.080
재소자 1인에 대한 비용	감독비	232.779	195.806	200.953
	식료비	29.910	42.636	44.971
	피복비	8.038	9.531	2.004
	기타 제비용	25.290	30.838	49.354
	계	296.017	278.812	297.282
보합(歩合) (기타비용)	감독비	78.630	70.230	67.600
	식료비	10.100	15.290	15.130
	피복비	2.750	3.420	0.670
	기타 제비용	8.520	11.060	16.000
	계	100.000	100.000	100.000

※ 3년간 1인 1년의 비용 평균 290원 704로 하고 이를 재소자 1년간 연인원에 나눠 일일 1인에 대한 제경비 79전 6리가 됨

3. 상우

포상 인원은 1920년 1명, 1921년 3명, 1922년 8명, 1923년 4명, 1924년에는 31명에 대해 상을 수여했다. 1930년부터 1936년까지 상우표 부여 인원은 아래 표와 같다.

연도	1개	2개	3개	계
1930년	5			5
1931년	7			7
1932년	12			12
1933년	9			9
1934년	24	1		25
1935년	31			31
1936년	19			19

4. 징벌

1) 징벌 인원(1920~1924년)

연도	1920년	1921년	1922년	1923년	1924년
인원	2	39	32	69	39
(부가별)		2	8	36	7

2) 징벌 종류별 인원(1930~1936년)

감옥법상 징벌의 종류는 12종이 존재했으며 그 가운데 감식별이 가장 많이 사용됐다. 또한, 오늘날 금치에 해당하는 경병금(輕屏禁)은 1935년에 15건이 적용됐으나, 가장 무거운 징벌에 해당하는 중병금(重屏禁)(암실구금)은 사용된 적이 없었다.

연도	질책	상우 정지	상우 폐지	문서 등 열독 금지	청원 작업 정지	자변 의류 등 금지	자변 식정지	운동 정지	작업상 여금 삭감	감식	경병금	중병금	계
1930년	23			5				10	10	45			86
1931년	1						2		9	27			37
1932년	2			2						18			22

연도	질책	상우 정지	상우 폐지	문서 등 열독 금지	청원 작업 정지	자변 의류 등 금지	자변 식정지	운동 정지	작업상 여금 삭감	감식	경병금	중병금	계
1933년	4			3		1			4	40			52
1934년		2		1		10			1	30	15		60
1935년										12			12
1936년	2		1							17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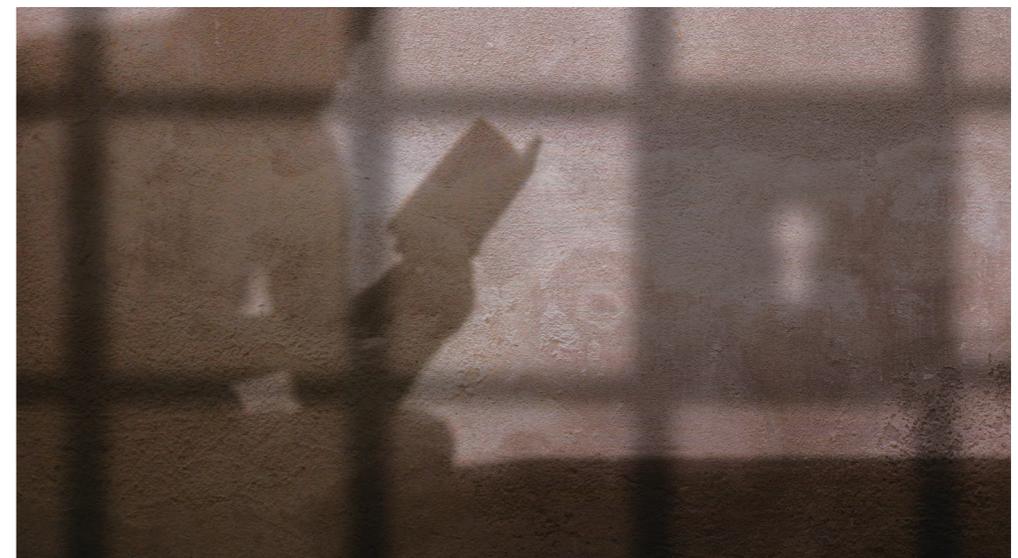
5. 환자 등

1920년부터 1924년까지 환자 현황은 1920년 환자 49명, 1921년 294명 1922년 198명, 1923년 263명, 1924년 166명이었다. 사망자는 1920년 4명, 1923년 6명, 1924년 2명이 발생했다. 1930년부터 1936년까지 질병별 환자, 완치, 사망, 연인원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감염 병성 및 전신병	신경계 질환	혈행기 질환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배뇨기 · 생식기 질환	피부 운동기 질환	외인에 의한 질환	기타 질환	계	
1930년	신환자	7	3	2	4	29	4	15	12	54	130
	완치	5	1	-	3	30	4	15	10	47	115
	사망	-	1	-	1	1	-	-	-	1	4
	연인원	603	160	75	85	633	98	637	198	454	2,943
1931년	신환자	3	6	3	16	20	2	5	4	35	94
	완치	-	6	3	15	16	-	6	3	36	85
	사망	2	-	-	1	2	1	-	-	-	6
	연인원	881	246	76	378	473	53	396	273	274	3,023
1932년	신환자	91	4	4	13	25	1	9	6	186	339
	완치	79	1	2	12	21	1	8	3	167	294
	사망	4	1	-	-	1	-	-	-	2	8
	연인원	1,128	80	92	905	248	31	208	98	1,496	4,259
1933년	신환자	33	16	2	26	25	3	44	22	45	216
	완치	21	14	2	21	18	2	37	19	44	178
	사망	1	-	-	-	1	1	-	-	-	3
	연인원	1,565	368	87	1,157	566	69	542	716	362	5,432

구분	감염 병성 및 전신병	신경계 질환	혈행기 질환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배뇨기 · 생식기 질환	피부 운동기 질환	외인에 의한 질환	기타 질환	계	
1934년	신환자	21	2	3	16	31	2	22	11	4	113
	완치	9	2	4	18	26	2	22	7	5	95
	사망	1	1	1	-	2	-	-	1	-	6
	연인원	657	16	184	840	508	36	542	214	28	3,025
1935년	신환자	22	3	6	8	15	8	40	7	39	148
	완치	16	4	4	16	21	6	34	9	28	138
	사망	1	-	-	1	-	-	1	-	1	4
	연인원	568	36	144	167	227	177	681	179	712	2,891
1936년	신환자	26	13	6	14	15	8	39	15	22	158
	완치	19	15	7	11	16	7	41	13	16	145
	사망	3	-	-	1	-	-	-	-	-	4
	연인원	921	337	324	735	308	243	611	351	368	4,198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교정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관한 연구



정진영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교정관

I. 서론

II. 국내 교정정보 운영 현황

III. 교정정보의 수집

IV. 해외 현황과 사례

V. 결론

I. 서론

1. 배경

(1) 해외 교도소의 급진화 사례

지난 6월 온두라스의 테구시갈파 외곽 타마라에 있는 여성 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던 갱 조직원들끼리의 다툼이 격화돼 4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감시인력과 장비의 부족, 교도관의 부패 등의 문제가 심각해 교도관 대신 수용자들이 규칙을 정하고 금지 물품의 판매가 성행한 곳이었다. 이번 폭동과 그로 인한 사상자 발생은 무너진 교정행정으로 인한 예견된 결과라는 것이 주된 평가이다.

영국 킹스 칼리지의 국제 급진연구소(ISCR)에서 2016년 10월 발간한 보고서¹⁾에 따르면 유럽 출신 무장단체 조직원 57%가 교도소 복역 경험이 있으며, 65%가 강력범죄에 연루됐던 자들이다. 이는 유럽 교도소가 빠르게 새로운 테러범죄 집합체로 전략하고 있으며 테러단체의 조직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수용 전까지만 해도 테러단체와 관계가 없던 일반범들도 테러범과 접촉하고 교류하며 급진화되고 있는 것이다. 피터노이만 ISCR 소장은 이제 유럽에서 테러범 모집은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종교시설이나 대학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난 세대의 모집 방식과 달리 앞으로 지하디스트의 움직임에 교도소 및 구치소의 역할이 계속 중요해질 것이며, 특히 수용자 수가 너무 많아 교도관이 수용자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수용환경이 불안정한 교정시설에서 급진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교정시설을 안전하고 정돈된 환경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2) 국내 마약 범죄 증가 추세

정부는 2023년 4월 1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광범위한 마약류 범정부 차원 계획을 수립했다.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세우고 추진해 왔으나,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유명 배우의 마약 투약 등 마약류 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탓이다.

2022년 마약 백서²⁾에 따르면 2022년 마약류 사범은 18,395명으로 5년 전인 2018년 대비 45.8% 증가했다. 압수량은 5년 전보다 93.9% 증가했다. 밀수 사범도 2018년보다

1) 「과거의 범죄자, 미래의 테러범 Criminal Past, Terrorist Future」.

2) '23.7.5. 대검찰청 2022 마약 백서.

167%, 외국인 마약사범은 160.9% 늘어났다. 마약류 범죄 계수³⁾를 통해 전체 인구 대비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살펴보면 2012년 18이던 계수가 2015년 23, 2020년 35까지 증가해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마약은 개인의 범죄가 아니다. 마약의 제조와 판매, 중간상의 거대하고 복잡한 마약 조직이 개입하므로 마약 범죄의 증가는 곧 거대한 사회 위협이 될 것이 자명하다. 갈수록 정교해지는 마약 범죄에 맞서 교정 책임자는 시설 내 마약류의 반입과 수용자들 간의 정보의 교환과 확산을 근절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

2. 필요성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교도소 급진화 가능성이 있는 범죄단체인 갱(gang) 조직과 카르텔을 형성하는 마약 사범들을 보안 위협 그룹(STG, Security Threat Group)라 지칭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관련 범죄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교정 사고와 금지 물품 반입 등을 즉각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하므로 안전한 교정환경 조성에 필수적이며 나아가 추가적인 범죄를 막아 수용자들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사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 위협 그룹 관리의 첫 단계가 바로 교정정보의 수집이다.

(1) 교정정보의 의미

교정정보란, 교정시설의 보안 유지·관리에 관한 결정에 고려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처리한 전략적 가치를 가진 정보를 의미⁴⁾한다. 범죄단체나 마약 범죄 같은 보안 위협 그룹은 교정시설의 보안에 큰 위협이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곧 교정시설 보안에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

(2) 교정정보 전담 부서

전 세계적인 보안 위협 그룹 관련 수용자의 급격한 증가는 교정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관여하는 교정 부서의 필요성을 강하게 내포한다. 이제 전통적 정보처리기관인 경찰과 국정원 등에 더해 범죄자들을 직접 접하고 관리하는 교정공무원도 보안 위협 그룹 관련 수용자들에 대응하는 전략계획 수립 및 실행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를 위해 위협의 특성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 한편, 기관의 보안관리와 관련한 정확

3) 마약류 범죄 계수란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체적인 산출은 마약류 사범 수를 총인구수로 나눠 10만을 곱해 나타낸다. (마약류 사범 수÷총인구수)×100,000

4) The Use of Intelligence, Federal Prisons Journal, Spring 1990.

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기반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해외의 경우 각국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교정정보 정책과 전담 부서 시스템이 존재한다. 가령 캐나다⁵⁾의 경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원주민 범죄가 문제시되므로 원주민과 비원주민으로 나뉘 별도의 정보 관련 정책을 운영 중이며, 여러 유형의 갱 조직이 골칫덩어리인 미국⁶⁾의 경우 시설별로 나뉘 지역의 갱 조직을 감시 및 관리하는 형태의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민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이제까지 범죄 조직으로 인한 위협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점차 고도화되고, 신속해지고 있는 조직폭력 범죄와 두드러지고 있는 마약 범죄 증가 경향에 맞춰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고 체계적으로 범죄자 정보를 수집·관리해 수사와 치안에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용자로부터 얻어낸 정보들을 이용해 사회 범죄 예방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교정의 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특별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교정시설 내에서 교정정보 수집 활용의 예⁷⁾

미국에서 바이커 갱단원의 교정시설 수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 경쟁 관계의 집단이라도, 서로 연결되는 범죄의 특성상 대부분의 바이커 갱은 백인 우월주의 및 극단주의 집단과 교류가 활발함. 내부 수집 정보에 따르면 바이커 갱의 특정 구성원에게 백인 우월주의 집단이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며 접근했지만 여러 차례 거절한 전력이 있음.
- 이때, 폭력 사건 발생의 가능성이 현저해 보이지 않더라도 바이커 갱의 집합력과 폭력 성향 및 폭력 사건을 계획하거나 실행했던 전과를 근거로 위협평가를 진행해 ‘보통 위협’ 수준으로 지정해야 하며, 추가적인 감시 관찰과 능동적 정보 수집계획의 수립 및 일반 직원들의 위험성 인식이 필요함.
- 위협평가는 특정 교정기관에서의 수용자 또는 외부 접촉자의 주도로 발생하는 활동 및 그로 인한 결과를 다양한 각도와 관점으로 평가.

ex) 갱단 두목은 치안이 불안한 지역으로 귀휴 보내는 행위, 특정 폭력 성향 수용자의 세부 심야 작업 배치 및 할당 행위 등

5) Federal Offenders Affiliated with Security Threat Groups, 2022.

6) Managing prison gangs: Results from a survey of U.S. prison systems.

7) Key Principles of Security Threat Group Intelligence Operations in Jails, April 23, 2021, Christopher Munley.

II. 우리나라의 교정정보 운영 현황

1. 국가정보원 차원의 정보 수집 및 관리업무

우리나라는 정보업무 담당 기관인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교정시설의 정보 수집과 관리를 담당해 왔다. 국가정보원법 3조 2항⁸⁾에 근거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에 보면 5조 조정업무의 범위 규정의 4호⁹⁾에 법무부가 국정원장의 정보·보안업무 대상기관으로 명시돼 있으며, 가목의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 마목의 정보사범 등의 보도 및 교도에 관한 사항이 국가정보원의 교정시설 정보 수집 업무의 근거가 된다. 2021년 국가정보원법의 개정¹⁰⁾에 따라 현재는 외국인 범죄에 한정해 정보 수집과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8) 제3조(국정원의 운영 원칙) ② 국가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보의 수집 목적에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9)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해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과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4. 법무부 가.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
 마. 정보사범 등의 보도 및 교도에 관한 사항

2. 교정특별사법경찰의 정보반

(1) 특별점검팀의 신설

2023년 초 교정본부는 특별점검팀을 신설해 정보 전담 부서로 지정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5조 1호 및 2호¹⁰⁾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받은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은 6조에 따라 교도소와 구치소 등의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3조¹¹⁾에 따라 범죄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의 수집 및 처리 권한을 가질 수 있다.

(2) 조직 체계

교정본부의 지휘 아래 각 지방교정청에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이 있고, 그 안의 수사정보반에서 교정정보를 담당한다. 서울구치소 등 11개 대형 교정기관의 특별사법경찰팀은 정보반에서 정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외의 44개 교정기관은 보안과 특별사법경찰대가 있어 정보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정보업무 현황

특별사법경찰팀(대)에서 교정 첩보 수집 담당 직원이 공안·송무·인권 등의 고유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아직 전담 직원을 운영하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2023년 1월, 특별사법경찰대 구성 이후 법무부에 보고된 교정 첩보 건수는 2월 3건, 3월 11건, 4월 1건, 5월 8건, 6월 9건으로 집계돼 활성화가 필요하다.

10)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지명)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해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1) 제3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라 범죄수사 및 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7.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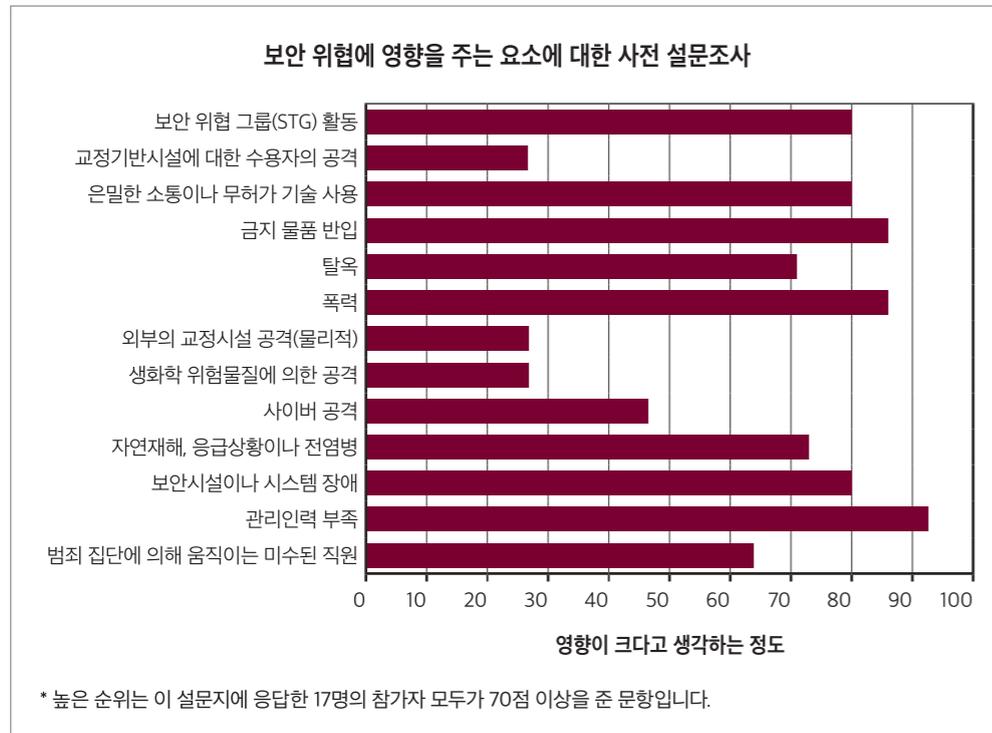
Ⅲ. 교정정보의 수집

1. 보안 위협 요소와 교정정보

(1) 보안 위협 요소란

보안 위협이란 교정시설 안팎을 불문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를 의미한다. 미국 법무부가 교정 공무원과 전문가들로부터 취합한 보안 위협 요소에는 다음의 13가지¹²⁾가 있다.

<그림 1>



① 보안 위협 그룹 STG(Security Threat Group)

미국·캐나다와 같은 서방 국가에서의 보안 위협 그룹이란 갱이나, 원주민 조직과 같은 지역이나 인종에 따라 공통된 특성을 가지는 관습적인 집단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들은 자신들만의 강령 등 견고한 조직을 이루고 체계적인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이익집

12) Countering Threats to Correctional Institution Security, Criminal Justice.

단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크기나 인종 등에서 서양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므로 보안 위협 그룹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 교정시설에서의 보안 위협 그룹은 현재 교정 처우 측면에서 엄중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조직폭력·마약범죄자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보안 위협 그룹은 처우 그룹과는 명백히 구별되며 수용자의 개인 성향이 아닌 그로 인한 시설 보안 영향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별도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그 기준에는 조직·마약 범죄 해당 여부 및 개인의 폭력 성향과 조직 창설 성향, 타인에 미치는 영향도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평가 요소들이 반영해야 할 것이다.

② 교정기반시설에 대한 수용자의 공격

물리적인 시설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 단순하게는 수용된 거실의 집기 등에 대한 파손부터 극단적으로 탈출이나 폭동을 위해 무기 등을 활용해 문이나 벽의 잠금장치를 부수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③ 인지되지 않는 소통이나 허가되지 않은 기술 사용

다른 거실 수용자 간의 이동 중 불필요한 대화, 교도관이 인식할 수 없는 금지된 대화 및 대화 이외의 행동 등을 통한 비밀스러운 의사소통 혹은 인터넷·전화 등 통신수단의 무단 사용은 종종 교정 사고의 발단이 되는 범죄 모의로 발전한다.

조선일보 2023.03.28. [단독] 운동하는 척 벽에 손 글씨... 정명석 추정 인물, 교도소서 신도에 신호 보냈다.

본지는 최근 JMS 전 신도라고 주장하는 A씨가 자신이 2016년 녹화했다는 영상을 입수했다. 이 영상에서 정씨로 추정되는 이 인물은 수의를 입은 채 다른 수용자들을 피해 교도소 운동장 한쪽 구석에 숨었다. 이 인물은 오른손으로 벽을 짚은 채 다리 운동을 하는 척하다가 곧 손으로 벽에 한 글자씩 글씨를 쓰기 시작한다. 그가 손짓으로 쓴 글씨는 '주사랑 종류석 가보라 편지 간다'였다.

A씨는 정씨 추정 인물이 쓰는 글씨를 확인하고는, 흰색 수건을 창문 밖으로 내걸고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그 장면도 영상에 담겼다. A씨는 "당시 교도소로부터 400m 정도 떨어진 아파트 고층 복도에서 망원경으로 영상을 촬영했다"며 "정씨 운동시간을 미리 알고 정씨와 약속한 장소에서 대기했다"고 주장했다.

④ 폭력

수용자 간 폭행,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으로 이어져 교정 사고의 원인이 된다.

⑤ 탈출

허가 없이 정해진 수용 거실이나 수용시설을 벗어나는 행위 전부를 의미한다.

⑥ 금지 물품의 밀반입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과 핸드폰의 교정시설 무단 반입 및 사용이 문제 되는 추세이다.

⑦ 생화학 물질에 의한 공격

교정시설 내에 유독가스나 세균·바이러스 등 생화학 물질을 우편이나 접견, 특히 드론 등의 방식으로 살포하는 경우 등 새로운 위협 유형에 해당한다.

⑧ 외부의 교정시설 공격

사회의 폭동 등 외부 선동세력으로 인해 국가 기반 시설인 교정시설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⑨ 사이버 공격

통신시설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냉난방·수도·전기 및 통신 시스템의 교란을 일으킨다면 점점 더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지는 환경에서 교정행정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교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⑩ 자연재해, 응급상황이나 전염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재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경우 교정시설의 폐쇄나 훼손 등으로 이어져 교정사고의 원인이 된다.

⑪ 보안장치나 시스템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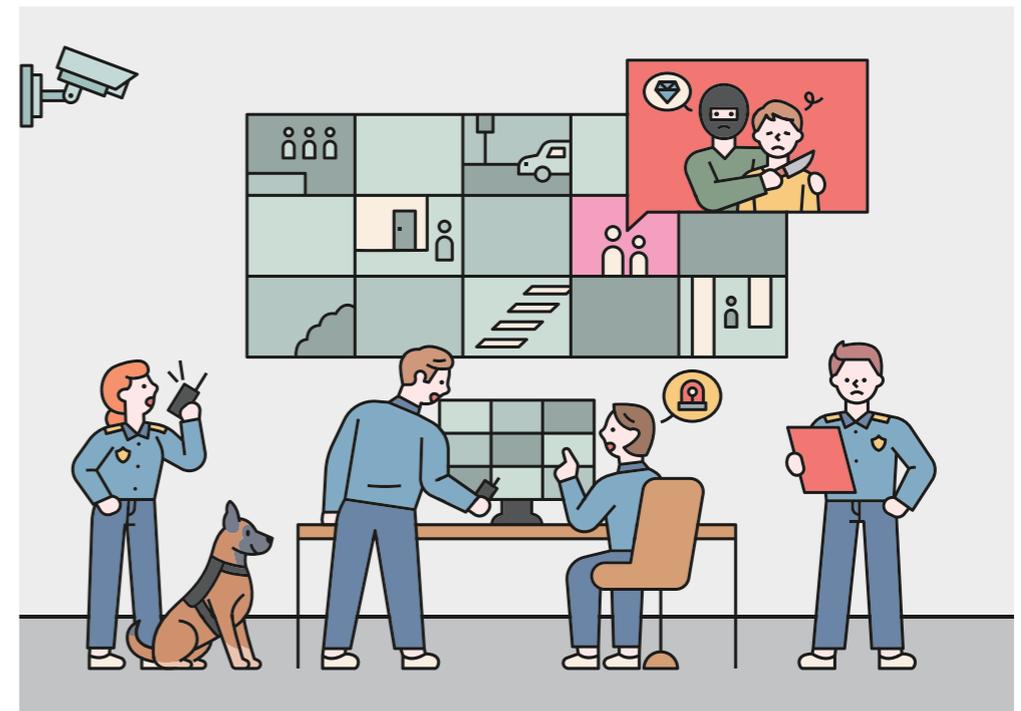
사이버 공격을 제외한 우연한 사건·사고에 의한 보안장치나 교정시스템의 장애가 있다면 교정행정의 오작동으로 인해 교정사고의 계기가 될 수 있다.

⑫ 부실한 직원 관리

인력과 교육·훈련의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적절하지 않은 직원 배치는 기관이 보안 위협을 억제, 방지 및 대응하는 능력을 저해한다.

⑬ 범죄 집단에 의해 매수된 직원

수용자들을 통제해야 하는 직원이 오히려 범죄자 집단에 의해 매수된 경우는 교정환경이 불안한 국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심각한 보안 위협 요소에 해당한다. 이는 수용 질서 혼란으로 교정행정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2) 교정정보 수집의 기능

이제까지 탈출, 마약 밀매, 갱단 활동 또는 폭행 등 다양한 보안 위협 요소에 대한 수용자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를 사전에 저지했던 성과들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정교하게 수집·발전된 교정정보를 기반으로 했다. 대부분의 평온한 교정행정에서 교정정보의 역할은 이면에 묻혀 그 존재 가치를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순간에도 교정정보는 끊임없이 수집돼야 하며 기능하고 있다.

디지털 타임스 2023.07.05. 22:27 들통난 김봉현의 세 번째 ‘프리즌 브레이크’...

친누나 구속영장

서울남부지검이 5일 수용 중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로 친누나 김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김 전 회장이 탈옥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동료 수용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는 등 수용 중인 동생을 구치소에서 빼내려 한 혐의(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를 받는다.

이들은 영화 ‘프리즌 브레이크’의 주인공처럼 탈출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나려고 누나 김씨와 함께 계획했다. 또 미리 준비된 차로 교통사고를 낸 뒤 사설 구급차로 도망치거나, 방청객으로 위장한 조력자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이를 틈타 달아나는 등 여러 가지 도주 시나리오를 꾸민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에 있던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밖에 있는 누나는 수용자의 지인을 만나 실제로 착수금을 건넸다.

그러나 돈을 받은 지인이 수용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검찰에 신고하면서 계획이 들통났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수용자에게 달아날 계획을 논의하면서 보낸 편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문건 등을 확보했다. A4 용지 수십여 장 분량의 문건에는 시간대별로 짜인 도주 계획과 동선뿐만 아니라 검찰과 법원 청사 조감도 등이 담겼다. 이러한 물증을 확보한 검찰은 2심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누나 김씨를 체포하고 구체적인 탈주 계획을 추궁했다.

① 금지 물품의 반입 및 거래 저지

교정정보는 교정시설 내 금지 물품의 밀반입 저지로 안전한 교정환경을 조성한다. 시설 내 밀반입 및 거래 적발은 교정정보 분야가 즉각적으로 기능하는 핵심적인 분야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수집된 정보 없이는 그 은밀한 흐름을 감지하기가 쉽지 않다. 정보국은 상시적인 관찰과 감시를 통해 시설 내 밀반입품에 대한 정보 리스트를 보유하고 범죄자 명부와 직원 전화번호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동원해 밀반입·밀거래의 단서를 수집하고 중간책들을 파악할 수 있다.

② 범죄의 예방과 해결

특정 주제에 대한 관찰 대상을 찾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모의 단계에서 범죄를 저지한다. 특히 금지 물품인 총기와 마약의 경우는 교정정보의 수집이 범죄 예방에 절대적이다. 은폐 방법, 가격 책정 방법 및 매매 경로 파악으로 판매처 단속과 근절이 이뤄지며 이로써 치명적인 사상의 결과와 광범위한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다.

③ 관리역량의 집중과 향후 정보망 확장

세밀한 교정정보의 수집은 보안 위협 그룹 구성원의 가담 및 폭력 성향 정도를 구분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적인 구성원을 특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조직 이탈자들을 선별해 향후 기밀정보원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밀정보원은 상급 정보 수집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 향후 정보망의 확장을 꾀할 수 있게 한다.

④ 교정정책 수립의 기반

정보 분석 결과에 따라 재소자 행동 경향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확정할 수 있다. 주로 통신, 거래, 개인 연관을 분석해 주제를 식별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세우거나 보완·폐지 등의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⑤ 교정정보가 필요한 관련 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유지에 유용

교정시설의 폐쇄적 특성으로 외부에서는 내부의 정보를 얻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정정보의 전담 부서 운영은 시설 내부의 정보를 수집해 관련 기관인 검찰·경찰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다양한 협업 관계에서 교정정보를 활용한다면 교정 당국의 국가적 위상을 높여 향후 높은 수준의 교정행정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2. 교정정보 수집의 핵심 원칙

(1) 헌법상 요건, 법령, 정책 및 절차 지침의 절대적 준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고 사생활에 대한 개인의 합리적인 기대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정보작업은 기관의 운영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기관은 ① 정보 수집과 개발 절차 전 과정을 다루는 규정과 ② 규정 준수 여부의 측정과 프로그램 검토 지원을 위한 감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 수집 계획 자체가 상황에 적절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유능하고 윤리적인 교정전문가를 양성하고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더해 이렇게 수집된 정보의 평가와 대조 등 숙련된 분석이 이뤄져야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급이 이뤄져야 비로소 정보의 가치가 보장될 수 있다. 특별히 보안 위협 그룹을 통제하기 위한 경우, 교정정보체계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새로 구축된 교정정보체계가 교정행정 시스템의 필수 요소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발견되는 오류를 시정하고 상황에 맞추어 개선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적절한 담당자의 지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일단 교정정보를 전략적과 운영상의 두 부류로 나눠 전략적 교정정보의 경우 정책의 사결정자·부서장 및 보안 위협 그룹 담당자에 의해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다소 단순하고 일반적인 운영상의 교정정보는 매뉴얼을 작성해 실제 정보 수집과 연결 및 개발 절차에 기본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전략적 정보 Strategic Information

본래 사전적 의미는 정보 기술을 업무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이다.

따라서 교정에서의 전략적 정보란, 범죄자 교정 교화와 사회 치안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정보로서 보안 위협 그룹의 정체성, 구성원 강도, 규칙, 모집 노력, 예상 강도, 문신 또는 상징 사용과 같은 인식, 기술 수준, 선호 전술, 외부 지원 조약, 동맹, 다른 그룹과의 불화, 유사 형태의 세부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상시적 관찰과 보고의 중요성

정보 수집의 기본원칙은 상시적 관찰이다. 교정시설 내부에서의 효과적인 정보 수집은 모호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기관 내부와 지역 사회 외부에서의 상시적 관찰이 중심이 된다. 특히 수용자 그룹 소속 여부·문신·드러나는 동맹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정정

보를 기반으로 수용자 분류, 수용 거실 지정 또는 의료·법원 이송을 위한 보안 예방 조치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 복잡한 정보의 연결 및 분석과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보고는 정보 공유와 연결·발전의 전제이므로 기관 내의 모든 직원은 상시 시설 내외부를 관찰하고 보안 위협 정보 담당자에게 주기적·즉각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3) 강력한 선제적 대응책이 될 것

교정정보 수집 및 개발의 목적은 수용자에 대한 지속적 접촉을 통해 기관 내외부에서 범죄를 방지하는 선제적 대응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는 잠재적인 보안 위협 그룹의 두목과 구성원에 대한 완벽한 사전 경고가 돼야 하며, 그들이 구금된 경우 전적으로 무능력해짐을 국가 사법 체계로 증명하는 것이다. 국가는 범죄자 수용으로 관련 범죄가 근절될 것이라는 지역 사회의 합당한 기대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물 반입·배포, 탈출, 계획된 폭력 등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 아닌 능동적인 예측과 조사의 진행이 곧 교정행정의 역량이 되므로, 정교하고 정밀해지는 보안 위협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높은 가치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타 기관의 유사 보안 위협 그룹의 정보와 연결돼야 하며 철저히 해당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4) 정보의 연결과 개발 절차 필요

교정시설 내 정보들은 타 기관 정보와 병합돼 정보 가치가 증대된다. 따라서 법집행기관 외부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 유지가 교정정보 기능 가치 구현의 핵심¹³⁾임을 염두에 두고 그를 위한 절차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 업무보고·회의에 관련 기관 담당자를 초대해 그들의 업무 현황과 요청을 파악하고 이를 위해 전담팀이나 담당자를 배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된다.

관계자 간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¹⁴⁾을 전제로 일단 관계를 확립하면 해당 구역에 연락 지점이 생겨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타 기관으로 확장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의 요구와 공동 노력의 성공을 알리는 후속 조치 및 피드백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13) 예를 들어, 보호 관찰 사무소 중 일부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경우 집행유예자와 진행 중인 범죄 활동 사이의 관계를 발견한 것이 계기가 돼 집행유예와 가석방 시 범죄 발생을 주요하게 모니터링.

14) 인디애나 주는 특정 관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행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경찰서 등에 전화해 성명과 직급, 보유 정보 종류를 말하면 정보 공유 대상을 알려줌.

3. 교정정보 수집 과정: 실제 정보 수집 절차 5단계

(1) 수집계획 수립

교정정보 수집계획이란 광범위한 개념으로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은밀한¹⁵⁾ 수집 계획까지도 모두 포함한다.

1차로 뉴스·SNS·보안 위협 그룹 자체 혹은 경쟁단체의 출판물·법원 기록·조직범죄·테러 관련 전문 저널 등의 오픈 채널에서 원시적인 정보 수집이 이뤄지며 교정환경은 2차적 정보원으로 연관 정보 파악에 상당히 용이하므로 주된 정보 수집의 원천이 된다.

(2) 정보의 평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가치가 없으므로 수집된 정보의 신뢰도 및 출처의 신뢰성을 점검해 단순한 소문과 구별되는 양질의 정보를 선별해야 한다.

(3) 자료의 정렬과 분류

수집된 정보가 높은 가치를 가지더라도 정렬과 레이블 지정을 거쳐 교차 색인화되지 않으면 실제적 활용이 어렵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기준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정렬·분류하는 작업 또한 중요하다.

(4) 정보의 분석

정보의 분석은 교정정보 수집 절차의 핵심에 해당한다.

분석의 첫 단계는 정보의 연결과 조합이다. 관련 없어 보이는 정보의 다양한 측면들 속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연결하며 그로 인해 생성되거나 조합된 의미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정보들은 상호 비교되거나 순서가 지정된다.

두 번째 단계는 가설의 설정이다. 단편적인 정보들에 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가설을 테스트하는 과정은 정보 연결로 인한 의미 발견과 강조에 도움이 된다. 또한 새로운 정보에 대한 확장된 수집계획을 촉발할 수 있으므로 필수적인 정보 분석과정에 해당한다.

15) 실제로 은밀한 수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정보의 양에서 극히 미미함.

(5) 정보의 보급

수집 분류 과정을 통해 엄선된 정보의 보급은 정보가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결정적 단계에 해당한다. 정보를 전 직원에게 도움이 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배포하되, 진행 중인 조사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타협점을 설정해야 하며 아울러 제3자 공개범위에 대한 신중하고도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직접 복제 및 배포할 수 없고 자체 문서 작성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하는 것이 기관 간의 암묵적 규칙임을 유의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모든 정보의 검증은 필수이다.

4. 교정정보와 교정정책

(1) 정확한 교정정보에 기반한 교정정책 수립

수용자의 현황이나 성향 등의 교정정보는 일상적 수용시설의 안정적 운영뿐만 아니라 향후의 교정정책 수립에도 필수적이다.

기존의 보안 자산을 관리하고 추가 시설의 필요성을 예측하는 경우 교정정보에 입각해 미래의 범죄 경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며 사회학적 정보들과 결합해 보안시설의 증설 수요를 확정할 수 있다. 나아가 관계 부처와 관련된 교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 예산 및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고 교정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 취득 절차 등의 물리적 문제 해결에도 직·간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교정시설의 비상 상황, 즉 드론과 경계 위반 등의 문제, 지하 침입 탐지, 탈출 방지 및 외부 공격과 같은 위협을 고려한 비상 계획 등을 세우는 데에도 교정정보는 유효하게 활용된다.

(2) 교정정보 관련 정책 수립 시 고려 사항

교정정보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정보 자산과 기관 간 관계 및 기밀정보원 보호 등 정보보안이다. 보안은 정보의 기본 전제가 된다. 보안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공개정보가 돼 정보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며 오히려 정보 수집 과정 등이 유출돼 공격받을 위험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정보 보안을 위한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둘째로 전략적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검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위협의 유형을 개념화하고 그에 대해 설정한 여러 가지 가설 등의 전략적 정보를 통해 교정전문가는 특정 보안 문제의 범위와 위협 그룹의 패턴을 상세히 익힐 수 있다. 또 이전에 설정한 가설들에 도전하고, 정보 간의 우선순위를 재평가·재정렬해 교정정보 처리의 임무가 지향하는 목표 설정 능력을 갖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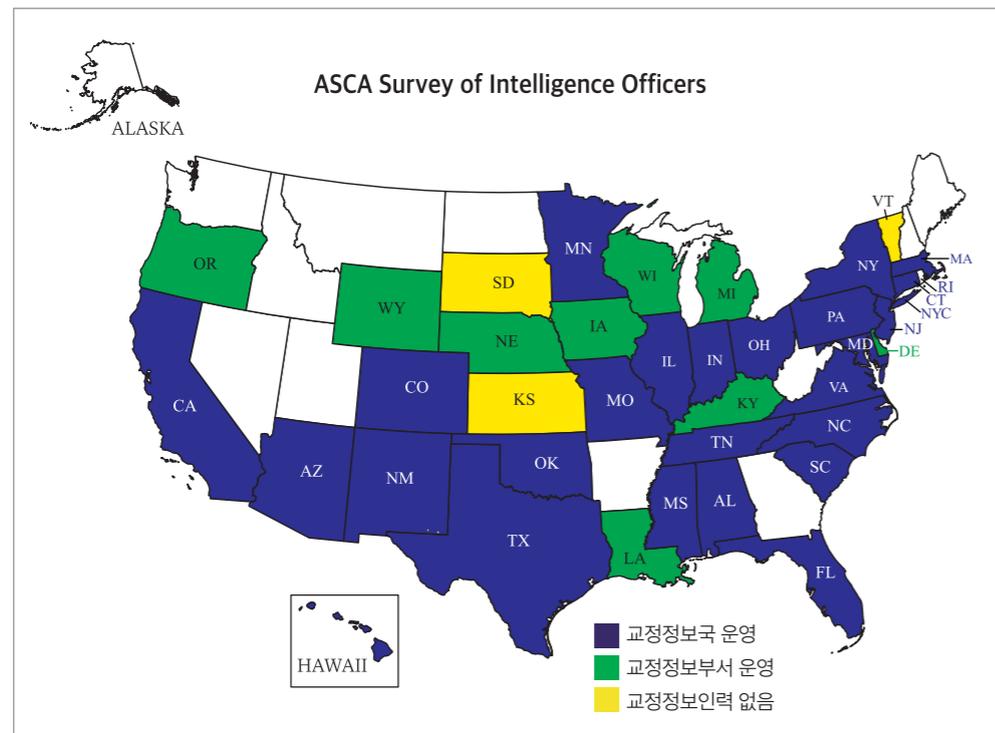
수 있다. 이는 보안 리소스 할당, 범죄 억제 및 보안 절차 평가를 관리하는 등으로 기관의 보안 및 전략계획 절차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때, 지속적인 테스트를 시행해 절차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셋째로 직원과 관계자의 역량 개발 과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수용자와 접촉하는 모든 직원과 공급업체, 계약자 및 자원봉사자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 위협에 민감해야 하므로 위협 발생 시 이를 감지하고 저지할 수 있는 시각 및 인식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필수적 교육 사항으로 해야 한다.

IV. 해외 현황과 사례

1. 미국

<그림 2>



미국의 경우 28개 주에 교정정보국¹⁶⁾이 존재하며 483명의 전담 정규직 인력이 있고 376명의 기타 업무 겸임 인력이 배치돼 있다. 8개 주의 경우 교정정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94명의 정보원이 기타 업무를 겸해 정보업무 수행하지만 캔자스, 사우스다코타, 버몬트의 3개 주는 정보 담당자가 없다.

다음에서 델라웨어, 뉴멕시코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검토하고, 웨스트 미시간 주의 범죄 조직 검거 사례에서 교정정보 운영의 국가적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 주는 2017년 James T. Vaughn 교정 센터에서 수용자들의 폭동으로 교도관 Steven Floyd가 살해되는 일이 계기가 돼, 2020년 9월 17일에 주지사 John Carney와 교정 지도자들이 Department of Correction Intelligence Operations Center(IOC)를 출범시켰다.

Steven Floyd 사건

델라웨어의 가장 큰 주립 교도소인 James T. Vaughn 교정 센터에서 2017년 2월 1일 오전 10시 30분 수용자 100명이 폭동을 일으켜 교도관 4명을 인질로 잡아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수용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축소가 우려된다는 명분으로 수용자 처우 보장을 요구하며 대치한 사건이다. 당시 주정부가 타협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19시간 만에 교도소 진입에 성공한 경찰에 의해 진압됐으나, 교도관 Steven Floyd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으로 16명이 Steven Floyd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3명이 일급살인죄를 선고받았다.

델라웨어 주 교정정보센터는 교도소 내 특수 작전 그룹이 운영하며 정보 분석가 및 현장 조사원 등 12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시설의 보안 직원과 협력해 수용자 간의 범죄 집단 조직 및 활동, 밀수품 탐지, 조직범죄, 기업이나 개인에 의한 조직적 위협 등의 정보를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한다.

교정정보센터는 교정시설 전반에 걸친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예방에 주력한다. 관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나아가 수용자가 주도하는 폭동 등을 방지해 교정기

16) 델라웨어 주는 '20.9.17 교정정보부서를 교정정보국(교정정보운영센터 IOC)으로 전환.

관과 직원 수용자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된다. 또한 새로운 수용자의 갈등 상황을 공유해 폭력을 예방하며 수용자 이동에 대한 결정을 사전에 알리고 내부 징계 조사에 기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뉴멕시코 주

뉴멕시코 교정국에서는 보안위협관리국(OSTM)¹⁷⁾에서 교정정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안위협정보부(SITU)¹⁸⁾, 성인교도소(APD)¹⁹⁾, 보호관찰·가석방부(PPD)²⁰⁾의 도주체포팀(FAT)²¹⁾으로 구성된다.

① 보안위협관리국(OSTM)

보안위협관리국(OSTM)은 지역, 주 및 연방 법 집행기관에 대한 주요 연락 담당자로 뉴멕시코 교정국 내의 관리자 및 감독자에게 적시에 적절하고 정확한 동기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OSTM 구성원은 NMCD, 지역 및 국가 정보 커뮤니티 전체 공유를 위한 정보를 생성하며 공공 안전 보호를 위해 범죄 정보 커뮤니티를 통솔하고 전문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보안위협정보부(SITU)

보안위협정보부(SITU)는 성인교도소(APD) 및 보호관찰·가석방부(PPD) 부서를 통괄하며 뉴멕시코 교정시설에 수용된 교도소 및 거리 갱단원과 보호관찰·가석방 중인 사람들을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할 책임을 진다. 또 감옥과 거리의 갱단원, 그리고 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구금 및 기관 배치와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하는 분류심사팀과 보안팀에 정보를 제공하며 보호관찰·가석방 상태에 있는 고위험 범죄자는 PPD의 STIU 담당관이 식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STIU는 뉴멕시코 교정시설과 커뮤니티에서의 마약·위험물의 반입 방지와 억제 및 폭력의 사전 예방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전국 교정 부서, 보호관찰·가석방 부서, 연방, 주 및 지방 법 집행기관과의 연락책 역할을 하며 일상적으로 정보 및 정보 교환 업무를 담당한다.

17) The Office of Security Threat Management.

18) The Security Threat Intelligence Unit.

19) Adult Prison Division.

20) Probation and Parole Division.

21) Fugitive Apprehension Team.

최근, NMCD와 STIU는 다양한 보안 위협 그룹과 거리 갱단 사이의 폭력적인 반목 해결의 첫 단계로 교도소 안팎에서 폭력적인 불화를 조장하는 갱단 지도자와 갱단 구성원 식별을 위한 STIU 평가를 주 전체에 걸쳐 수행했다. 이에 따라 즉각적이고 계획된 조치로서 폭력 성향과 발생위험을 부지런히 파악하고 새로 형성된 갱단 경쟁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 및 추적 문제와 할당을 적절하게 해결해 계속되는 갱단 관련 폭력을 진압하고 억제하는 데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③ 갱 활동 억제와 저지

뉴멕시코 교정국은 다수의 New Mexico Gang and Terrorism Task Force를 조직해 모든 공공시설 단지와 갱 활동이 많은 지역 사회의 갱 적결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범죄 조직으로 인한 실상을 알리기 위해 법 집행기관, 카운티 교도소, 사법기관, 학교, 전국 수준의 회의에 갱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유명한 관련 사건에서 전문가의 증언을 제공하며, 갱단 폭력 활동의 성공적 억제와 범죄자 체포 등을 위해 법 집행기관과 협력함을 업무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한 STIU는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효과가 입증된 훈련 매뉴얼에 따라 마약 탐지, 도망자 체포·순찰에서 모든 팀을 표준화하고 인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다.

(3)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 교정국의 경우 28명의 교정정보 분석가를 두고 있으며 교정국 본부에 8명, 각 교정시설마다²²⁾ 평균 3명씩 근무하고 있다. 특히 가석방 부서의 교정정보분석가는 교정시설에서의 정보뿐만 아니라 가석방 후 수집된 정보 및 데이터를 결합하는 역할까지도 해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현재는 GPL 공급업체가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전자 메시지 파일을 보관하며 영상 접견·금융기록 등을 남기는 것이 주된 정보 수집의 수단이 되며, 내부 사례분석 프로그램인 SAS를 활용한다. 독자적인 정보 분석 프로그램은 없지만 링크 분석 프로그램 퓨전센터와 파트너십을 맺어 정보 분석에 활용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I2 또는 PLO LexisNexis²³⁾ 중 하나에 접속할 수 있다.

22) 시설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다름.

23) 세계적인 법률 정보 서비스 프로그램.

(4) 교정시설 내 정보 활동의 국가적 성과 : 라틴킹 폭력조직 사건

웨스트 미시간 주 중급 주립 교도소에서 폭력조직 수뇌부와 조직원들이 라이벌 조직원의 수용 거실에서 수용자를 집단 구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정보 1 : 라틴킹 폭력조직 구성원이 수용 중(인원·인적 사항·지위 등)
- 정보 2 : 수뇌부는 수용 중에도 외부 총기 사용 폭력 사건을 지휘하는 등 실제적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었음
- 정보 3 : 라틴킹 폭력조직의 두목은 집단의 세력 과시를 위해 20년간 살인미수, 총격, 구타, 상해 및 증인 협박 행위를 포함한 범죄를 자행했음
- 정보 4 : 교정시설 내 기밀정보원이 다양한 형태의 감시를 통해 수집하고 선별한 정보에 의하면 교정시설 안에서도 범죄 조직이 계속 운영되고 있음
- 정보 5 : 상기의 정보들은 라틴킹 범죄 조직과 상호원조를 맺은 다른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발되고 수집된 것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2008년 연방 수사관들이 라틴킹 조직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그에 대한 수용 기록과 채권기록, 수용자 신탁 계정 기록, 방문 및 전화녹음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수사 협조 요청을 해 왔고, 웨스트 미시간 주 교정정보팀은 지난 5년간의 라틴킹 조직원의 교도소 정보와 모든 개인 구성원의 정보가 포함돼 있는 파일과 자료들을 제공했다.

수천 시간의 방문 기록, 조직원으로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인물의 전화녹음파일, 조직원 간의 의사소통이 담긴 수백 통의 편지 사본, 수백 장의 스크린샷과 사진, 비디오 및 SNS 계정상의 기타 소통기록, 두목의 선언문 기타 문서 사본, 모든 지역 조직 구성원과 동료, 거리 주소, 식별 흉터 및 문신 이미지가 나열된 폭력조직 자료 사본, 경쟁 관계의 폭력조직과 구성원에 관련된 5개의 비밀 SNS 계정.

수사팀이 기존에 보유하던 정보와 교정정보팀의 정보가 합쳐져 이를 분류하고 관련 정보를 연결하며 새로운 정보로 개발하는 과정들을 통해 미시간 주 전역과 시카고 전역에 걸친 수백 명의 폭력조직 구성원의 정보가 확정됐고, 이는 수사관들이 수년 동안 구축한 연방 폭력 사건의 핵심으로 31명의 조직폭력배를 기소하는 데에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2. 캐나다

(1) 캐나다 연방

캐나다 교정국은 교정정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마약사범과 보안 위협 그룹(STG) 관리를 우선 업무로 한다. 데이터 분석 활용으로 마약 사고를 예측, 인력을 배치해 사전 예방하고 폭력 성향과 결합된 STG 인원과 계층 구조 등을 기반으로 기관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조직 역학 및 소속을 이해해 폭력조직이 제기하는 위협 완화를 목표로 보안 위협 그룹 관리에 힘쓰고 있다.

연방기관의 보안정보요원은 숙련된 경험으로 시설 이면에 있는 범죄를 파악하고 저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를 위해 첨단 감시 장비와 정보원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다른 법집행기관 파트너와 공유한다. 이때, 교정기관 내부를 관찰하고 범죄자와 상호작용하며 역동적 보안을 수행하는 교도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온타리오

① 온타리오 교정정보 프로그램

온타리오 주의 경우 연방 교정국과는 별개로 8,000명 이상의 일선 직원이 수용자 및 범죄자와의 일상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해 확인 및 분석하는 별도의 교정정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2019년 3월 온타리오주는 캐나다, 영국 및 미국의 경찰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Intelligence-Led Policing Model의 교정정보 프레임 워크를 도입했으며 경찰 직원을 정보 부서에 직접 통합해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 직원은 전문 기술과 실용적 지식을 팀에 제공해 광범위한 정보 커뮤니티 내에서 교정정보의 질을 높이고 사법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프레임 워크는 공공 안전 우선순위에 따라 범죄 완화 또는 감소를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주요 파트너에게 배포해 전술적·운영적·전략적 결정을 내리게 해준다. 이를 위해 정보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전용 인프라인 Ontario Corrections Intelligence Unit도 구축해 운영하는 중이다.

온타리오 교정정보 프로그램은 공공 안전 강화 목적의 강력한 정보 프로그램 구축의 시작점으로서 보안 위협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을 확보하는 교정 서비스 리더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② Pen Squad

연방 교정시설 밀집 지역인 온타리오 주 킹스턴과 같은 도시에서는 일반적으로 Pen Squad로 알려진 특수 부대가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전담하고 있으며, 현재 온타리오 주 경찰 수사관 폴 클레멘트(Paul Clement)가 이끄는 이 팀은 살인·폭행·마약 관련 범죄 및 연방 기관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위협까지 처리하고 있다. 단순한 교정국 정책이나 수용자 지침의 위반이 아닌 형법상 범죄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온타리오 지역의 Pen Squad 및 전국의 다른 경찰 서비스는 캐나다 교정시설의 보안정보팀과 긴밀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시설의 보안정보원과 교도관은 24시간 대기 중인 수사관에게 경보를 보내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범죄 현장을 확보하는 등의 협업을 이루고 있다. 보안정보원은 대부분 법의학 전문가로서 인터뷰·지문채취·사진·DNA 샘플링 등을 실시한다. 이들은 Pen Squad와 교정시설의 연결고리가 돼 교도관은 수용자의 범죄 정보를 얻으면 바로 Pen Squad에 연락하고, 외부인의 불법 활동 연루 시 Pen Squad는 해당 정보를 지역 사회 경찰에 전달하게 된다.

정보 공유의 목적은 보다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범죄 해결을 위함으므로 수사관은 가석방 대상자의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으며, 캐나다 교정국과 Pen Squad는 국외 지역의 범죄 수사를 위해 인터폴과 같은 국제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 관계자는 안정적인 교정정보 제도의 정착을 위해 향후 몇 년간 수사기관과 교정기관 사이의 지속적인 협력과 긴밀한 관계 형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3.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국가 교도소 정보국 SNRP²⁴⁾에서 교정정보를 담당하고 있다. SNRP는 2019년 5월 출범했으며 중앙과 지역 연합, 지방을 연계하는 대규모의 조직이다. 400명 이상의 직원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47명의 전담 직원으로 구성되며 이는 정보 분석가, 디지털 수사관, 지역 또는 지역 대표 교도소 정보원이 포함돼 있다.

주된 임무로 테러, 조직범죄, 교도소 보안 강화(폭동 및 탈출 방지)를 맡고 있으며 정보 커뮤니티의 파트너와 협력해 폭력 행동 계획에 관련된 개인을 탐지 및 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범죄 모의 등을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

24) Service National du Renseignement Penitentiaire.

4. 영국(잉글랜드&웨일스)

영국의 경우 국가 정보 부서인 NIU(National Intelligence Unit)에서 영국 교정보호청(HMPPS, Her Majesty Prison Probation Service)에 별도로 정보 부서를 두어 운영하며 각 지역 교도소에는 해당 지역 정보 분석가를 두어 정보를 수집·관리한다. 교정정보 부서에는 교도소 정보 관리관(PIO, Prison Intelligence Officer)이 있어서 교도소 정보 수집 관리를 담당하며 일반적으로 지정 구역 내에 있는 교정시설을 기반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국가적으로 승인된 운영협력팀을 형성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법집행기관의 정보·증거 요청을 감독하며 조언을 얻고, 승인을 얻으며 수용자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 구금시설의 보안 부서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한다.

이들은 ① 수용자의 형 집행 계획, 이동 및 석방 정보 ② 폭력조직 간 연합, 갈등, 지속적인 활동 및 미래 범죄 가능성을 포함해 현재 및 신흥 조직범죄 네트워크 및 개인에 대한 정보의 갱신 ③ 교도소 내 보고를 위한 물류 및 계획, 정보 제품 사용에 대한 지침, 교도소 작업물 신청에 대한 공개 및 전략적 조언과 지원 ④ 극단주의 수용자, 범법자 보조인, 보호 증인, 중경비처우급 수용자 등의 특수 수용자 집단 정보 관리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5.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운영지원국(OSG, Operational Support Group)에서 교정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아일랜드 교도소(IPS, Ireland Prison Service) 내의 독립적인 단위로 교정국장이 중앙에서 이끌고 IPS 내에서 특별히 훈련된 교정 직원이 배치되며 각 교도소는 전담팀을 운영한다. 각 팀은 상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고위 교정 간부가 중앙 지점인 주지사에게 수집한 정보를 직접 보고하는 체계이다.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는 교도소 내 수용자들의 활동에 중점을 두며 범죄 활동과 교도소에 들어오는 밀수품의 흐름 등 마약·테러·계획 탈출의 모든 항목이 포함된다. IPS는 수용자의 안전 및 교도소 보안과 관련해서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범죄 활동 탐지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법무부 및 국제기관과 협력²⁵⁾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중요시한다. 지역 수준에서 기술적²⁶⁾으로 입수한 정보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고

25) 갱 협회 프로파일링.

26) 밀수품 탐지 및 차단을 위한 집중 검색 수행 등.

범죄 활동의 잠재적 수단을 식별하는 등 전략적 정보에 중점을 두는 편이다.

정보 수집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은 진행 중이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은 특정 직급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6.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에서는 교정국 본부와 각 지역 교정시설에서 별도의 정보시스템으로 교정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 교정국(SPS, Scotland Prison Service) 본부에는 국토의 전반적인 정보를 모니터링해 수집하고 대조, 분석 및 관리하는 공공 보호 부서(PPU, Public Protection Unit)가 있고, 이들은 정보 문제에 대해 외부 형사 사법 기관과 연락하는 일을 담당한다.

각 지역 교도소에는 정보를 수집, 평가, 분석 및 배포하는 정보 관리 부서(IMU, Intelligence Management Unit)가 있는데, 이들은 안전한 교정환경과 수용 질서 유지에 대한 위협을 파악하고 교정시설이 표적이 되는 경우를 위한 핵심 정보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고위직 간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해 조직화된 수용자 네트워크 및 범죄 활동들을 파악하며 외부 기관과의 협업도 이뤄진다.

주요 정보 수집 범위에는 전략적 정보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수용자와 교도관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파괴적 활동·사건 및 무질서들을 관리하며 관련 사건을 연결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기타 다양한 예방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각 IMU는 독자적인 정보 수집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분석 표준 입력 문서(ASID, Analysis Standard Input Document)에 따라 죄수 기록 시스템(PR2, Prisoner Report 2)에 정보 데이터를 입력하고 정보 보유 정책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정보 데이터를 검토하며 정보는 보고서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PR2에 입력해야 한다.

7.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의 경우 교도소 내에 범죄 정보위원회(범죄지능부서, 범죄지능정보부서)와 범죄 수사 부서가 있으며, 범죄 정보위원회가 범죄 수사 부서를 통솔한다. 교도소 내 마약 밀수 및 배포, 전화 사기, 탈출 계획, 인명 및 건강에 대한 범죄가 주요 수집 관리 범위이며 정보 수집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8. 라트비아

라트비아의 교도소는 자체로 정보 활동 수행기관으로 분류돼 정보 수집과 같은 작전 활동 수행 권한이 부여되고 모든 시설에 설치된 안전 부서가 범죄 정보 수집을 수행한다. 별도로 제정된 정보활동법이 구금시설에서의 정보 운영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며 법무부장관과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가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정보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직접 감독하고 있다.

정보활동법상 교정시설은 ① 범죄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② 범죄를 예방, 억제 및 탐지하고 범죄자와 유력 증거의 소재 출처를 결정 ③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용의자 및 형사피고인을 수색 ④ 범죄 수익 재산 및 범죄 행위와 관련된 재산의 수색 ⑤ 실종자와 행방불명자의 수색 ⑥ 국가 안보, 헌법 체계, 영토 보전, 경제 주권, 군사적 잠재력에 대한 위협 탐지와 예방 ⑦ 공적 비밀의 보호 ⑧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 유럽 연합 또는 외국 당국의 공식 기밀 정보의 획득 ⑨ 법에 규정된 특정 신분의 특별한 보호 등을 제공한다.

9.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교정국 중앙 차원의 보안정보 등록부의 합법성 제어 및 정보 공유가 이뤄지며 교도소마다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담당자가 배치돼 있다. 정보 수집은 탈출, 폭력, 마약, 테러 및 조직범죄, 구금 중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보안 확보를 위한 것을 중점 대상으로 하고 수집된 정보 등록부는 수용자 거실 및 작업장 지정과 외출 등 기타 관련 허가 결정에 반영되며 해당 과정은 보안정보 등록이라는 정보 수집 지원용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진다.



10. 독일/헤센

독일의 헤센 주의 경우는 극단주의·조직범죄(OC, Organized Crime) 수용자가 있는 모든 교정시설에 구조적 관찰자라고 불리는 정보 담당자를 배치해 직원, NGO, 법무부, 형사경찰 및 헌법 보호사무소 간의 정보 교환을 하고 모든 극단주의자들 또는 조직범죄 수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이들은 법무부 소속의 ‘교정 네트워크 탈급진화’(NeDiC) 부서와 소속 교정시설, 헤센 형사경찰의 담당자에게 정보를 보고하고 모든 극단주의자들 또는 조직범죄 수용자들과 관련된 개별 문제의 정책을 결정하며 관리한다. 또한 헤센 교도소 급진화를 예방하고 비급진화 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이슬람 연구 학자가 포함된 중앙 소속 부서인 NeDiC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및 기관 전반에 걸쳐 수집된 모든 지식과 역량이 결집되도록 해 무슬림 수용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구조적 관찰자는 시설 입소 시 문신 여부 확인 등의 수용자 신체 수색, 우편물 검사, 교정시설 내 접촉·관찰·방문자 감독, 송금 및 수용 거실 검사 등으로 정보를 수집·관리한다. 그들의 업무 범위에는 극단주의자나 OC 수용자의 급진화 과정을 방지하고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와 급진화 정도, 불법 활동, 수용자 간의 교류 활동 또는 교도소 외부의 조직범죄(OC) 구성원 또는 극단주의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V. 결론

4차 산업혁명은 산업뿐만 아니라 범죄의 연결·융합의 시대를 가져왔다. 산업 발전과 더불어 범죄 또한 조직화되고 기술화되는 등, 고도로 연결되고 발전하게 된 것이다. 복잡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돼 가는 교정시설 내외부의 범죄체계에 대해 교정정보의 수집과 관리가 대안이 될 것이다. 교정정보는 이제 교정행정을 용이하게 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 안전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따라서 세계 각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앞으로 교정정보 전담부서를 신설해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교정정보 수집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며 그를 위한 진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정 공무원은 보안 위협 그룹 정보 수집 전문가로서 두 가지 역량을 동시에 발휘해야 한다. 눈과 귀를 사용한 관찰로 상시 업무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주의로 가능한 1차 역량과 보고 들은 것을 해석하는 능력으로서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도출되는 2차 역량이 바로 그것이다.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략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아주 단순해 보이는 교정행정의 기본원칙 준수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재소자들과 매일 직접 대면하며 일상에서 개인적으로 소통하도록 훈련받은 교도관들이 교정 첩보의 가장 중요한 자원임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는 독자적 정보 수집·관리 프로그램과 지능형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들 수 있다.

정보의 첫째 조건은 보안이다.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정보원을 보호하며 앞으로 보다 질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 타 기관과 분리돼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정보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 또한 방대한 교정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다양한 유형별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정보 가치 증대의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따라서 손쉽게 정보를 입력하고 위협의 유형·위협의 정도·해결의 난이도·향후 발전 경로 등의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정보를 분류할 수 있는 지능형 소프트웨어가 개발돼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정보 수집·관리지침의 제정이다.

정보 수집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영상, 음성 통화, 데이터 등 정보 공유 제한되고 범죄자와 의사소통하는 개인에게 통지가 된다면, 정보 가치 보유에 치명적일 수 있다. 실제로 범죄 관련인 경우 사생활 침해 요소는 미미하므로 법상의 제한은 크게 염려할 사항이 아니고, 사법 당국의 협력이 있다면, 소환장 발부 등의 방법으로 제한 없는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외부 제출이나 방해 등으로 정

보 가치가 훼손되거나 담당자가 민·형사상 고소를 당할 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러므로 적절하고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의 마련으로 정보전문가들을 보호하고, 정보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경우 강력범죄수사과, 안보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에서 정한 세 가지의 행정규칙²⁷⁾을 가지고 있으며, 해양경찰청 또한 수사심사과에서 정한 독자적인 정보처리 지침²⁸⁾을 제정한 바 있다. 이를 참고해 수집 대상 정보와 보유기간, 적용 범위, 평가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어 정보처리 절차를 명문화하고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다.

교정행정은 수용자를 교정 교화의 대상으로 보아 그를 변화시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기본 업무로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상위의 목적은 결국 사회의 안전과 범죄의 근절을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교정시설에서 얻어낸 정보들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범죄를 예방해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 또한 교정의 역할임을 유념해야 한다. 이제 그간 다소 소외됐던 교정정보 분야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보다 안전한 교정환경과 더 자유로운 국가 치안 확보를 향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이다.



27) 안보정보 수집 및 처리규칙.(경찰청예규 제605호, 22.10.12.)
수사정보 수집 및 처리규칙.(경찰청예규 제594호, 21.9.16.)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82호, 21.1.22.)
28) 수사정보 수집 및 처리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301호, 22.11.1.)

<참고 문헌>

[국내 문헌]

- 경찰의 범죄 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화 방안, 이동한·표창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국가정보학개론 : 제도·활동·분석, 김계동, 명인문화사, 22.01.03.

[국외 문헌]

- Managing prison gangs: Results from a survey of U.S. prison systems, John Winterdyk, Rick Ruddel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 (2010) 730-736
- Basic of managing STG populations, Christopher Jones, Corrections1 sep 18, 2012
- Experts Identify Priority Needs for Addressing Correctional Agency Security Threats,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April 6, 2020
- Gangs in Correctional Facilities: A National Assessment,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January 1, 1993
- Federal Offenders Affiliated with Security Threat Groups, Correctional Service Canada, August 20, 2022
- Why You Need Security Threat Group Intelligence in Your Correctional Facility, Christopher Munley, LEXIPOL February 24, 2021
- Intelligence Gathering in Correctional Facilities: Mission&Process, Christopher Munley, LEXIPOL March, 19, 2021
- Key Principles of Security Threat Group Intelligence Operations in Jails, Christopher Munley, LEXIPOL April, 23, 2021
- Countering Threats to Correctional Institution Security, Joe Russo, Dulani Woods, John S.Shaffer, Brian A. Jakson Criminal Justice
- The Use of Intelligence, Federal Prisons Journal, Spring 1990, Radicalized Offenders and Security Threat Groups in Correctional Environments, Andrea E.Moser
- Classification for effective rehabilitation : Rediscovering psychology. Criminal Justice Behavior, 17

[기타 자료]

- https://fr.wikipedia.org/wiki/Service_national_du_renseignement_p%C3%A9nitentiaire
- <https://www.affiches-parisiennes.com/le-snrp-au-service-des-interets-de-la-nation-et-de-la-securite-penitentiaire-fete-ses-5-ans-105719.html>
- <https://www.corrections1.com/jail-management/articles/how-digital-intelligence-tools-can-stop-crime-from-the-inside-out-kxZJmXJkEgHsw0mq/>
- <https://www.irishprisons.ie/prison-support-units/operational-support-group/>

교정사고와 폭력 피해 경험이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하)



윤옥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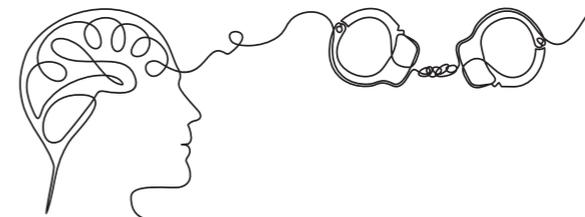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전공 교수

- I. 서론
- II. 교정사고의 실태와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II. 교정사고의 실태와 선행연구 검토

2. 선행연구 검토

교도관의 사고 경험이나 트라우마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주로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윤옥경과 이수정(2004)은 전국의 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도관 420명을 대상으로 수용자에 의한 폭행 사건 및 피해 경험과 탈진감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양한 피해 경험이 만성적인 탈진을 야기하고 직무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뒤를 이어서 윤옥경, 이수정(2005)은 420명의 교도관을 대상으로 언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험을 조사하고 이러한 폭력 피해 경험과 그들의 직업의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응답 교도관의 90% 이상이 정서적 폭력(불안감, 무력감, 교정사고 발생에 대한 두려움 등)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80% 이상이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였으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교도관은 폭력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오물 투척이나 침 뱉기 등을 경험한 교도관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 경험은 교도관들의 직업의식을 더 부정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것도 밝혀졌다. 연구자들은 교도관들의 폭력 피해가 그들의 '정당한' 직무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며, 이것은 공권력이 그만큼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교도관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원인 요인으로서 폭력 피해의 효과를 분석한 이수정 등(2005)의 연구는 교도관들의 정신건강에 수용자들의 폭력적 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수용자들로부터의 폭력 피해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키고 나아가 만성적 탈진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윤옥경(2006)의 연구에서도 수용자 폭력의 경험과 그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수용자들의 지나친 요구와 괴롭힘이 교정공무원들의 중요한 스트레스 유발요인으로 거론되었다. 수용자들의 다양한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교도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확립과 심리적 위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던 교도관의 폭력 피해와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은 그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인 디비피아(DBpia)에서 관련 핵심어를 이용하여 검색한 결과 교도관들이 경험하는 각종 피해의 양상과 직무위험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물은 거의 검색되지 않았다.

보다 최근에 와서는 몇몇 연구자에 의해 교도관들의 직무소진과 스트레스 등 교도관의 정신건강과 행복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먼저 양점미와 문승연(2016)은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정신건강과 그들의 행복감과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분석하였다. 전국의 교정공무원 450명에 대한 서베이 응답을 자료로 하여 분석한 결과 직무소진이 높아지면 정신건강이 나빠지고 정신건강이 나빠지면 행복감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명희와 박현주(2018)는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성격유형과 회복탄력성 수준에 따라 정신건강 상태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3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180명의 교도관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고, 성격유형의 경우엔 신경증이 높은 성격에서 정신건강이 나빠게 나타났다. 그리고 예상과는 다르게 회복탄력성은 교도관들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정공무원의 역할스트레스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과 긍정심리자본의 효과에 대해 분석한 김종배, 홍정순(2022)의 연구는 384명의 교도관으로부터 입수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분석하여 역할스트레스가 직무소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직무소진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혀냈다.

최근의 이런 연구들은 교도관들의 스트레스와 소진의 근원적 유발 요인에 대해서까진 연구 범위를 가져가지는 않았고, 교도관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각종 폭력 피해나 괴롭힘 등 수용자와 교도관 관계의 특수성에서 나오는 직무위험성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의 해외연구들을 살펴보면 교도관의 소진(burn-out)과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직무위험성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Lambert, Barton-Bellessa and Hogan(2015)은 이전의 많은 연구가 직무소진의 원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인 데 반해 교도관들의 직무소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중서부 중구금 교도소의 272명 교도관을 대상으로 정서적 소진이 삶의 만족, 치료에 대한 지지정도, 결근, 병가, 이직의사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 정서적 소진은 삶의 만족도와 치료에 대한 지지 수준을 낮추고 결근과 병가, 그리고 이직의사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Lambert, Minor, Gordon, Wells, Hogan(2018)은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위험성(perceived danger from the job)에 대한 연구가 가장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교도관들의 직무위험성 인식이 교도관 개인의 특성이나 직무 환경적 특성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는 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그들은 앞에서 언급한 미국 중서부 중구금 교도소 교도관 272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직무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해 ‘나는 위험한 곳에서 일한다’, ‘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수 있다’, ‘내 직무가 다른 직종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교도관들의 직무위험 경험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았지만 개인적 특성보다는 직무위험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교도관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Lambert, Keena, Haynes, May and Leone(2020)는 요구-자원 모델(demands-resource model)을 가지고 교도관들의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직무상 의무나 수행해야 할 업무가 많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높아지고 직무만족도는 떨어지며, 이와 반대로 직무 관련 지원체계나 자원이 많으면 긍정적 효과가 높아지고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효과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남부의 한 교도소에서 322명의 교도관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거나 관리감독의 질이 높으면 직무스트레스가 줄고, 과중한 업무나 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fear of victimization)이 클수록 직무스트레스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부 이탈리아의 한 교도소에 근무하는 50명의 교도관을 대상으로 한 Rania, Migloirini, and Coppola(2020)의 질적 연구에서는 소진(burn-out)이 두 가지 수준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그 하나는 조직적 요인으로 낡고 오래된 건물, 소음 등의 문제와 함께 과밀수용, 불충분한 인력, 과도한 업무 등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수용자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측면을 말한다. 수용자들의 민원처리와 상담, 지나친 요구와 고소고발, 신체적 정신적 안전에 대한 위협 등이다. 연구자들은 반구조화된 심층면접(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에서 얻어진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여 교도관들의 소진이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Ferdik and Smith(2017)은 교도관이라는 직업이 본질적으로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스트레스의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점차 폭력적이고 정신질환을 앓는 범 죄자가 증가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그 상태는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면서 교도관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아직 교도관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간과하게 되면 교도소의 운영이 위협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하고 있다. 교도소에서 직무수행 중 사고가 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면서 교도

관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지고 이것은 교도관의 업무 수행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어서 이러한 상황은 교도소 질서 확립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다시 교정 사고가 발생하거나 교도관들의 안전이 위협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요약하건대 교도관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경험하는 각종 사건과 사고, 그리고 수용자의 지속적인 고소, 고발과 괴롭힘, 또 폭력 피해나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등이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직무수행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선행연구들이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도관의 사고 경험 정도와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 53개 교정시설(교도소와 구치소, 지소)에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들이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교정공무원은 16,072명이다. 53개 교정시설은 수용정원과 건립 연도, 직원의 수, 수용자의 등급 등에서 다양하다.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양한 교정시설을 선정하기 위해 먼저 4개 지방교정청별로 소속기관을 확인한 후 서울지방교정청 산하와 대구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산하는 각 4개 기관, 광주지방교정청은 3개 기관을 선정하여 총 15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정 교정시설에 응답자가 집중되지 않도록 각 교정시설에서 남성 직원 25명, 여성 직원 5명씩을 할당하였다. 조사대상자로 총 385명이 선정되었다.

조사는 법무부 교정본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승인을 얻은 후 경기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 진행되었다(IRB 승인번호 KGU-20201022-HR-061-01). 설문조사는 2020. 11. 3.~2021. 2. 8.까지 진행되었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주요 변수는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교도관들이 경험한 교정사고와 폭력 피해 빈도, 직무만족도, 직무스트레스다.

교정사고의 유형과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교정본부에서 공식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교정사고 유형과 함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선 교정시설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알

려진 여러 가지 형태의 수용관리 전반에 걸친 사고유형을 추가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수용자 자살 및 자해 시도, 소란과 난동, 기물파손, 수용자끼리의 욕설, 지속적 괴롭힘과 신체적 폭력, 교도관에 대한 욕설과 무시, 고소고발, 정보공개청구 인권위 진정 등의 정서적 폭력, 교도관에 대한 신체적 폭력, 병사 등 사망사고, 부상 등 안전사고, 금지물품 소지 및 반입 등 총 12문항을 사용하였다. 근무 기간에 따른 피해 경험의 치우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일시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수용자를 만나면서 경험하였던 사건사고를 바탕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은 경험 빈도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에 부여된 점수의 총합을 계산하였다. 또한 교정사고 유형 중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들의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폭력을 별도로 점수화하여 '교도관 폭력 피해'라는 변수를 만들어 분석하였다.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그 타당성을 인정받은 기존 도구들을 활용하였다.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Maslach, C., & Jackson(1981)의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17문항 간의 신뢰도는 크론바하 알파 값이 .955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직무만족도 문항은 Hackman and Oldham(1975)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는데 23문항 간의 신뢰도 값은(cronbach's alpha) .897로 나타났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교정공무원이 경험하는 교정사고와 폭력 피해 실태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 2) 교정공무원이 경험하는 교정사고와 폭력 피해는 그들의 직무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3) 직무스트레스는 교정사고와 폭력 피해가 직무만족도에 주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특징은 위의 <표 1>과 같다. 남성 직원이 7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3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 86%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근무 경력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의 비율도 높았다. 현 직급의 분포를 보면 7급이 가장 많고, 그다음 8급, 9급, 6급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n)	비율(%)	합계
성별	남	298	77.4	384
	여	86	22.6	
연령	30세 이하	45	11.7	385
	40세 이하	127	33.0	
	50세 이하	151	39.2	
	50세 초과	62	16.1	
최종학력	고졸 이하	39	10.1	385
	대졸 이하	329	85.5	
	대학원졸	17	4.4	
근무 경력	5년 미만	82	21.3	385
	10년 미만	68	17.7	
	15년 미만	99	25.7	
	20년 미만	42	10.9	
	20년 이상	94	24.4	
현 직급	6급	62	16.1	385
	7급	170	44.2	
	8급	90	23.4	
	9급	63	16.4	

2. 교도관의 각종 교정사고 경험 실태

1) 설문조사 결과

교도관들이 수용자 처우와 관리과정에서 경험한 교정사고 유형에 대한 응답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교정사고 경험 빈도

구분	빈도수(%)						
	전혀 없음	5번 이하	6~10번 이하	11~15번 이하	16~20번 이하	21~30번 이하	30번 이상
수용자 자살 (미수 포함)	223 (57.9)	154 (40.0)	4 (1.0)	3 (0.8)	1 (0.3)	-	-
수용자 자해	127 (33.2)	178 (46.2)	48 (12.5)	18 (4.7)	5 (1.3)	3 (0.8)	5 (1.3)
소란, 난동, 기물파손	67 (17.4)	142 (37.0)	62 (16.1)	44 (11.5)	19 (4.9)	14 (3.6)	36 (9.4)
수용자 간 언어적 폭력	48 (12.5)	96 (24.9)	65 (16.9)	51 (13.2)	30 (7.8)	17 (4.4)	78 (20.3)
수용자 간 정서적 폭력	55 (14.3)	112 (29.1)	62 (16.1)	35 (9.1)	34 (8.8)	12 (3.1)	75 (19.5)
수용자 간 신체적 폭력	69 (17.9)	143 (37.1)	61 (15.8)	37 (9.6)	18 (4.7)	10 (2.6)	47 (12.2)
수용자의 교도관에 대한 언어적 폭력(욕설, 무시)	59 (15.3)	130 (33.8)	78 (20.3)	38 (9.9)	19 (4.9)	11 (2.9)	50 (13.0)
수용자의 교도관에 대한 정서적 폭력 (근거 없는 고소고발, 진정, 반복적 정보공개 요구 등)	62 (16.1)	104 (27.0)	62 (16.1)	47 (12.2)	25 (6.5)	16 (4.2)	69 (17.9)
수용자의 교도관에 대한 신체적 폭력	130 (33.8)	183 (47.3)	40 (10.4)	15 (3.9)	4 (1.0)	5 (1.3)	9 (2.3)
병사 등 사망사고	205 (53.2)	162 (42.1)	15 (3.9)	2 (0.5)	1 (0.3)	-	-
부상 등 안전사고	98 (25.5)	200 (51.9)	53 (13.8)	19 (4.9)	6 (1.6)	1 (0.3)	8 (2.1)
금지물품 소지 및 반입	130 (33.8)	167 (43.4)	40 (10.4)	17 (4.4)	10 (2.6)	3 (0.8)	18 (4.7)
전체	385(100)						

수용자 자살의 경우 58%가 경험이 없다고 하였으나 42%는 자살사고를 목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근무 기간이 아니라 단지 1년 동안의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42%가 수용자 자살사고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니다. 수용자 자해 경험은 67%가 경험하였다.

수용자에 의한 언어적 폭력은 68%가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정서적 폭력 경험 비율도 유사한 정도로 높다. 정서적 폭력이란 지나친 고소고발과 정보공개 요구뿐 아니라 밤길 조심하라는 등의 심리적 협박도 포함한다. 욕설과 협박을 경험하는 교도관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병사 등 사망사고를 경험한 교도관의 비율은 46.8%, 부상 등 안전사고를 경험한 교도관의 비율은 74.5%에 이른다. 금지물품 소지나 반입은 66.3%의 교도관이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교정사고 중 교도관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유형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수용자 간 언어 폭력, 수용자 간 정서적 폭력 다음이 교도관에 대한 언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이다. 수용자 간에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폭력만큼이나 수용자에 의한 언어적, 정서적 폭력을 교도관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은 교도관들의 직무 위험과 피해 두려움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2) 교정사고와 교도관 폭력의 대표적 사례

교정사고와 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설문조사가 다 담아내지 못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교도관들이 가질 수 있는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 그리고 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해 질 것이라 생각한다.

(1) 신체적 폭력

-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력을 휘두른 수용자는 추가징역을 받았지만 직원에 대한 치료지원 프로그램은 없었어요.”
- “땀을 흘리고 그런 것은 다반사입니다.”
- “한 수용자가 제 이름을 부르고 조롱하듯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흥분해서 내 손가락을 물었는데 송치를 생각해 보다가 그냥 넘겼어요.”
- “청송에서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하는 수용자가 있었는데 김칫국을 나한테 부어서 뒤집어 썼어요.”
- “똥을 뿌리는 건 자주 있는 일입니다.”
- “갈비뼈에 금 간 직원도 있고 코에 금이 간 직원도 있어요. 상대방이 갑자기 달려들면 그냥 당하는 거죠.”
- “커피 컵으로 맞아보고 간장통으로 맞아봤습니다.”
- “수용자한테 연필로 눈을 찔릴 뻔했는데 비껴 맞아서 얼굴을 다친 적이 있어요.”
- “밤에 갑자기 욕을 하면서 내게 주스를 뿌렸어요.”

(2) 언어적, 정서적, 심리적 폭력

- “고소고발로 위협하는 수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서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움찔해요. 가족을 노린다 생각하면 그 자체로 힘들어요.”
- “집 앞에 깔 들고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정보가 유출돼 어디 사는지, 가족이 몇 명인지 알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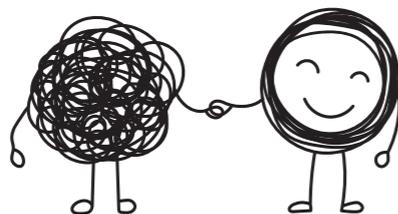
1) 이러한 경험담들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중견 연구의 일환으로 시행한 심층면접에서 나온 것들이다. 심층면접은 4개 교정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도관들을 5명씩 선정하여 진행되었다. 심층면접 결과에 대한 분석은 후속 연구에서 자세히 이루어질 것이다.

- “소란을 피워서 수갑을 채웠는데 직권남용으로 고소장을 보냈어요.”
- “두고 보라, 찾아가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수용자가 많다.”

(3) 자살자해

- “자살을 목격했는데 트라우마가 며칠 가더라고요. 그 장소에 다시 가기 싫고 머리가 쭈뼛서고 힘들었습니다.”
- “순찰 돌고 있을 때 수용자가 절 보고 웃는데 알고 보니 운동장에서 돌을 들고 들어와서 자기 아킬레스건을 끊고 있었어요.”
- “10년 전쯤에는 자살사건이 한 달에 한두 번도 일어났어요. 자주 보다 보니까 무뎠더라구요.”
- “치솔을 입으로 집어넣어 급하게 외부병원 이송되었지요.”
-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자살 시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 “머리로 거실문을 들이받아 피가 철철 흘러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 “자신의 혀를 물어 자해한 수용자가 있었어요.”
- “가슴에 바늘을 꽂거나 나뭇가지로 자해하는 수용자를 발견하여 급히 병원 후송한 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러한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폭력의 이유는 다양하다. 구금의 고통이나 정신질환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용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거나 수용자들 사이에서 권력을 획득하고 수용 생활의 편의를 위해 교도관의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교도관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악화시키는 부분이다.



3. 교정사고와 폭력 피해 경험,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직무만족도의 관계

1)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본 연구가 고려하는 핵심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표 3>과 같다. 교정사고 빈도의 최솟값은 12, 최댓값은 79이다. 이 중 교도관 폭력의 최솟값은 3, 최댓값은 21이었다. 직무스트레스는 최솟값은 17이고 최댓값은 83이다. 직무만족도의 최솟값은 31이고 최댓값은 106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표 3> 기술통계

구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교정사고 경험	384	12	79	31.3880	13.8409
교도관 폭력 피해	385	3	21	8.7039	4.5041
직무스트레스	384	17	83	41.4688	13.6218
직무만족도	375	31	106	74.3893	11.8949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에서 고려될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변수 간 상관관계

구분	현 직급	근무 기간	소속 부서	교정사고 경험	교도관 폭력 피해	직무 스트레스	직무 만족도
직급	1						
근무 기간	-.407**	1					
소속 부서†	-.104*	-.010	1				
교정사고 경험	.059	-.112*	.155**	1			
교도관 폭력 피해	-.046	.021	.173**	.602**	1		
직무스트레스	-.179**	.165**	.135**	.130*	.250**	1	
직무만족도	-.091	.049	.009	-.091	-.164**	-.239**	1

* : p< .05, ** : p< .01

† : 소속부서는 더미변수로 보안과(1)와 그 외 부서로 코딩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교정사고 경험과 교도관 폭력 피해, 매개변수인 직무스트레스,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 계수가 높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염려는 없으며, 상관관계의 방향을 미루어 볼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과 같이, 교정사고와 폭력 피해는 직무스트레스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고, 직무만족도와는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들 간의 관계를 더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에서 설명될 것이다.

2) 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은 세 단계로 시행되었다. 첫 번째, 직급과 근무 기간, 소속 부서를 통제변수로 하고, 교정사고 경험과 교도관 폭력 피해를 각각 독립변수로 하여 이들 변수가 교도관들의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을 주는 지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관련 변수를 통제 후 교정사고 경험과 교도관 폭력 피해가 직무만족도에 주는 영향을 각각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정사고의 경험, 폭력 피해 경험이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직무만족도에 주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1) 교정사고와 폭력 피해 경험이 직무스트레스에 주는 영향

<표 5>에 교정사고 경험과 폭력 피해의 경험이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모델 1은 교정사고의 경험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통제변수로 모델에 들어간 직급, 근무 기간, 소속 부서가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을 먼저 보면, 직급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근무 기간이 길수록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안과 소속 여부는 예상과는 달리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직급이 낮을수록 수용자와의 면대면 접촉시간과 빈도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쌓이는 스트레스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교도관 업무의 스트레스가 개선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쌓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교정사고 경험 빈도는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수용자의 여러 가지 사고를 목격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모델 2는 교도관이 수용자로부터 받은 각종 폭력 피해가 직무스트레스에 주는 영향을 보여준다. 직급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모델 1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근무 기간과 소속 부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도관 폭력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결과는 예상한 바와 일치한다. 또한 다른 통제변수들과의 영향력 비교를 통해서 볼 때(모델 2) 폭력 피해 경험의 베타값이 상대적으로 가장 커서 폭력 피해가 직무스트레스를 올리는 데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Model 1 종속변수: 직무스트레스				Model 2 종속변수: 직무스트레스			
	b	S.E.	β	t	b	S.E.	β	t
상수	49.940**	6.575		7.595	48.266**	6.435		7.501
직급	-2.035**	.783	-.148	-2.599	-1.935*	.769	-.140	-2.516
근무 기간	.016*	.008	.119	2.097	.014	.007	.104	1.870
소속 부서†	2.172	1.480	.077	1.467	1.703	1.453	.061	1.172
교정사고 경험	.464*	.193	.126	2.402	-	-	-	-
교도관 폭력 피해	-	-	-	-	.639**	.149	.219	4.278
r-square	.072				.104			
adjusted r-square	.062				.094			
F-value	6.789**				10.145**			

* : p<.05, ** : p<.01

† : 소속부서는 더미변수로 보안과(1)와 그 외 부서로 코딩하였다.



(2) 교정사고 경험과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표 6>의 모델 3은 독립변수인 교정사고 경험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고, 모델 4는 직무스트레스가 회귀식에 포함되어 분석되었을 때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6> 교정사고 경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의 분석 결과

구분	Model 3 종속변수: 직무만족도				Model 4 종속변수: 직무만족도			
	b	S.E.	β	t	b	S.E.	β	t
상수	85.608**	6.203		13.801	98.731	6.394		15.441
직급	-1.166	.741	-.093	-1.574	-1.708*	.717	-.136	-2.382
근무 기간	.002	.007	.015	.248	.006	.007	.046	.823
소속 부서†	1.039	1.402	.041	.741	1.583	1.348	.062	1.175
교정사고 경험	-.099*	.047	-.114	-2.087	-.048	.046	-.056	-1.042
직무스트레스	-	-	-	-	-.272**	.049	-.301	-5.577
r-square	.023				.105			
adjusted r-square	.011				.092			
F-value	1.972*				7.938**			

* : p< .05, ** : p< .01
 † : 소속부서는 더미변수로 보안과(1)와 그 외 부서로 코딩하였다.

모델 3에서 보듯이 교정사고 경험은 직급, 근무 기간, 소속 부서 등을 통제 한 후에도 직무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 교정사고 경험이 많을 수록 직무만족도는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직무스트레스 변인을 포함하여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을 한 결과(모델 4), 관계의 방향은 예상한 대로 유지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던 교정사고 경험은 그 능력을 상실하였고,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에 기대한 대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직무스트레스가 교정사고 경험과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완전히 매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도관들의 교정사고 경험이 많아 질수록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높이고, 높아진 직무스트레스는 결과적으로 직무만족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교도관 폭력 피해와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양한 교정사고가 일상적으로 발생하지만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들의 직접적인 위협과 폭력은 교정사고 중에서도 교도관들이 느끼는 심리적 상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수용자들의 교도관 폭력(언어적, 심리적, 신체적)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직접 영향과 직무스트레스를 통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교도관 폭력 피해,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의 분석 결과

구분	Model 5 종속변수: 직무만족도				Model 6 종속변수: 직무만족도			
	b	S.E.	β	t	b	S.E.	β	t
상수	85.600**	6.143		13.935	98.690	6.355		15.529
직급	-1.160	.738	-.092	-1.572	-1.697*	.715	-.135	-2.374
근무 기간	.002	.007	.015	.250	.006	.007	.046	.821
소속 부서†	1.171	1.394	.046	.840	1.678	1.341	.066	1.251
교도관 폭력 피해	-.366**	.143	-.139	-2.556	-.200	.141	-.076	-1.418
직무스트레스	-	-	-	-	-.269**	.049	-.298	-5.508
r-square	.029				.108			
adjusted r-square	.017				.095			
F-value	2.503*				8.242**			

* : p< .05, ** : p< .01
 † : 소속부서는 더미변수로 보안과(1)와 그 외 부서로 코딩하였다.

모델 5와 모델 6의 결과를 보면 앞에서 제시한 교정사고 경험의 분석 결과와 거의 동일하다. 교도관의 폭력 피해는 근무 기간이나 직급, 소속 부서를 통제 한 후에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직무스트레스가 회귀식에 추가가 된 후에는 그 영향의 크기도 줄고, 통계적 유의미성도 상실하게 되어 교도관들의 폭력 피해 경험은 그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높이고 이어서 높은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직무스트레스가 교도관 폭력 피해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V. 결론

이 연구는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를 위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경험하는 교정사고와 폭력 피해의 양태와 규모를 측정하고, 교정사고와 폭력 피해의 경험이 교도관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상한 바와 같이 사고 경험과 폭력 피해 경험은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을 높이고 이어서 높아진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2004년도에 수행되었던 윤옥경, 이수정의 교정공무원의 폭력 피해에 대한 연구와 비교해 보면, 그 당시 조사 결과 욕설과 비속어 등 언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약 70~80%였고, 신체적 폭력은 심각한 폭력의 경우 13%, 가벼운 폭력의 경우는 20%로 측정되었는데, 20년이 지난 현재 교도관들의 폭력 피해 정도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교정사고의 경험과 폭력 피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언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교도관의 비율은 85% 정도이고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교도관의 비율은 67%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이러한 폭력 피해는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의미 있게 높이며, 이렇게 높아진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를 상당히 감소시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교정사고, 특히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폭력은 교도관들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직무에 대한 불안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교도소 내에서의 수용관리를 위한 공무집행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수용자로부터의 위협과 폭력에 대한 불안은 교도관들이 적극적으로 수용 관리와 수용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수용자로 하여금 더더욱 자신들의 요구와 편의를 위한 행동을 하도록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물론 교정사고의 발생을 줄이고, 이어서 교도관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강구가 쉬운 것은 아니다. 교정사고의 발생과 교도관에 대한 폭력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중첩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차원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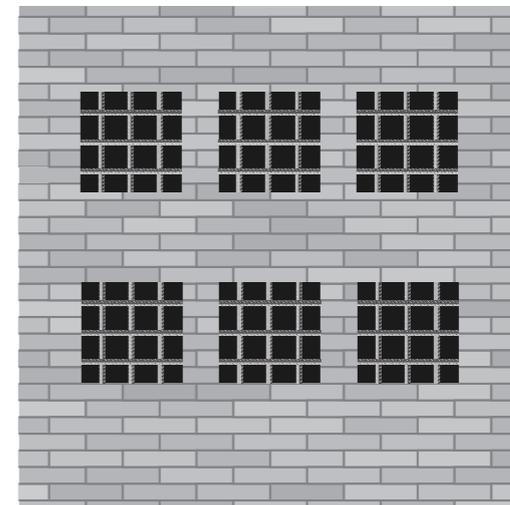
가장 직접적으로는 교도관들의 직무상 위협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 Ferdik과 Smith(2017:15)는 교도관들이 일상에서 직무상 위협(occupational dangers)에 직면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연구도, 실질적인 정책적 관심도 약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우리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직원들의 직무 중 사고 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교도관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위협에 대한 인식 수준과 직무수행에 따른 위협에 대한 인식 수준을 측정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피해 경험을 가진 교도관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마음나래’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만 예산의 부족 등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인바 보다 적극적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서 피해를 경험한 동료들이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동료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도소 내의 폭력(prison violence)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수용자 간 폭력이건 수용자의 교도관 폭력이던, 자살, 자해이던 교도소 내의 폭력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사고 경험을 했거나 폭력 피해를 당한 교도관들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는 근원적인 해결이 어렵다. 교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과밀수용, 낙후된 시설, 일부 수용자들의 과잉된 인권 의식, 정신 질환 수용자의 증가, 조직문화의 경직성 등 교도소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지금의 현실이 20년 전 교도관이 경험하였던 폭력 피해보다 더 심각하고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면에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대증적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안전감을 높이고 교도관들의 직무위험을 감소할 방안을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함을 제안한다. 많은 연구 결과의 축적과 그것을 바탕으로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과 실행이 의지를 가지고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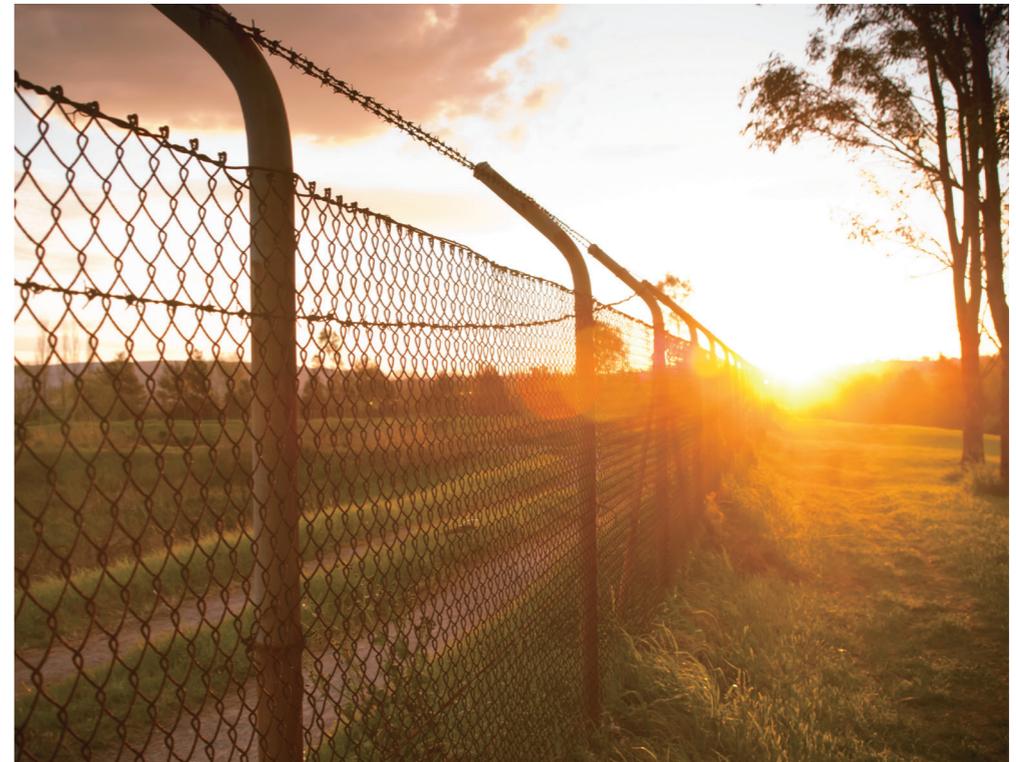
[국내 문헌]

- 교정본부, (2022), 교정통계연보.
- 김종배/홍정숙, (2022), '교정공무원의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교정연구 제32권 제2호, pp.55-86.
- 양점미/문승연, (2016),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소진과 행복의 관계에 미치는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교정연구 제26권 제3호, pp.27-56.
- 윤옥경/이수정, (2004), '교정공무원의 폭력피해로 인한 탈진감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교정연구 제25호, pp.7-34.
- 윤옥경/이수정, (2005), '수용자-교도관 폭행의 유형과 실태: 교도관의 관점,'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pp.107-137.
- 윤옥경, (2006),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 유발요인과 해소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5호, pp.79-107.
- 이수정/구현아/홍영오, (2005),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의 원인기제로서의 수용자로 인한 폭력피해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8(2), pp.317-335.
- 최명희/박현주, (2018),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무스트레스, 성격유형과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제54호, pp.87-110.

[국외 문헌]

- Ferdik, Frank Valentino and Hayden P. Smith, (2017), "Correctional officer safety and wellness: Literature synthesis,"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Accession Number NCJ 250484.
- Hackman, J. R., and G.R. Oldham, (1975), "Development of job diagnostic surve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5: pp.258-286.
- Lambert, Eric G., Shannon M. Barton-Bellessa, and Nancy L. Hogan, (2015), "The consequences of emotional burnout among correctional staff," Sage Open April-June 2015: pp.1-15.
- Lambert, Eric G., Kevin I. Minor, Jill Gordon, James B. Wells, and Nancy L. Hogan, (2018), "Exploring the correlates of perceived job dangerousness among correctional staff at a maximum security prison,"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29(3); pp.215-239.
- Lambert, Eric G., Linda D. Keena, Stacy H. Haynes, David May, and Matthew C. Leone, (2020), "Predictors of job stress among southern correctional staff,"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31(2): pp.309-331.

- Maslach, C., and S. E. Jackson, (1981),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2: pp.99-113.
-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2022), "Current and Innovative Practices in Reducing Staff Trauma and Organizational Stress in Corrections for Correctional Officers," Accession Number 033671.
- Rania, Nadia, Laura Migliorini, and Ilaria Coppola, (2020), "A qualitative study of organizational and psychosocial factors in the burnout of Italian correctional officers," Prison Journal 100(6): pp.747-768.



마약 중독의 재화에 있어 교정의 역할



이지연

한국외국어대학교 상담심리전공 교수

마약으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되는 교정

마약 중독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2016년에는 급기야 UN이 부여하는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었다. 또한 마약 사용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대상자의 분포가 넓어진 것이 큰 특징이다. 마약 중독은 본인에게도 생활고, 범죄, 자해, 자살 기도 등의 어려움을 겪게 하지만 가족과 주변인들 역시 그로 인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약 중독으로 치료받는 중독자의 90% 이상이 재발률을 보이는 만큼 극복하기 어려우나, 교정기관에서의 마약 재활 프로그램은 중독자에게 독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되찾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캐나다, 미국,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고 보며, 다양한 재발방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재활 과정에서 교정은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작용한다.

마약 중독에 있어 교정의 필요성

우선 교정현장은 중독자의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킨다. 중독자는 종종 변명과 자기 정당화를 통해 중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도와 사고방식은 중독으로 인한 부정적인 행동을 유지하고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그런데 교정현장은 약물 중독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이상향과 현재의 삶에 대해 극심한 자기 불일치를 경험하게 하며, 자기 정당화에 도전하고 비판적인 사고와 책임감을 갖추도록 유도한다.

중독 연구 분야에서 '바닥 경험'(Hitting bottom)은 회복하고자 하는 동기를 고양시키거나 인식변화의 계기가 되는 심각하고 부정적인 사건으로 정의한다

(Kirouac, Frohe & Witkiewitz, 2015). 바닥 경험은 항복(약물에 대한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항복은 병식(병에 대한 인식)을 높여 회복 단계에 긍정적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구금 중인 마약 사범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전속고 단계(아직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의 바닥 경험 강도가 다른 집단(변화에 대한 숙고, 변화 준비, 변화 실천)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최경찬 & 이지연, 2023), 이는 바닥 경험이 회복 동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회복 행동으로까지 이어짐을 시사한다.

하지만 구금의 고통이 너무 큰 경우에는 바닥 경험에서 항복으로 가는 경로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수용자들이 구금 기간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박탈(자유, 재화와 서비스, 이성과의 성적 관계, 자율성, 안전)을 구금의 고통이라고 한다(Sykes, 2004). 수용자들은 정해진 일과에 맞춰 명령을 따르며 복종하도록 강요됨으로써 자유의지를 박탈당하고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게 된다.

마약류 사범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구금의 고통이 바닥 경험과 항복이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확인한 결과, 구금의 고통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항복의 정도가 더 높았다(최경찬, 2023). 구금의 고통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 수용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구금의 고통이 지나치게 높으면 바닥 경험을 토대로 항복과 이후 회복 행동으로 가는 과정에 소요할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마약 사범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적절한 회복적인 환경 조성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약류 사범 치료를 위한 전문성 강화

마약 중독에서의 회복은 약물 투약을 중단했다는 결과로 한정 짓기보다는 한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 많아지고 있으며, 회복을 시작하고 회복 행동을 유지하는 요인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신이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약물로 인한 폐해를 인정(항복)하게 되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교정기관에서 자조집단 방식으로 중독 회복 공동체를 운영한다거나 교정기관 내 회복 요인들을 구체화하는 실증적 연구들이 더 필요하다. 또한, 교정현장 내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처벌 공동체보다는 치료 공동체로서 기능하도록 실제로 이들에게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현재 국내에는 마약 중독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며 그로 인해 관련 전문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수감 중인 마약류 사범들에게 적합한 치료적 요인을 찾고 현장에서 이들의 회복을 조력할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소적인 전문가 풀을 넓혀 다학제적인 접근 및 전문가 양성에 있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징벌 사유 중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에 관하여



마성용

광주지방법정청 보안과 교감

I. 들어가며

II.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와 관련된 최근 판례

III.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의 목적과 형법상 목적범 내지 무고죄에 있어서의 목적과의 비교·검토

IV.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와 무고죄의 허위 사실 신고와의 비교·검토

V. 맺음말

I. 들어가며

송무 업무를 맡아 수행하면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와 관련된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행정소송 내지 행정심판을 진행하면서 징벌 사유로 위 사유를 간간이 접하게 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215조는 수용자에 대한 징벌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에서 형집행법 제107조 제5호는 수용자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하면 소장이 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부과하는 징벌의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2호는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등을 정하고 있다.

징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형집행법 제10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 다시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 징벌을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이미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 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이 내려진다.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10242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써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등 참조).

다만,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 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 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33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징벌 사유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례들이 존재하고 각하 판결로 종결이 되고는 있으나, 징벌 처분을 받게 되는 수용자들의 예견 가능성 확보 및 담당자들의 명확한 규정 적용을 위해서 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위 거짓 사실에 대한 징벌 사유의 규정 형식을 보면 형법상 목적범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고, 또한 그 내용 측면에서 형법상 무고죄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와 위 목적범 내지 무고죄와의 비교를 통해 그 적용 범위와 징벌 부과 시 고려하여야 할 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목적에 관하여 살펴보고, 나머지 요건들에 대해 비교해 보려고 한다.



II.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와 관련된 최근 판례

수용자가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다투는 경우 최근 판례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판결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구합783

【행정청의위법한처분등취소 또는 변경】

【청구인】 ○○○

【피청구인】 ○○교도소장

-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9. 7. 4. 원고에 대하여 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2019. 8. 21.까지 한 조사수용 처분 및 엄중 훈계 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 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무고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형이 확정되어, 2019. 5. 30.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

나. 원고는 ○○교도소 4수용동 하층 21실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9. 6. 28.경 피고에게 '원고가 2019. 6. 23. 11:00경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이 위 신고 사건에 관하여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자 2019. 6. 28.부터 2019. 7. 4.까지 원고와 △△△을 각각 다른 거실에 분리하여 조사수용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3. ○○교도소징벌위원회에 원고가 거짓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금치 30일의 징벌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벌위원회는 2019. 7. 4. 원고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 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형집행법 제109조 제2항 제2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금치 30일의 징벌을 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9. 7. 4. 원고에게 위 금치 30일의 집행을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금치 처분'이라 한다), 2019. 7. 4.부터 2019. 8. 2.까지 이 사건 금치처분을 집행하였다.

바. 원고는 2019. 8. 2.부터 ○○교도소 6수용동 하층 28실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9. 8. 13. 피고에게 '원고가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과 ▽▽▽으로부터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받았고, ◇◇◇이 ▽▽▽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으로부터 폭행 및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와 위 신고 관련자들이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자 2019. 8. 13.부터 2019. 8. 21.까지 원고와 위 신고 관련자들을 각각 다른 거실에 분리하여 조사수용을 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조사수용을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이라 한다).

아. 피고는 2019. 8. 21.경 위 신고가 형집행법 제107조 제5호에 따른 거짓 신고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엄중 훈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훈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 10 내지 13호증(가번호 있는 것은 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원고는 2019. 6. 23. △△△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하여 이를 사실대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가 거짓 신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금치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금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2) 피고는 원고가 신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과 이 사건 훈계를 하였는바,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과 이 사건 훈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에게 적어도 1인당 2.58㎡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인간적 존엄성과 건강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정시설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1인당 공간이 2.58㎡에 미치지 못하는 혼거실에 과밀수용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금치처분,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및 이 사건 훈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 1)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 및 제35조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법률상 이익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처분에 효력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 141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3312 판결 등 참조).

- 2) 이 사건 금치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2019. 8. 2.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징벌 집행을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금치처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제거되어야 할 법적 효과는 이미 소멸되었다. 다만 형집행법 제10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 다시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징벌을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금치처분의 집행이 종

료된 때로부터 이미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 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2019. 8. 21. 이미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의 집행을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제거되어야 할 법적 효과는 이미 소멸되었고, 달리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수형 기간 중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훈계에 관하여

수용소의 소장이 징벌대상자에 대하여 행하는 ‘훈계’는 징벌 대상 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무혐의 통보’와는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형집행법 및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징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징벌을 가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자체로 징벌대상자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설령 이와 같은 훈계를 받은 사실이 기록으로 남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형기간 중 이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금치처분,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및 이 사건 훈계의 각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

살피건대,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항고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행정청에 불과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아니어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55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 2020. 06. 17. 선고 2019구합523
【징벌처분무효】

【원고】 ○○○

【피고】 ○○교도소장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5. 원고에게 한 금치 20일 및 징벌 집행 유예 3월의 징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27. ○○구치소에 입소한 이래, 홍성교도소를 거쳐 2019. 5. 3. 전주 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 생활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17. 및 2019. 3. 2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서를 제출하였다.

○ A(5작업장 봉사원)가 작업반장인 원고에게 타인의 비닐가방 직업생산량을 장부에 원고의 생산량으로 적도록 강요함

○ A는 2018년 10월분 결산에서 약 400장의 정산 불일치를 발생하게 함

○ 위와 같은 A의 잘못을 담당 근무자인 교감 B에게 알렸으나 이를 묵인 및 방치하여 직무 유기함

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투서 행위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벌위원회의 징벌 의결을 거쳐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라 금치 20일 및 징벌 집행 유예 3월(2019. 3. 25.부터 2019. 6. 24.까지)의 징벌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징벌 집행 유예 기간은 모두 도과되었고, 원고는 형집행을 모두 마치고 2020. 5.경 출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이미 집행이 완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처분이 있었던 사실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그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집행 유예 기간 종료일인 2019. 6. 24.이 도과함으로써 그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고, 원고가 2020. 5.경 형의 집행을 모두 마치고 출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과거 수감 도중에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원고가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형집행법 제10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 다시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징벌을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가중된 징벌처분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도 없으므로 이미 집행이 종료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그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Ⅲ.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의 목적과 형법상 목적범 내지 무고죄에 있어서의 목적과의 비교·검토

1.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의 징벌

대법원은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사회 일반의 형벌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46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교정시설의 소장 등이 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피해자의 보호 및 수용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규율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징벌대상자에게 분리 수용 및 징벌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그 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징벌대상자에게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교정시설의 소장 등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에 관한 소장 등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의 법칙이나 논리의 법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형집행법 제107조 제5호는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라고 하여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상 목적범의 의의 및 무고죄의 목적과 비교함으로써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형법상 목적범의 의의 및 목적의 인식 정도

가. 목적범의 의의

목적범이란 구성요건상 고의 이외에 일정한 행위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초과된 내적 경향을 가진 범죄라고도 한다.

목적은 특수한 주관적 불법 요소이지만 고의는 일반적 주관적 불법 요소이고, 목적은 구성요건의 외부적·객관적 사실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식 대상으로 하지만 고의는 구성요건의 외부적·객관적 사실을 인식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목적은 고의와 구별된다. 한편 목적은 행위와 관련을 가진 유형적 개념으로서 불법 판단의 기초가 되지만 동기는 법적으로 무의미한 비유형적 개념으로 책임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목적은 동기와 구별된다.

나. 유형

1) 목적의 내용에 의한 구분

목적범은 목적이 행위자의 행위 자체에 의하여 직접 실현되고,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른 별도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단절된 결과범과, 목적이 행위자의 구성요건적 행위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행위자나 제3자의 별개의 행위가 있어야만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단축된 이행위범(예를 들면, 무고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목적의 성질에 의한 구분

목적범은 목적의 존재가 범죄의 성립요건인 진정목적범과, 목적의 존재가 형의 가중·감경 사유로 되어있는 부진정목적범으로 나눌 수 있다.

다. 목적의 인식 정도

목적범에서 목적의 인식 정도에 대해서는 1) 모든 목적범에 있어서의 목적의 내용은 확정적 인식이어야 한다는 확정적 인식설, 2)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은 구성요건적 고의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처럼 미필적 인식과 의욕으로 족하다는 미필적 인식설, 그리고 3) 단절된 결과범의 경우에는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만, 단축된 이행위범의 경우에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는 이분설이 대립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라고 판시하여 미필적 인식설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참조).

라. 무고죄에 있어서의 목적

1) 목적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형법 제156조).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타인은 특정되고 인식할 수 있는 범인 이외의 자를 말한다.

가) 범위 : 타인은 자연인·법인을 불문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무고가 된다. 타인은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책임무능력자도 타인에 포함된다.

나) 자기무고 :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경우이다.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이라고 하여 피무고자를 타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무고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다) 공동무고 : 자기와 타인이 공범 관계에 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타인의 범행 부분에 대해서만 무고죄가 성립한다.

라) 자기무고의 교사 : 타인에게 자기를 무고하도록 교사한 경우이다. 자기무고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이상 교사범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판례는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마) 승낙무고 : 피무고자의 동의를 받아 무고하는 경우이다. 본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의 심판기능이 적정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바) 사자·허무인무고 : 처음부터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무고죄의 주관적 요소인 목적성이 결여되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3) 형사처분·징계처분

형사처분에는 형벌 이외에 보안처분·보호처분도 포함되고 징계처분은 공법상의 특별 권력관계에 의한 제재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판례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도 포함 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4) 목적의 내용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는 미필적 인식설과 결과 발생을 희망·의욕 할 것을 요한다는 확정적 인식설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미필적 인식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공소외인과 그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기 위하여 자신들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소외인을 고소하기로 하고 이러한 취지를 공소외인에게도 미리 알린 후 공소외인으로부터 차용금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공소외인을 고소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바로 공소외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는 한편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들의 고소 사건은 고소장 각하로 종결한 사안이다.

2. 판결요지

[1]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이라는 결과 발생을 의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3. 소결 -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에의 적용

형집행법상 징벌은 행정상의 질서벌로서 형벌과는 구별된다. 행정질서벌의 경우 ‘죄형 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83 결정)’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는 하나, 이와는 별개로 목적범 내지 무고죄에 있어서의 목적은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해석에 있어서 고려할 만한 것이다.

형집행법상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①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 ②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위 목적의 인식 정도 내지 내용이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형집행법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과 형집행법상 징벌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점, 대법원 2005도2712 판결 등이 무고죄에 대하여 미필적 인식설을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형집행법상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결과 발생을 희망할 것까지는 요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 교도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자기무고와 비교하여 보면 자기 자신을 거짓 사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에 관한 징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IV.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와 무고죄의 허위 사실 신고와의 비교·검토

1. 무고죄의 행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가. 허위 사실

1) 의의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 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2) 판단

가) 신고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1통의 고소,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무고로 고소, 고발한 경우 그 중 일부 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 사실 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는 것(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이다.

다)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로는 허위신고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고소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 내용이 설사 피고인의 과실 또는 무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설령 6개월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일반진단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치근파절이 기왕증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가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를 숨기고 구성요건적 사실만을 신고하는 것도 허위신고에 해당한다.

마) 신고 사실은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나 법적 평가·죄명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허위신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바) 신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인 이상 범죄주체를 잘못 지목한 경우에도 허위신고가 아니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341 판결).

3) 정도

가) 신고되는 허위 사실은 형사처분·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즉 혐의를 야기·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추상적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수사권·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정도로 적시하여야 한다.

나) 피무고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반드시 성명을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누구를 무고하였는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신고 사실이 허위일지라도 형벌권 행사를 위한 조사가 전혀 필요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그 사실 자체가 형사 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등 참조).

나. 신고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1) 신고는 자발성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조사관의 요청, 수사기관의 신문에 의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신고가 아니다. 그러나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고소보충조서를 받으면서 자진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그 진술 부분까지 자진하여 신고한 것이 된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454 판결).

2) 신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서면·구두, 서면의 명칭여하, 자기명의·타인명의를 불문한다.

다. 소결 -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와 무고죄의 허위 사실 신고와의 비교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에 있어서의 거짓 사실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신고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는 신고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거짓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수용자가 하나의 서면으로 여러 사실을 나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대법원 88도1533 판결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중 일부 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거짓인 때에는 독립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

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고의

공무소·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는 허위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대해서는, 1) 미필적 고의도 고의에 포함되는 이상 무고죄의 경우에만 이를 배척할 이유가 없으므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는 견해와, 2) 미필적 인식만으로 충분하다면 대부분의 고소·고발이 본죄에 해당하게 되어 고소권·고발권의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되므로 허위 사실은 확정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판례는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는 입장이다.

인식의 정도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 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2.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1.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므로,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설사 그것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판결).

2.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 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3. 피고인의 간통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 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의 행위를 허위 사실의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피고인에게는 그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사 피고인의 고소가 간통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의사실을 적극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3. 17. 선고 95도162 판결).

4.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가 신문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문사 수습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하여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5.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 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니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 소인들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사 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다 하여 무고의 범의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6.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실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실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366 판결).

7. 무고죄의 성립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대하여 진실하다는 확실없는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단지 품문으로 알게된 허위 사실에 대하여 그 허위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실 없이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도 144 판결).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2998 판결).

2.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금전거래와 그 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기계공구류의 제공 행위를 법률상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금전의 편취가 아니면 같은 물품의 횡령 중 어느 하나의 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취지라면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 819 판결).

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조치에 대한 고의·과실

1) 관례의 태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조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2) 거짓 사실의 신고에 대한 징벌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행정에 관한 법규라고 할 것이고, 징벌은 이러한 행정법규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조치라고 할 것이다.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관점에서 위 관례의 태도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한다면 거짓 사실의 신고에 대한 징벌의 경우에도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 거짓 사실 신고에의 적용

거짓 사실 신고에 관한 징벌에 있어서 주관적 요소로서 목적 이외에 고의도 요한다고 본다면 위 무고죄에 있어서의 고의와 관련된 해석 및 판례의 태도를 상당 부분 차용할 수 있을 것이다.

거짓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대해서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징벌 대상 행위에 해당하고, 진실하다고 확신한다 함에는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 사실이 거짓 사실이라거나 거짓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 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경우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는 이상, 그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거짓 사실 신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특히 단지 풍문으로 알게 된 거짓 사실에 대하여 그 거짓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에는 징벌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수용자의 어떠한 신고행위가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징벌을 부과함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짓 사실의 신고에 대한 징벌의 경우에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V. 맺음말

관련 문의나 실제 사건 들을 진행하면서 거짓 사실 신고로 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러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무고죄와 비교를 통해 적용에 있어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 볼만한 것으로 보인다.

거짓 사실 신고행위라고 의심이 되는 경우 조사과정에서나 징벌위원회 등 징벌 절차 내에서 해당 수용자가 신고한 것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거짓 사실에 해당하는지, 위 수용자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지 관련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징벌위원회에 있어서도 관련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달라지겠지만 고의를 요한다고 본다면 거짓 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가 있는지 여부도 마찬가지로

조사·검토·적용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징벌 과정에서 목적 내지 고의에 대한 판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막연히 “거짓말 했네”라는 판단하에 형집행법 제107조 제5호를 적용하는 것은 해당 조문에 기재된 요건 자체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수용자가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다루는 경우 최근 판례들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판결을 하고 있으며, 수용자들이 형집행법 제107조 제5호를 적용에 있어서 용인하지 못할 때 소송까지 나아갈 것이다. 징벌 처분을 받게 되는 수용자들의 예견가능성 확보 및 담당자들의 업무 및 관련 절차에서의 명확한 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검토·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음악치료 활동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에 미치는 영향



양혜경

(사)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총무부회장

I. 시작하며

II. 음악치료 활동의 이해

III. 음악치료 활동 프로그램의 실제

IV. 소결

I. 시작하며

우리나라의 재범률이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범죄 양상도 마스크를 통한 보도에서 알 수 있듯 인면수심의 흉악성과 잔학성은 날이 갈수록 더해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과 공포심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국민은 범죄로부터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실 각자의 생업도 안전사회 구축이라는 국가적 책무가 이행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오는 불안에 노출케 하고 있고 그런 만큼 국민은 동시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범죄 방지 대책을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다.

사실 범죄의 발생과 재범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예산 사용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 불안과 불신의 분위기가 조성돼 심리사회정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한인섭(2006)은 범죄자는 변화 또는 개선돼야 할 자로서 이에 대한 비용과 인력 지출은 국가가 기꺼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는 형벌제도에 의해 사회로부터 격리돼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해제되고 나면 이들에 대한 통제는 기능이 약화돼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런 관계로 형기 만료를 앞둔 고위험군 수형자의 출소에 정 소식이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 이들로 인해 지역사회에 무서운 파장과 두려움의 감정이 지역주민들에게 급속히 파급돼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 부처 및 학계 등에서는 재범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재범률은 여전히 줄지 않는 통계치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은 불안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의 강력범죄 대책 마련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목격할 때마다 드는 의문이 있다. ‘범죄가 정부의 범죄 대책을 매번 뛰어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범이나 범죄 예방을 위한 전문가의 활용이나 프로그램의 도입 및 개발을 위한 예산 책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이다.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형자 심리치료지원센터 운영에 더해 2023년 서울남부교도소에 소년수형자 전담시설인 만델라 소년학교를 신설했다. 이는 소년수형자의 심리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화된 심리치료 프로그램 사용 등 체계화된 교정교육을 목표로 수행하고 있다(신용해, 2023). 이러한 교정정책은 교정복지 현장에서 강조하는 수형자의 인격권, 기본권 등 교정복지 실천 서비스의 가치와 맥을 함께한다는 것과 수형자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 활동의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양혜경/서보람, 2016).

양혜경 외(2016)는 교정시설에서 운영하는 수형자 교정교화 교육은 출소 후 이들의 재

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수형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출소 후의 행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수형자가 출소 후의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교정교육을 제공받는다면 출소 후 사회 적응에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형자의 대부분은 오랫동안 제한된 공간과 자유 안에서 생활한 나머지 현 상황과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불안, 우울, 절망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본 글은 연구자가 지난 수년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다양한 수형자의 심리사회정서 변화 및 재활을 위해 수행한 음악치료 활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교정 현장에서 불철주야 헌신하는 교정기관 관계자들에게 교정시설에서의 음악치료 활동이 수형자의 심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일말이라도 이해와 공감의 되기를 고대한다.



II. 음악치료 활동의 이해

1. 음악치료 역사

오래전부터 생리학, 심리학, 음악학, 인류학계의 학자들은 몇 세기에 걸쳐 음악이 우리 인류의 행동 방식과 생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가에 관심을 가져왔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음악에 대한 견해는 음악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해도 가장 보편적인 소통의 도구로 작용하는 위대한 요소임에는 분명하다. 음악은 아프고 상처받고 병든 자에게 위안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 상태를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부분에서도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William et al, 1999; 김수지 외, 2004).

선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주술의 힘을 절대적으로 믿었으며 그들의 삶을 평화롭고 건강하게 하고 초자연적인 힘과 소통하기 위한 종교의식이나 치료의식 활동 등에서 음악이 사용됐다. 이 시대는 음악 안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었으며, 병든 자를 악령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여기며 악마를 물리치기 위한 수단으로 음악을 활용했다.

따라서 음악치료의 역사적 기반에 대한 고찰은 음악치료의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학문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출발이라 할 수 있다.

선사시대 부족들은 질병을 원인에 따라 각기 다르게 구별했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사가 사용하는 음악의 스타일과 역할도 다르게 적용했다. 이 사회에서는 집단이나 공동체가 갖는 힘을 인정하며 종교의식 등에 모든 부족 구성원이 참여해 합창으로 그들의 정신적, 사회적 결속을 도울 뿐만 아니라 병자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온 것이다. 따라서 음악은 의학적 치료 요소와 종교의식에도 치료적 매개체로 사용돼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William et al, 1999; 김수지 외, 2004).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는 정신과 마음의 불균형에 의해 질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믿었으며, 영혼과 신체가 균형을 유지할 때 비로소 치료가 된다고 여겼다. 이 시기의 철학자들은 음악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했는데 플라톤(Plato)은 음악¹⁾이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영혼의 음악’이라며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은 사람의 성격이나 감정을 변화시키며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데에 효능이 있

1) 음악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우주와 국가, 개인의 창조과정에 빗대어 우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영혼과 육체가 있으며 창조주는 우주의 영혼을 만들 때 피타고라스 음률 체계의 법칙과 동일한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악에도 지상의 음악과 천상의 음악으로 구분되며, 지상의 음악은 천상의 음악을 근원으로 한다고 했다. 따라서 조화로운 음이라는 관점은 음악에 깃든 윤리적 가치를 지니며 즐거움이나 감각의 대상이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를 설명하는 데에 포함된 개념이라고 했다(플라톤의 국가론: 이데아론을 주장했던 음악의 관념론자).

다고 했다.

반면 아우렐리아누스는 정신병 치료에 음악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Feder & Feder, 1981; William et al, 1999; 김수지 외, 2004). 이같이 고대에서의 음악은 치유의 음악으로서 음악의 신이라 불리는 아폴로(Apollo)를 묘사하기도 했지만, 의학의 신이라고 한 것처럼 정신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음악이 처방됐다.

음악치료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약에서 다윗이 사울왕의 질병을 위해 하프를 연주하니 악신과 악귀가 떠나고 맑은 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것과 열왕기하 3장 15절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받기 위한 수단으로 거문고 악기를 사용했다는 구절이 있다.

이제 내게로 거문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거문고 타는 자가 거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와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열왕기 3장 15절)(김남숙 외, 2009).

중세에는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기독교가 서양문명의 발달에 주요하게 작용했다. 기독교가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면서 빈곤과 질병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빈자와 병자를 구분하지 않고 신의 저주에 의한 것도 아닌 의료적 치료 제공이 필요한 대상으로 봤다. 다만, 이 시대는 음악이 인간의 도덕성 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정치가 등의 기질적 이론이 중요한 가치관으로 작용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생리학, 해부학, 임상의학의 발달로 의학의 과학적 접근이 가능했던 시기로서 의사들은 음악을 정신장애, 우울, 불안, 절망 등의 치료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특히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음악을 전염병이나 질병을 몰아내는 방법으로 예방의학으로서도 처방됐다. 적절한 음악의 사용은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해 나가기도 하지만 황폐해진 정신이나 정서를 개선하는 근거가 됐다.

바로크 시대에도 음악을 인간의 네 가지 기본 기질 즉 체액설에 근거한 의학사상이론과 연계했다. 냉혹하고 의지가 강한 담즙질의 기질인 사람은 부풀은 담즙을 요동시키고 자극을 주는 격정적인 화성을 선호하고, 우울질을 가진 사람은 딱딱하고 근엄하거나 슬픈 감정을 느끼는 화성을 좋아하며, 냉정하고 활달하지 않고 둔하지만 의지나 끈기의 점액질을 가진 사람은 여성의 음역을 좋아하는데 여성의 높은 음역대가 이 기질의 사람에게는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게 전달되고, 다혈질 기질인 사람은 피를 동요시킬 만큼 격동적인 무도 음악을 선호한다고 여겼다(정현주, 2005).

19세기에는 과학적 의학 지식 발달로 질병과 예방에는 의학적 연구와 치료만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던 만큼 음악의 치료적 사용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했다.

20세기로 접어들어 음악의 사용은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정신의료병동을 중심으로 이어 나갔다. 이 시기 제1, 2차 세계 대전 후 참전 군인들의 전쟁 후유증의 하나인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게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도 음악치료를 학문의 영역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현대의 음악치료는 정신의료기관에서 가장 먼저 적용했으며 전쟁 중에도 음악을 거의 제공받지 못한 환자에 비해 음악에 노출된 상이군인의 정서적, 신체적 반응이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정신보건 현장에서 음악치료의 적합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음악치료 대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음악치료 임상 전문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따라서 세계 최초로 1944년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음악치료 교육과정이 개설됐다. 1946년 캔자스 대학 등에서 학부와 대학원에서 음악치료 학위 프로그램이 신설되기 시작했다. 1950년 미국에서 최초로 NAMT(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Therapy)가 결성됐다. 2009년 기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치료사는 약 5,000명 수준이다(김남숙/ 하승희, 2009).

2. 음악치료 정의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Therapy(NAMT, 1980)에 의하면 음악을 치료적 도구로 활용해 환자의 정신적·사회적·신체적 기능을 향상 내지는 복원·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즉, 대상자의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치료적 환경에서 음악치료사가 음악을 단계적으로 사용하며 음악치료 활동을 시행하기 전에 대상자의 문제를 분석해 치료 목적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AMTA, 1997)에서는 음악치료가 환자의 정신적·인지적·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음악 활동을 활용하는 전문 분야로 설명하고 있다. 음악치료는 클라이언트의 동기 부여, 신체적 활동, 가족과 환자의 정서적 지지 과정 중심의 심리치료 및 클라이언트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3. 음악이 왜 치료적 매개체가 되는 것일까?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언제든지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무의식이나 의식 안에서 음악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내적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되고 위안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음악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의 생리나 생체적 작용의 효능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소통의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음악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비언어적 매개체의 특성을 갖는다.

음악을 사용하는 치료 현장에서는 리듬·화성·멜로디의 음악적 요소를 모두 이용한다. 음악치료 현장에는 노래나 연주, 감상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이 음악치료사에 의해 진행되며, 이때 클라이언트와 치료사 사이에 교감과 소통이 용이해질 수 있다(헨리히 반 데에스트, 1995; 공찬숙, 여상훈 역, 1998).

특히, 치료 현장에서 악기를 사용해 연주하거나 음악을 집중해서 청취하는 등의 음악적 경험이 이뤄질 때 부정적인 감정과 두려움, 긴장, 스트레스, 공격적인 행동, 불안, 우울, 초조감 등을 경감시키게 돼 심리정서적인 안정과 인격 발달을 촉진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즉, 음악은 구태여 논리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냉혹하거나 폐쇄적인 성향이거나 둔감한 사람이더라도 정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음악은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의 경험을 드러내는데 매개체 역할과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Ⅲ. 음악치료 활동 프로그램의 실제

본 장은 저자가 직접 수행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성범죄 수형자의 심리사회재활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연구 논문의 제3장 제2절 ‘성범죄자를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에서 수형자들이 신청한 ‘음악 목록’과 연구자가 개발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내용’(양혜경, 2017) 등의 일부를 발췌해 본 연구에서 재사용했음을 밝힌다.

1. 성범죄자를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진행

본 프로그램은 경기도 A교도소에 수감 중인 성범죄 수형자를 대상으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우울, 분노, 자아존중감, 타인에 대한 공감, 불안

그리고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성범죄 수형자들의 심리사회적 재활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뒀다.

집중교육 대상인 성범죄 수형자의 자아존중감, 불안 및 우울, 분노 표현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상태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행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수형자가 선호하는 음악을 선택 및 신청할 기회를 제공해 그들의 심리정서적 긴장을 이완시킬 수 있도록 유도했다. 수형자들이 신청한 음악은 <표 1>과 같다. 수형자가 선택한 음악은 동일한 연령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Ballad, Dance Music, Hip Hop, Pop, Rock 등 다양한 장르로 나타났다.

이들이 선호하는 음악의 제공은 능동적 프로그램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그룹 성원 간에 감정 교류 등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 있는 도구로 사용됐다. 그러나 수형자들이 신청한 음악 가운데, 연구자가 사전에 청취해 수형자들의 정서나 프로그램 목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음악은 배제했다.

<표 1> 신청곡 목록

장르	신청곡
Ballad	30분 전(이현), All For You(서인국 & 정은지), 가족 사진(김진호), 홀로(정키), 하루 하루(윤미래),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포맨 & 벤), 기다리는 이유(임창정), 기억 속으로(이은미), 님은 먼 곳에(거미), My Everything(브라운아이드소울)
Dance Music	Again & Again(2PM), 캔디(HOT), 오늘부터 우리는(여자친구)
Hip Hop	It G Ma(키스아이프), 아까워(재지팩트), Nike Shoes(빈지노), I'm OK(크루셜스타), Tonight(크루셜스타), Nowor Never(Kendrick Lamar)
Pop	Hello(Adele), Hurricane(Eric Benét), I'm Not The Only One(Sam Smith), I'm Yours(Jason Mraz), When I Was Your Man(BrunoMars)
Rock	Moves Like Jagger(Maroon 5)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는 대상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주의를 기울였다. 그 이유는 대상자 대부분이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사회와 타인에 대한 분노나 법적 처벌에 대한 억울한 감정을 자주 드러내는 것이 관찰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음악 중 수행자들이 선호하는 음악을 직접 선택하게 해 프로그램의 대표 음악으로 선정했다. 이는 구성원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유도하기 위한 치료적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선정된 대표 음악은 ‘걱정말아요 그대’다. 성범죄 수행자를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내용은 아래의 <표 2>와 같이 구성했다.

<표 2> 음악치료 프로그램 내용²⁾

구분	내용
1회기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적 개입을 통해 수행자의 감춰진 불안감, 적대감 정화를 위한 라포 형성에 집중해 심리적 안정 유도 대중적으로 친숙한 노래 부르기를 통해 경직된 긴장감 완화 유도된 가사를 매개로 해 수행자 자신의 감정을 나타낼 기회 제공 수행자의 선호 음악을 신청받아 다음 회기에 들려줄 것을 약속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및 상호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
2회기 (자신에 대한 성찰 및 긴장 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자가 선호하는 음악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자와 수행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 선호하는 음악에 대해 수행자 자신의 기억, 감정을 언어나 몸짓으로 감정의 강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 음악 활동을 통해 수행자 자신의 스트레스, 증오, 분노, 불안 등의 원인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함
3회기 (집단 간 상호작용 및 타인의 감정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자의 유도된 음악과 수행자가 선호하는 음악을 통해 수행자 간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안 감정을 상호 교환하도록 해 혼자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환기할 수 있도록 유도 각 선호 음악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그룹 구성원 간의 상호 감정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기능을 향상하도록 유도
4회기 (자신의 감정 자각 및 사회성 기술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자가 준비한 음악을 통해 수행자 자신의 내면을 해석하고 탐색할 수 있는 통찰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 수행자가 선호하는 노래를 선택해 그룹 구성원들 앞에서 자신의 노래 실력과 감정을 드러나게 해 수행자의 자아존중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유도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내심과 타인을 존중하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선택된 음악에 따라 음악이 개인에게 일으킨 생각이나 감정 등을 토론하도록 함
5회기 (긍정적 자기 평가 및 변화 공감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택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참여자의 선호 음악에 대한 경험과 일반인 상태에서의 감정을 비교해 말할 수 있도록 진행 최종 음악치료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유도된 음악을 따라 그동안 음악 활동에 대한 감정 몰입과 이입, 자기 노출의 경험을 재정리해 변화된 감정적, 사회적 반응을 지각하도록 격려

2) 프로그램 내용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주로 사용하는 심리사회 실천 모델과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전개하는 개입단계를 구조화해 구성했다.

2.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수행자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본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질문한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본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및 향후 참여 의향

구분	빈도(%)	
본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의 기분	매우 좋았다	1(10)
	보통이다	8(80)
	무응답	1(10)
	총계	10(100)
본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매우 좋았다	9(90)
	보통이다	1(10)
	총계	10(100)
본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의 기분 변화	다름이 없다	1(10)
	좋아졌다	5(50)
	매우 좋아졌다	4(40)
총계	10(100)	
향후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향	예	8(80)
	아니오	2(20)
총계	10(100)	



3. 음악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진술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및 향후 참여 의향에 대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음악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진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이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유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하다. • 음악을 듣고 나서 확실하게 듣기 전보다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고 보통 이상으로 기분이 진정됐다. • 약간의 복잡한 마음이 조금은 풀린다. • <걱정말아요 그대>라는 교육 타이틀 노래의 가사처럼 강사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시간이 소중하고 감사했다. • 음악을 들으면서 선생님과 대화하고 음악 덕분에 교육받는 수용자들 간에도 어색했던 소통도 하게 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라 생각한다. 지난 일들도 좋았던 일보다도 나쁠 때의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음악치료를 통해서 좋은 기억들만 떠오르게 해주셔서 적극 추천한다. 그리고 고맙고 행복했다. 감사하다. • 감사하다.

4.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좋았던 점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경험에 대해 좋았던 점을 기술하게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좋았던 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을 들으면서 회상도 하고 생각도 잠기게 돼서. • 여러 음악을 들으며 옛 추억과 예전의 나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듣지 못했던 음악을 들려주셔서 참 좋았고 서로가 서로의 취향을 알게 됐다. • 강사님이 이야기를 귀 기울여 잘 들어 주셨다. • 내가 사회 있을 때 힘들고 지치고 짜증 나고 할 때 가끔 음악을 듣고 했는데 그런 음악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잠시 사회 생각이 났다). • 강사님이 저희 마음을 알기 위해 오셨고, 수업의 사실적인 대화보다 관계 지향적인 대화로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다. • 듣고 싶은 음악을 종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복잡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다 잊고 그날만큼은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음악은 어느 누구나 같은 곳에서 소통합니다. • 음악을 통해서 서로들의 개성과 소통으로 친해질 수 있고 또한 서로가 속에 담아 왔던 것들을 꺼낼 수 있었다. • 강사님이 저희의 말을 들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다. 본인의 진솔한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저 또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하다.

IV. 소결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증오감, 분노 표출이 드러난 끔찍한 범죄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소위 ‘무동기 범죄’가 발생한 원인을 각각의 문제 상황과 범죄 양상을 총체적으로 구분해 심리사회적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박용순 외, 2020).

범죄는 특정한 또는 일반적인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탈 행위로 공익과 법익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이러한 법 침해에 대한 범죄 대책 및 형벌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지는 오래됐다. 그러나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법 집행을 시행하는 동안에도 범죄 억제에 대한 법의 효력이 곳곳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느끼게 된다.

본 글은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형자의 심리정서 교육의 하나인 음악치료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탐색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사실, 수형자의 심리정서 상태의 변화 내지는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심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만, 과연 수형자가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정확한 측정은 어렵다. 음악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삶의 한 부분이다. 음악은 적절한 자신만의 표현 수단이 되기도 하고 타인과의 감정을 공유하기도 하는 등 개별적이고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수단이 되게 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볼 때 교정시설 내의 수형자를 위한 음악치료 활동은 그들의 부정적이고 메마른 심리정서적 상태에 대해 정상적인 사고와 인식, 감정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대처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실 사회와 분리된 공간에서 정신적, 신체적 퇴행을 일반인보다 더 빠르게 경험할 것으로 간주해 보면 음악치료 활동은 수형자의 심리정서적 퇴행을 방지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일반 음악치료 세션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 내에서의 음악치료 대상은 교육 및 지적 수준, 사회적 지위, 음악적 배경 등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리듬, 소리, 멜로디 등에 반응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교정시설 내에서 수형자에게 사용해 온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활동은 단기적 혹은 단편적이라고 하더라도 건전한 수용 생활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형자의 정서적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음악을 통한 긍정적 자극은 불안을 감소시키고 그들의 가족, 사회, 자신에 대한 원망, 분노에 대한 감정을 억제 또는 감소시키게 하는 유용한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음악은 언어를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통의 수단이며,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재범 위험성이 있는 고위험 범죄자의 사회복귀에 따른 국민의 불안은 민감할 정도로 고조되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교정단계에서 수형자의 인성 심리치료의 세부화와 적극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교정당국에서는 수형자의 인성 심리치료를 위해 계획 수립 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발굴과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 도구를 개발·도입하고, 프로그램의 치료적 개입 효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이뤄져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수형자에게 적용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여부, 수형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에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날로 발전하는 교정당국의 선진화된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수형자가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 적응을 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로 스며들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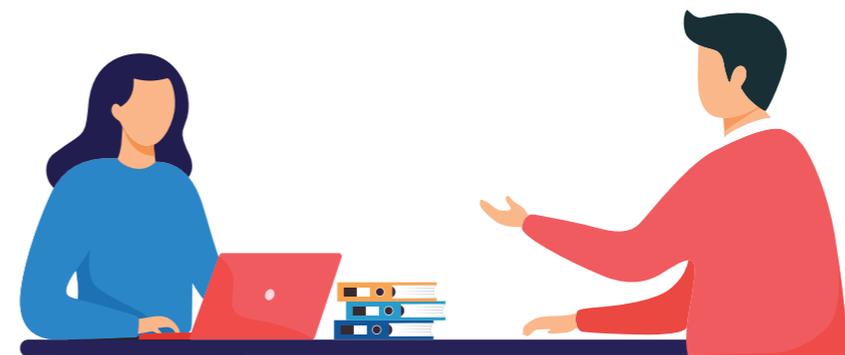
<참고 문헌>

[국내 문헌]

- 공찬숙/여상훈 역(1998), 음악치료, 시유사, 서울.
- 김남숙/하승희(2009),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음악치료의 이해, 양서원, 경기.
- 김수지/고혜정/권혜경 공역(2004), 음악치료학 개론: 이론과 실제, 권혜경 음악치료센터
- 박용순/문순영/임원선/임정호(2020), 사회문제론, 학지사, 서울.
- 신용해 교정본부장(2023), 교정 및 소년정책의 역할, 제63회 한국교정학회, 한국소년정책학회 공동학술대회 축사, 강릉원주대학교.
- 양혜경/서보람(2016) 수형자의 심리정서를 위한 음악치료활동 프로그램, 법무보호연구,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제2권, 93-113.
- 양혜경/서보람(2016), 민영교도소에서 실시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제26권 2호, 51-71.
- 양혜경(2017), 성범죄 수형자의 심리사회재활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제27권 3호, 37-62.
- 한인섭(2006), 형벌과 사회통제, 박영사, 서울.
- 정현주(200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출판사.

[국외 문헌]

- Feder, E./B. Feder(1981), The expressive arts therapi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Hinrich van Deest(1995), Heilen mit Musik, TRIAS Thieme Hippokrates Enke in Georg Thieme Verlag, Stuttgart, Germany.
- William B. Davis/Kate E. Gfeller/Michael H. Thaut(1999), An Introduction to Music Therapy: Theory and Practice, McGraw-Hill Companies.



뜨거운 소명 의식으로 풀어쓴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전근대 한국의 감옥과 행형』, 금융명 교도소연구소 소장



고조선부터 대한제국까지의 교정사를 기록한 번역서 『전근대 한국의 감옥과 행형』이 지난 6월 출간됐다. 정년퇴임 후 교도소연구소를 설립해 교정 관련 각종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금융명 소장의 뜨거운 소명 의식이 만들어 낸 값진 결과물이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대한제국 이전의 교정사를 들여다보다

『전근대 한국의 감옥과 행형(원제: 朝鮮舊時의刑政)』은 일제강점기 경성형무소장을 지낸 나가하시 마사요시가 1936년 발간한 저서다. 고조선부터 대한제국까지의 형법전·재판·형벌·구금·감옥설비·행형 등을 통섭적으로 기록·정리한 형사사법 종합 역사서로, 지금은 구하기 힘든 수많은 사료를 토대로 했기에 일본인이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정사와 행형(行刑) 체계를 한층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역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저서이지만, 그간 번역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교정공무원과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1992년 입직 후 30년간 교정본부와 10개 교정기관을 오가며 성실하게 임무 수행한 끝에 2021년 말 정년퇴임한 금융명 소장은 힘닿는 데까지 우리나라 교정에 기여하고 싶다는 열정으로 퇴임 직후 교도소연구소를 설립했으며, 2년여의 번역 작업 끝에 올 6월 『전근대 한국의 감옥과 행형』 번역서를 출간했다. “편의상 대한제국 이전의 시기를 ‘전근대’라고 표현했을 뿐, 사실 우리나라는 근대 및 현대에 버금가는 행형 철학과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조선 개국 초에 반포된 법전 『경제육전』의 서문에는 ‘성인께서 형벌을 만든 것은 형벌에만 의지해 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형벌로써 정치를 보좌하도록 할 뿐인 것이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행형을 단순히 벌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닌 교화의 측면으로 바라보고 실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26년(세종 8)에는 전통옥의 표준인 안옥(狽獄)을 설계·반포했는데, 남녀의 옥사를 구분하는 것은 물론 여름과 겨울의 거실을 달리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남녀 분리 수용이 1598년부터 이뤄졌다는 점에 비춰 보면 일찍이 수용자 인권에도 신경을 썼던 것이죠. 『전근대 한국의 감옥과 행형』에는 이처럼 흥미롭고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역사로 드높이는 사명감과 자부심

금융명 소장은 교도소연구소 설립 이전에도 교정학 및 교정 실무와 관련된 저서 집필, 일본 형법서 공동 번역, 국군교도소 설계 자문 등 교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중 최근 가장 몰두하고 있는 일은 ‘교정사 아카이빙(Archiving)’이다. 교정의 현재와 미래의 거울 역할을 할 과거의 기록·그림·사진 등을 집대성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 『전근대 한국의 감옥과 행형』의 출간도 이러한 활동의 일환이다.

“역사와 선례를 바로 알면 교정이 더욱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교정공무원들의 사명감과 자부심도 높아질 수 있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에, 저는 앞으로도 교정 역사서 저술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이후까지의 교정사를 다룬 『근대 한국의 형무소와 행형』과 근대 교정시설의 이야기를 담은 『우리나라 근대감옥건축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명 소장은 『전근대 한국의 감옥과 행형』을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선배와 후배 교도관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교정에 대한 그의 애정이 느껴지는 대목. 앞으로도 교정의 발전에 일조하겠다는 금융명 소장의 뜨거운 결심과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NFC 기술을 활용한 수용자 식별카드 추진 계획



추진 배경 근거리통신기술(NFC)을 활용한 수용자 식별카드 도입으로 수용관리 업무 효과성 증대
주요 내용 수용자 번호표 및 거실표를 대체, 실시간 모바일 수용생활기록부 연동시스템 구축

가상현실(VR)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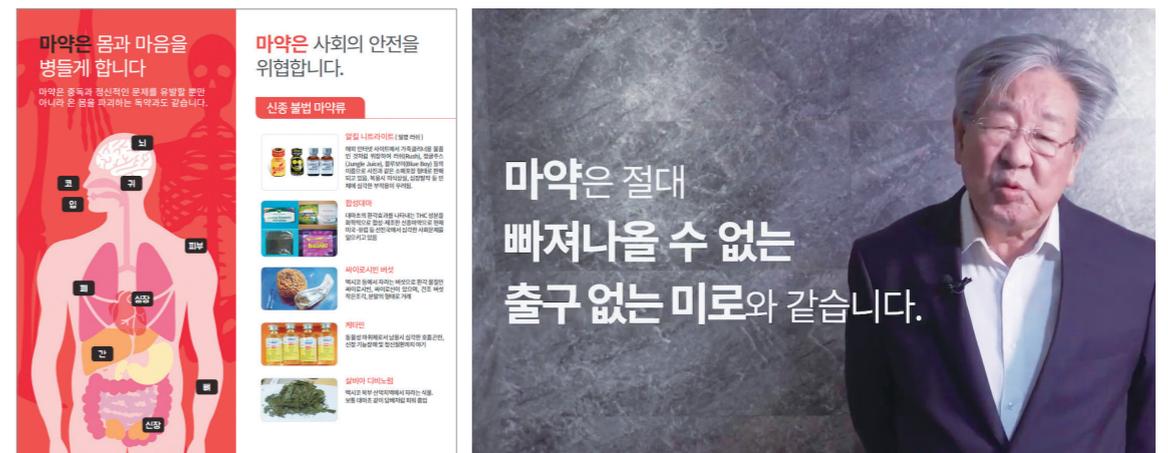
추진 배경 시·공간 제약을 뛰어넘는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해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 개발 운영
주요 내용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으로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에 맞는 심리치료 콘텐츠 개발

마약류 중독예방교육 확대를 위한 담당자 영상회의(7. 4.)



추진 배경 알코올관련사범에 대한 효율적 마약류 중독예방교육 실시
주요 내용 마약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및 치료 운영방식 논의

마약류 중독예방교육 강이자료 배포



추진 배경 펜타닐 등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
주요 내용 마약류 폐해에 관한 영상자료 배포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전광호

서울지방교정청장 정책 현장 방문

서울지방교정청장은 7월 20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했다. 정병헌 청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등 피해 대비를 위해 취약 교정시설을 점검했으며,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서울구치소 | 교위 임완섭

수용자 물품 기증

서울구치소는 7월 7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37,800병을 기증받았다. 민낙기 소장은 “생수를 기증해 주신 교정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생수는 수용자들이 혹서기를 지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교도소 | 교사 이승연

교정본부장 정책 현장 방문

교정본부장은 7월 21일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신용해 본부장은 집중호우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시설 곳곳을 둘러보면서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수원구치소 | 교사 윤희수

승진 직원 임용식 개최

수원구치소는 7월 17일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흥연 소장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교정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새롭게 부여된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이승훈

교정시설 참관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7월 10일 부산교정시설 입지 선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참관은 입지 선정위원회가 노후화된 부산교정시설 현대화 및 이전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서울동부구치소를 참고하고자 진행됐다.

인천구치소 | 교위 이동훈

양육 유아 돌잔치 개최

인천구치소는 7월 7일 양육 유아의 건강을 기원하고 수용자의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돌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돌잡이를 실시해 유아의 앞날이 번영하길 바라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사 조도현

직원 아이스크림 지급

서울남부구치소는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폭염으로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아이스크림을 지급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사 심우현

소방 훈련 실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7월 13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직원 식당에서 조리원 등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과 소방 장비 사용 훈련을 실시했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김조영

수용자 진료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교도소는 7월 10일 수용자 의료처우 수준 제고와 치료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혈액투석 전문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재술 소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주교도소 | 교사 양종문

교정시설 참관 실시

여주교도소는 7월 20일 국군교도소 교도대장 등 12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국군교도소 교도대장은 “교정행정의 발전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교정행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김재현

교정시설 참관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7월 10일 부산교정시설 입지 선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참관인들은 보안청사, 수용동, 대강당 등을 전반적으로 둘러보며 선진 교정시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춘천교도소 | 교도 박상혁

여성 수용자 대상 미용 봉사 실시

춘천교도소는 7월 27일 여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 활동은 여성 수용자들이 미용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박미숙 전 교정위원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원주교도소 | 교위 김승현

화훼산업 육성 업무협약 체결

원주교도소는 7월 13일 기술 교류 등을 통한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원주시 및 영서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서는 신규 정책사업 구상 및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강릉교도소 | 교감 전홍재

승진 직원 임용식 개최

강릉교도소는 7월 10일 승진 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허덕

환 소장은 “앞으로 교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직무를 수행하고, 교정교화와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월교도소 | 교위 김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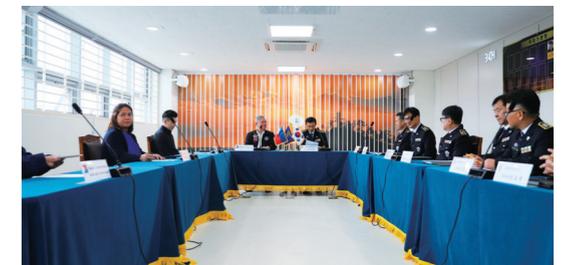
수용자 물품 기증

영월교도소는 7월 20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중복 맛이 삼계탕에 사용할 닭 450인분을 기증받았다. 윤상륜 소장은 “무더운 여름철 수용자 건강관리와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사 성명제

교정시설 참관 실시

강원북부교도소는 7월 4일 필리핀 교정국장 및 관계자 4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참관인들은 강원북부교도소의 첨단 전자경비시스템 및 자치 수용, 가족 접견 등 수용자 처우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박세영

수용자 물품 기증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7월 19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5,000병을 기증받았다. 이성호 지소장은 “생수를 기증해 주신 평택·안성 교정협의회에 감사드리며, 하절기 수용자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소망교도소 | 8직급 황재민

홍보대사 위촉식 개최

소망교도소는 7월 5일 가수 양동근 및 이철규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소망교도소는 홍보대사들이 앞으로 홍보영상 제작 및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망교도소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이시은

반부패 및 청렴 교육 실시

대구지방교정청은 7월 25일 인사·관리·광역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대구지방교정청 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을 강사로 임명해 공직자 근무 자세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교도소 | 교위 오진석

모범공무원 전수식 개최

대구교도소는 7월 11일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조태석 교감에게 모범공무원증 및 표창을 전달하는 전수식을 개최했다. 조태석 교감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용 질서 확립과 교정교화에 앞장서는 등 교정행정 발전 공적이 인정돼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됐다.

부산구치소 | 교사 손태우

수용자 물품 기증

부산구치소는 7월 11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10,000병과 얼음 빙과 2,000개를 기증받았다. 이번 기증은 교정위원들의 모금으로 마련됐으며, 기증받은 생수와 얼음 빙과는 여름 동안 주기적으로 수용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문현배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7월 13일 외부강사를 초빙해 수용자 심리치료를 위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으로 캘리그래피 교육을 실시했다. 장종선 소장은 "문화 활동을 통해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교도소 | 교도 김시진

수용자 물품 기증

창원교도소는 7월 18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10,000병을 기증받았다. 기증받은 생수는 혹서기에 수용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부산교도소 | 교위 이재운

교정시설 참관 실시

부산교도소는 7월 18일 콩고 교정청장을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참관인들이 교정시스템을 체험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됐다.



포항교도소 | 교사 박승현

제17대 포항교도소장 취임식 개최

포항교도소는 7월 3일 제17대 주정민 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주정민 소장은 "엄정한 수용 질서가 확립된 가운데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는 조화로운 교정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주영

모범공무원 전수식 개최

진주교도소는 7월 11일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신삼식 교감에게 모범공무원증을 전달하는 전수식을 개최했다. 신삼식 교감은 심리치료 상담을 통한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등 교정사고 예방 공적이 인정돼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됐다.

대구구치소 | 교사 광재원

수용자 물품 기증

대구구치소는 7월 6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20,000병을 기증받았다. 김영광 소장은 "덥고 습한 여름에 수용자들이

잠깐이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게 해줄 생수 기증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박성국

수용자 물품 기증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7월 13일 감리교 교정선교회로부터 생닭 500마리를 기증받았다. 이현주 소장은 "수용자들을 위해 생닭을 기증해 준 감리교 교정선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안동교도소 | 교사 조남영

승진 및 전입 직원 신고식 개최

안동교도소는 7월 17일 승진 및 전입 직원 신고식을 개최했다. 소장 및 각 과장은 승진 직원의 계급장을 직접 달아주며 축하의 말을 전달했고, 전입 직원에게는 안동교도소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하며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위 박승수

승진 및 전입 직원 신고식 개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7월 10일 승진 및 전입 직원 신고식을 개최했다. 강성현 소장은 "우리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온 것을 환영하며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사 진용혁

교정시설 참관 실시

김천소년교도소는 7월 5일 김천시의회 의원 9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참관은 교정행정의 모습을 널리 알리고 교정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사 최도원

승진 및 전입 직원 신고식 개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7월 17일 승진 및 전입 직원 신고식을 개최했다. 조관성 소장은 "경북북부제3교도소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하며 교정의 발전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울산구치소 | 교사 우동우

제27대 울산구치소장 취임식 개최

울산구치소는 7월 3일 제27대 안경수 소장의 취임식을 개

최했다. 안경수 소장은 "우리나라의 산업 수도라 불리는 울산에서 근무할 수 있어 기쁘며,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와 엄정한 수용 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교도소 | 교위 이상길

제49대 경주교도소장 취임식 개최

경주교도소는 7월 3일 제49대 김철민 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철민 소장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부조리 근절과 출근하고 싶은 직장문화를 조성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통영구치소 | 교사 정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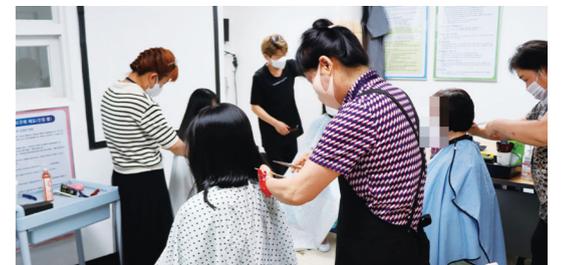
교정시설 참관 실시

통영구치소는 7월 13일 통영교육지원청 김경숙 교육장 등 통영시 관내 학교장 22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참관은 수용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정홍보영상 시청, 수용동, 작업장을 둘러보는 순으로 진행됐다.

밀양구치소 | 교위 양원선

여성 수용자 대상 미용 봉사 실시

밀양구치소는 7월 4일 대한미용사회 밀양시지부의 후원을 받아 여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미용 봉사는 여자 수용자의 미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수용 생활을 유도하고자 실시했다.



상주교도소 | 교사 황봉기

수용자 물품 기증

상주교도소는 7월 18일 상주시 산림조합으로부터 아이스크림 600개를 기증받았다. 윤양호 소장은 "폭염으로 힘든 시기에 수용자에게 시원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거창구치소 | 교사 박준표

개청 준비 요원 전입식 개최

거창구치소는 7월 17일 개청 준비 요원 전입식을 개최했다. 이날 37명의 개청 준비 요원들은 전입식을 통해 거창구치소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계기를 가졌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김건하

대전지방교정청장 정책 현장 방문

대전지방교정청장은 7월 17일 공주교도소를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확인하고 수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승만 청장은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교도소 | 교위 이호현

故 김동민 교감 제19주기 추모행사 실시

대전교도소는 7월 14일 지난 2004년 근무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신故 김동민 교감 제19주기 추모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많은 후배 직원들은 비가 오는 곳도 날씨에도故 김동민 교감을 추모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청주교도소 | 교위 오요한

보라미 준법 교실 실시

청주교도소는 7월 14일 괴산북중학교를 방문해 보라미 준법 교실을 실시했다. 이날 학생들은 교도관과 교정시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한 점 등을 질문하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천안교도소 | 교사 곽태업

교정시설 참관 실시

천안교도소는 7월 10일 경찰대학교 학생 31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참관은 향후 수사업무를 담당할 학생들에게 교정업무의 전문성을 알리고 수용자 교화 및 재사회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도 차소민

직무 교육 실시

청주여자교도소는 7월 13일 직원 68명을 대상으로 수용기록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직원들이 평소 자주 하는 질문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진행했고, 수용기록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

공주교도소 | 교사 정조원

청렴 캠페인 실시

공주교도소는 7월 25일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 캠페인은 민원실과 외정문 밖에서 진행됐으며,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리플릿을 배포해 더욱 청렴한 공주교도소의 모습을 전달할 수 있었다.

충주구치소 | 교사 배주경

양성평등 및 폭력 예방 교육 실시

충주구치소는 7월 13일 외부 강사를 초빙해 양성평등 및 폭

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상호 소통을 통한 유연한 조직문화 기반 조성, 양성평등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홍성교도소 | 교도 이병훈

정보 및 전입 직원 신고식 개최

홍성교도소는 7월 17일 정보 및 전입자 신고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고식은 참석 직원들의 진심 어린 축하와 환영 속에서 진행됐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강세원

하계휴가 대비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하계휴가를 맞이해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음주운전 근절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이도진

수용자 물품 기증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7월 7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들을 위한 생수 3,000병을 기증받았다. 제환국 지소장은 “수용자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전용배

제27대 논산지소장 취임식 개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7월 3일 제27대 허영열 지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직원들은 허영열 지소장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며 취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허영열 지소장은 “직원 간 소통·화합을 통해 자유롭게 어울리는 논산지소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정영선

수용자 물품 기증

광주지방교정청은 7월 12일 교정연합회로부터 생수를 기증 받았다. 김동현 청장은 “기증의 손길은 수용자에게 많은 위로가 되며, 안정적인 수용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광주교도소 | 교위 박선주

수용자 물품 기증

광주교도소는 7월 26일 교정협의회 김성진 교정위원으로부터 아이스크림 2,600개를 기증받았다. 최규철 소장은 “수용자들이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을 지원해 주신 김성진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 교위 조연호

음주운전 재발 방지 특별교육 실시

전주교도소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각심 및 책임 의식을 고취시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진행됐다.

순천교도소 | 교위 신광식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순천교도소는 7월 12일 외부강사를 초빙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고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

목포교도소 | 교사 류정관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

목포교도소는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응급상황 발생 시 교정사고 예방에 필요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총 25개 팀이 참가해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군산교도소 | 교사 윤나리

수용자 물품 기증

군산교도소는 7월 21일 천주교 전주교구청으로부터 생수 4,000병과 천주교 성가 반주기를 기증받았다. 오우정 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정적인 수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교도소 | 교사 고동성

진로직업 청소년 Dream 夢 프로젝트 실시

제주교도소는 7월 18일 제주오현고등학교 학생 415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청소년 Dream 夢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및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프로젝트로 제주교도소를 포함한 12개 분야의 전문 직업군이 참여했다.

장흥교도소 | 교사 채종건

교정시설 참관 실시

장흥교도소는 7월 3일 관산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18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조병주 소장은 "학생들이 이번 참관을 통해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교도소 | 교도 김수민

교정시설 참관 실시

해남교도소는 7월 13일 해남경찰서 서장 및 직원 12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참관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 구축과 해남경찰서 직원들의 법무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됐다.

정읍교도소 | 교도 윤홍익

직무 교육 실시

정읍교도소는 7월 3일 전자수용기록카드 열람과 관련한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수용자 전국 검색 기능을 업무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당부했으며, 직원들은 바쁜 업무 중에도 교육에 적극 동참해 공직자로서 배움의 자세를 다지는 열정적인 시간을 가졌다.



서울남부교도소 교위 박형종

박형종 교위는 1996년 임용 후 27여 년 동안 재직하면서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특히, 보안과 업무 시 조사징벌수용동 및 성폭력사범수용동 등 기피 개소에 근무하며 지속적인 면담과 고충처리 등으로 수용자의 심적 안정을 도모하고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화분을 배치하는 등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해 왔다.



진주교도소 교위 정현우

정현우 교위는 접견진행팀 근무자로 지난 6월 21일 철저한 접견 모니터링을 위해 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청취하던 중 민원인의 접견이 취재 목적인 것을 파악해 즉시 중지했다. 이후 민원인이 PD인 것을 확인했으며, 민원인에게 공식 취재 절차를 안내해 언론 관련 교정사고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



청주교도소 교감 조래호

조래호 교감은 보안과 미결팀장으로 신인 및 특이 수용자를 매일 평균 20여 명을 상담하며, 개인 신상을 정확히 파악해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및 건강한 수용 생활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불시에 수용동 거실 검사를 실시해 면도기 부품으로 제작한 칼을 발견 후 처리하는 등 교정사고를 예방했다.



장흥교도소 교위 최순보

최순보 교위는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하며, 묵묵히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교정장비 담당자로 평상시 직원 교정장비 교육을 철저히 수행하고, 교정장비 관리 및 분출 업무를 철저히 실시해 보안과 출정 및 이송 등의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습니다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독자퀴즈

숨은 그림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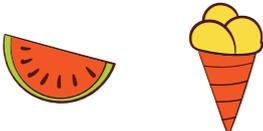
아래 그림 속에 숨겨진 그림을 찾아 표시해 보세요.
숨은 그림 8개를 찾아 정답을 보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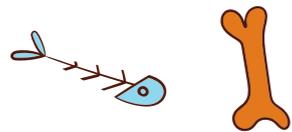
오리 거북이



바게트 피자



수박 아이스크림



생선가시 뼈다귀



정답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23@naver.com)

참여방법 퀴즈 정답을 이메일로 송부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퀴즈 및 이벤트 참여자 혜택 문화상품권 1만 원권 발송

여름철 우기 및 태풍(폭풍) 전

산과 가까이 있는 주택(건물) 배수시설 점검하기

• 위험요인 발견 시 거주지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세요.



집중호우 및 태풍(폭풍) 시

기상정보 및 대피장소 확인하기 산 주변에서 야외활동 하지 않기

•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 확인방법
- 산사태 정보시스템(sansatai.forest.go.kr)
- 스마트폰 '스마트산림재해' 앱



산사태정보시스템(sansatai.forest.go.kr)



스마트산림재해 (스마트폰 앱)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지정된 대피장소나 산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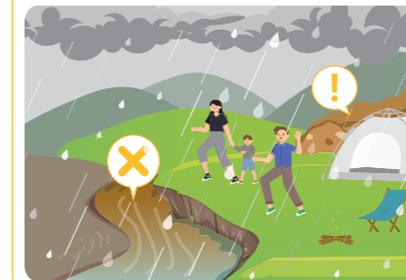
산에서는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 가장 안전한 높은 곳으로 대피하기



야영(캠핑) 중에는

계곡은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계곡에서 떨어진 높은 언덕으로 대피하기



주택(건물)에서 대피하지 못한 경우

산과 멀리 있는 가장 높은 층 방으로 대피하기



운전 중에는

저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 대피 이동 중에는 신호등, 가로등, 고압전선 인근으로 접근을 자제하세요.



산사태국민행동요령과 대피장소 관련 자세한 정보는
산사태정보시스템,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산림재해' 앱에서 확인하세요.



스마트산림재해
산림청

다운로드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하기

교정공무원을 양성하는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과를 소개합니다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과는 2017년 신설된 학과로 교정, 보호, 청소년 상담 등에 특화된 전공이며, 충남 천안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범죄교정학과 성과

교정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의 지도하에 매년 다수의 교정직 공무원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범죄교정학과 특징

교정직 공무원 자녀에게 지급하는 교정장학금(매 학기 등록금 반액)과 각종 외부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교정시설 참관, 교정직 특강, 면접 지도 등을 통해 시험 합격에 많은 도움을 주며, 수료 후 청소년상담사 3급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신입생 모집

매년 경찰학부 단위로 모집되며(총 128명, 대부분 수시모집), 입학 후 전공 결정(범죄교정학, 경찰행정학, 경찰범죄수사학 중 선택). 경찰학부 신입생 합격자 분포는 내신 3.2~4.5등급 정도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김안식 교수(010-5360-3026)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